

2019년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
대학 및 대학원(속표지)

목 차

2019 대학정보공시 안내	1
1. ‘ ’란?	3
2. 목적	3
3. 추진체계	4
4. 2019년 대학정보공시 대상학교	5
5. 공시항목 및 내용	7
6. 공시자료 입력 방법	10
7. 문의처	16
■ 2019 대학정보공시 작성 지침	17
I. 용어 설명	19
II. 대학용 작성 지침	21
1.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3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24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5
2-가.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26
2-가-1. 전공과목 성적 분포	26
2-가-2. 교양과목 성적 분포	28
2-가-3. 교직과목 성적 분포	30
2-가-4. 졸업생의 졸업성적 분포	32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34
3-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35
3-가-1. 신입생 모집요강	35
3-가-2. 편입생 모집요강	36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37

4- .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38
4-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41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44
4-라. 학생 충원 현황 (편입학 포함)	46
4-라-1. 재학생 충원을	46
4-라-2. 편입학 선발 결과	49
4-마. 재적 학생 현황	51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53
4-바-1. 외국인 유학생 현황	53
4-바-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55
4-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57
4-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59
5.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1
5-가. 졸업생 현황	62
5-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64
5-나-(1) 졸업생의 진학 현황(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학교)	64
5-나-(2) 졸업생의 진학 현황(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66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68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1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72
6-가-1.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72
6-가-2. 전체 신규 전임교원 현황	75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76
6-나-(1)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76
6-나-(2)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사이버대학)	82
6-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86
6-다-1. 국가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86
6-다-2. 전공계열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87

7.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89
7-	.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	90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93
8-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94
8-가-1.	국공립대 대학회계 예산	94
8-가-2.	국공립대 대학회계 결산	96
8-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98
8-다-1.	국공립대 발전기금회계 예산	98
8-다-2.	국공립대 발전기금회계 결산	100
8-라.	예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102
8-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104
8-마-1.	법인회계 자금예산서(예산)	104
8-마-2.	법인회계 자금계산서(결산)	106
8-마-2-(1)	법인회계 감사증명서[PDF]	107
8-마-3.	법인회계 운영(손익) 계산서	108
8-마-4.	법인회계 대차대조표	110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111
8-바-1.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예산)	111
8-바-1-(1)	교비회계(통합)	111
8-바-1-(2)	등록금회계	113
8-바-1-(2)-1.	잉여금 처리 원칙[PDF]	114
8-바-1-(3)	비등록금회계	115
8-바-2.	교비회계 자금계산서(결산)	117
8-바-2-(1)	교비회계(통합)	117
8-바-2-(2)	등록금회계	119
8-바-2-(3)	비등록금회계	121
8-바-3.	교비회계 운영(손익) 계산서	123
8-바-3-(1)	교비회계(통합)	123

8- -3-(2) 등록금회계	125
8-바-3-(3) 비등록금회계	127
8-바-4.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129
8-바-4-(1) 교비회계(통합)	129
8-바-4-(2) 등록금회계	130
8-바-4-(3) 비등록금회계	131
8-사. 적립금 현황	132
8-아. 기부금 현황	135
8-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136
8-자-1. 산학협력단 현금예산서(예산)	136
8-자-2. 산학협력단 현금흐름표(결산)	138
8-자-3. 산학협력단 운영 계산서	140
8-자-4. 산학협력단 재무상태표	141
8-차. 등록금 현황	142
8-차-1. 등록금 현황	142
8-차-2.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144
8-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147
8-카-1.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147
8-카-1-(1) 입학 전형료 수입 현황	147
8-카-1-(2) 입학 전형료 지출 현황	149
8-카-2. 입학전형료 산정 근거[PDF]	152
9.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155
9-가. 등록금 산정근거	156
9-가-1. 등록금 산정근거	156
9-가-1-(1) 등록금 산정근거[PDF](국·공립대학)	156
9-가-1-(2) 등록금 산정근거[PDF](사립대학)	166
9-가-2.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PDF]	182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183

9- -1. 학생 1인당 교육비(국·공립대학, 국립대법인, 특별법법인)	183
9-나-2. 학생 1인당 교육비(사립대학)	185
10.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86
10-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187
1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189
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190
11-가-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PDF]	190
11-가-2. 학교 특성화 현황	191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96
12-가. 연구비 수혜 실적	198
12-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201
12-나-1. 학생 규모별 강좌수	201
12-나-2. 교원 강의 담당 비율	203
12-나-3. 대학 강의 공개 현황	207
12-다. 장학금 수혜 현황	210
12-다-1. 장학금 수혜 현황	210
12-다-2. 학자금 대출 현황	215
12-라. 외국대학교 교류 현황	218
12-라-1. 외국대학교 교류 현황[PDF]	218
12-라-2. 외국대학교 교류 현황	219
12-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220
12-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222
12-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225
12-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227
12-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230
12-자-1. 산학협력단 고용주체별 인력 현황	230
12-자-2.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	232
12-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234

12- .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236
12-카-1. 현장실습 운영 현황	236
12-카-2. 캡스톤 디자인 운영 현황	240
12-카-3. 학교기업 운영 현황	242
12-카-4.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244
12-카-4-(1)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	244
12-카-4-(2) 주문식 교육과정 설치 운영 현황	247
12-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250
12-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252
12-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254
12-하-1. 교원·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254
12-하-1-(1)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254
12-하-1-(2) 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256
12-하-2. 창업교육 지원 현황	258
12-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260
13.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262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263
13-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265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267
14-가. 정관[PDF]	268
14-나. 법인의 임원 현황.	269
14-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270
14-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272
14-마. 기숙사 현황	276
14-마-1. 기숙사 수용 현황	276
14-마-2. 기숙사 운영 결과	279
14-마-2-(1) 기숙사 운영 결과(국·공립대학_민자기숙사)	279
14-마-2-(2) 기숙사 운영 결과(사립대학_행복/민자기숙사)	281

14- -2-(3) 기숙사 운영 결과(국공립대학_직영기숙사)	283
14-마-2-(4) 기숙사 운영 결과(사립대학_직영기숙사)	285
14-마-3.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287
14-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288
14-바-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288
14-바-2.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290
14-사. 직원 현황	291
14-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293
14-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296
14-자-1. 대학 자체평가 결과	296
14-자-2. 대학별 평가 인증 현황	298
14-차. 강사 강의료	300
14-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303
14-파. 안전관리 현황	305
14-파-1.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	305
14-파-2. 시설 안전관리 현황	307
14-파-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310
14-파-4. 폭력예방교육 현황	312
대학원용 작성 지침	317
1.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319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320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21
2-가.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322
2-가-1.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322
2-가-2. 졸업생의 졸업성적 분포	325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327
3-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328

3- -1. 신입생 모집요강	328
3-가-2. 편입생 모집요강	329
4. ,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330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331
4-라. 학생 충원 현황 (편입학 포함)	333
4-마. 재적 학생 현황	336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337
4-바-1. 외국인 유학생 현황	337
4-바-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340
4-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342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344
5-가. 졸업생 현황	345
5-가-1. 졸업생 현황(일반대학원)	345
5-가-2. 졸업생 현황(전문대학원)	347
5-가-3. 졸업생 현황(특수대학원)	348
5-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349
5-나-1. 졸업생의 진학 현황(일반대학원)	349
5-나-2. 졸업생의 진학 현황(전문대학원)	351
5-나-3. 졸업생의 진학 현황(특수대학원)	353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355
5-다-1. 졸업생의 취업 현황(일반대학원)	355
5-다-2. 졸업생의 취업 현황(전문대학원)	358
5-다-3. 졸업생의 취업 현황(특수대학원)	360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362
8-차. 등록금 현황	363
8-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366
8-카-1.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366
8-카-1-(1) 입학 전형료 수입 현황	366

8- -1-(2) 입학 전형료 지출 현황	368
8-카-2. 입학전형료 산정 근거[PDF]	371
11.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373
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374
11-가-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PDF]	374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375
12-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376
12-나-2. 교원 강의 담당 비율	376
12-다. 장학금 수혜 현황	381
12-다-1. 장학금 수혜 현황	381
12-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386
12-라-1.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PDF]	386
12-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387
12-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388
12-카-4.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388
12-카-4-(1)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	388
12-카-4-(2) 주문식 교육과정 설치 운영 현황	391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394
14-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395
14-자-1. 대학 자체평가 결과	395
14-차. 강사 강의료	397

2019 대학정보공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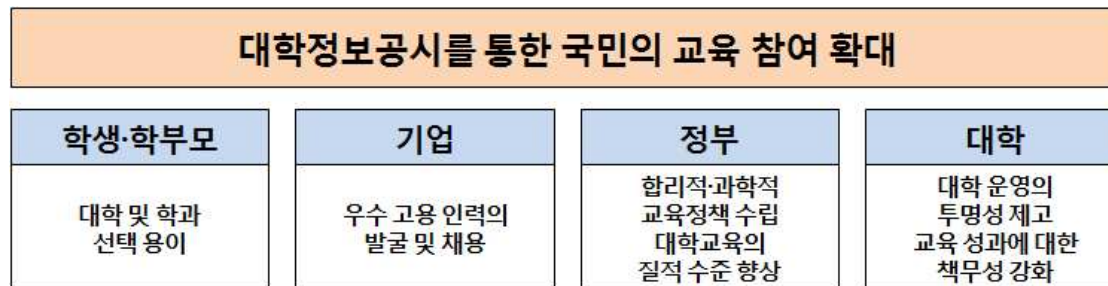
1. '대학정보공시제' 란?

란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운영 상황 및 교육·연구여건에 관한 주요정보를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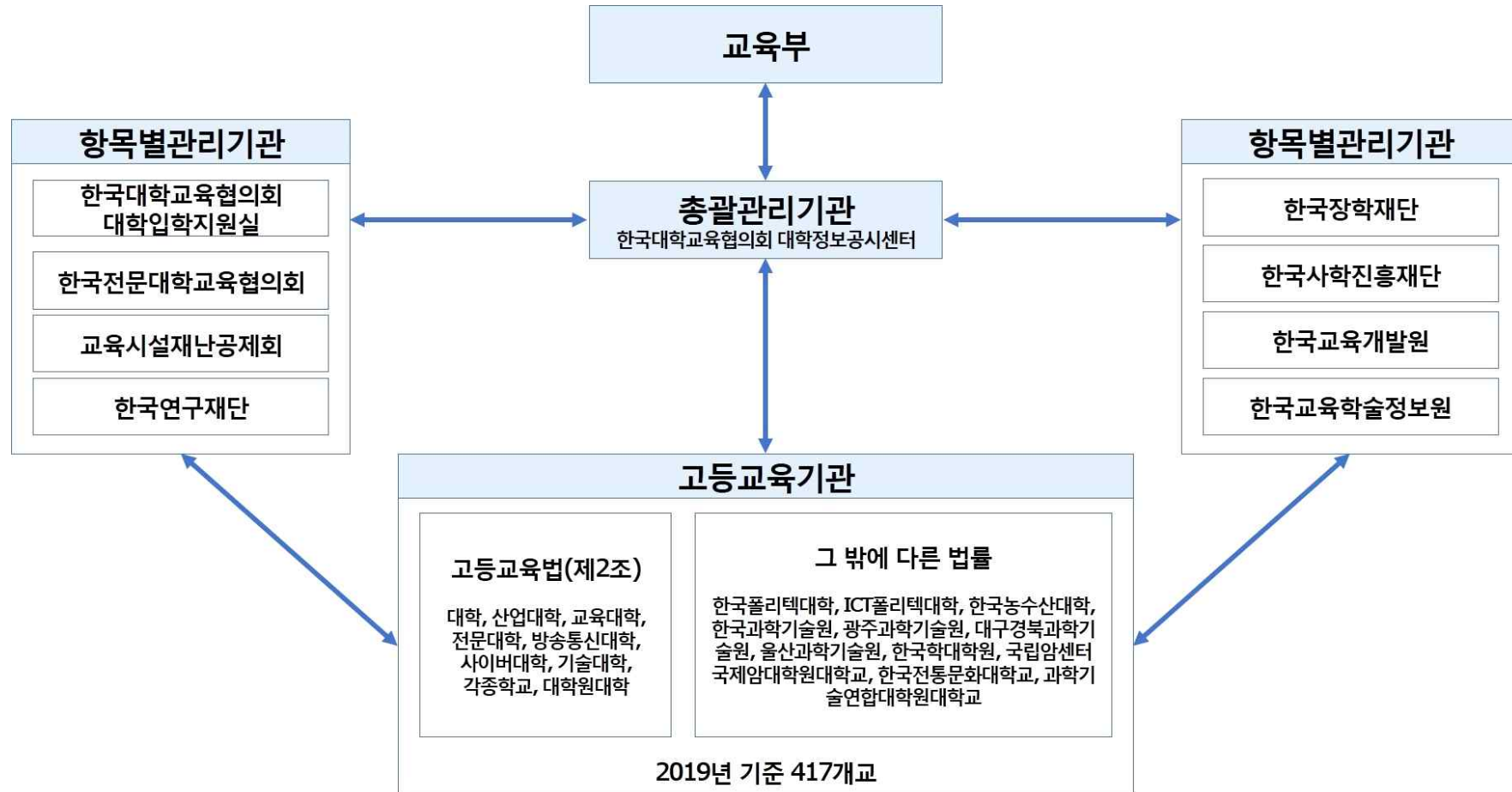
*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개의무

2. 목적

-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취지에 따라, 학생·학부모, 산업체, 정부 등의 학교선택, 산학협력 및 직원채용, 정책집행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하여,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과 아울러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대학의 주요정보(취업률,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공개로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대학 간 경쟁을 통한 질 제고를 촉진하고 지속적 대학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자 함



3. 추진체계



4. 2019년 대학정보공시 대상학교

설립근거별 분류

	근거법령	학교구분	학교수	국립	공립	사립
	고등교육법(제2조)	대학교	186	29	1	156
		산업대학	2	0	0	2
		교육대학	10	10	0	0
		전문대학	136	1	7	128
		방송통신대학	1	1	0	0
		사이버대학	19	0	0	19
		기술대학	1	0	0	1
		각종학교	2	1	0	1
	고등교육법(제30조)	대학원대학	42	0	0	42
소계			399	42	8	349
그 밖에 다른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	한국폴리텍대학/ICT폴리텍대학	9	0	0	9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제1조)	한국농수산대학	1	1	0	0
	한국과학기술원법(제1조)	한국과학기술원	1	1	0	0
	광주과학기술원법(제1조)	광주과학기술원	1	1	0	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1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	1	0	0
	울산과학기술원법(제1조)	울산과학기술원	1	1	0	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제1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	1	0	0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제6조)	한국학대학원	1	1	0	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3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	0	0	1
	암관리법(제29조)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1	1	0	0
소계			18	8	0	10
합계			417	50	8	359

※ 학교수(417개교)는 통폐합 및 학제변경으로 인한 폐교를 제외한 대상 대학수로, 폐교는 학칙 존치기간까지 일부항목에 대하여 개별 및 합산 공시

※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가 대학정보공시 대상에 해당하며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은 특례법 제2조 5호 단서(단,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제외)에 의해 제외되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사내대학은 평생교육시설이므로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되는 사이버대학만 해당됨

학제별 분류

	대학별	학교수	국립	공립	사립	소계
	대학교	191	34	1	156	224개교
	산업대학	2	0	0	2	
	교육대학	10	10	0	0	
	방송통신대학	1	1	0	0	
	사이버대학(대학)	17	0	0	17	
	기술대학	1	0	0	1	
	각종대학(대학)	2	1	0	1	
전문대학	전문대학	137	2	7	128	148개교
	사이버대학(전문대학)	2	0	0	2	
	기능대학	9	0	0	9	
대학원대학	일반대학원	1	1	0	0	45개교
	전문대학원	38	1	0	37	
	특수대학원	6	0	0	6	
총계			417개교			

5. 공시항목 및 내용

항목	공시정보 내용	공시 기관 ¹	공시 횟수	공시 시기	공시여부 ²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대학원
1.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대학	수시	수시	○	○	○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대학	연 1회	4월	○	○	○	○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대학	수시	수시	○	○	○	○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대학	연 1회	6월	○	○	×	×
	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대학	연 1회	6월	○	○	×	×
	다. 신입생 충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대학	연 1회	8월	○	○	○	○
	마. 재적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바. 외국인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전문대학	연 1회	8월	×	○	×	×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대학	연 1회	6월	○	○	×	×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졸업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대학	연 1회 이상	8월, 수시	○	○	○	○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대학	연 1회 이상	8월, 수시	○	○	○	○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	연 1회	8월	○	○	○	×
	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7.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대학	연 1회	8월	○	○	○	×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	○	○	×
	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	○	○	×
	라. 예·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	○	○	×

항목	공시정보 내용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공시여부 ²⁾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대학원
	.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	○	○	×
	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	○	○	×
	사. 적립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결산) 8월	○	○	○	×
	아. 기부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결산) 8월	○	○	○	×
	자. 산학협력단 회계 예·결산 현황	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	○	○	×
	차. 등록금 현황	대학	연 2회	4월, 8월	○	○	○	○
	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금 산정근거	대학	수시	4월, 수시	○	○	○	×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대학	연 1회	8월	○	○	○	×
10.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대학	수시	수시	○	○	○	×
1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대학	연 1회	10월	○	○	○	○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가. 연구비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8월	○	○	○	×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대학	연 2회	4월, 10월	○	○	○	○
	다. 장학금 수혜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대학	연 1회	4월	○	○	○	×
	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대학	연 1회	6월	○	○	○	×
	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	○	×	×
	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6월	○	○	○	×
	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	○	×	×
	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	○	×	×
	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대학	연 1회	6월	○	○	○	○
	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대학	연 1회	6월	○	○	○	×
	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대학	연 1회	6월	○	○	○	×
	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대학	연 1회	6월	○	○	○	×

항목	공시정보 내용	공시 기관 ¹⁾	공시 횟수	공시 시기	공시여부 ²⁾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대학원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	○	×	×
	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	○	○	×
	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사립대학	수시	수시	○	○	○	×
	나. 법인의 임원 현황	사립대학	수시	수시	○	○	○	×
	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	○	○	×
	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	○	○	×
	마. 기숙사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	○	○	×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10월	○	○	○	×
	사. 직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10월	○	○	○	×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대학	수시	수시	○	○	○	○
	차. 강사 강의로	대학	연 1회	6월	○	○	○	○
	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파. 안전관리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	○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를 말함.
 2) 공시여부의 o/x는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대학원의 해당 항목의 공시 여부를 나타냄.

6. 공시자료 입력 방법

1) (항목별 관리기관 제출) 항목 및 내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입학지원실, 대학입학전형료 관리프로그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보공시내용	
4. ,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나. 기회균형 선발 결과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1)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2) 입학전형료 산정 근거

○ 한국교육개발원

정보공시항목	정보공시내용	
4. 총원을,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다. 신입생 총원 현황	
	라. 학생 총원 현황(편입학 포함)	1) 재학생 총원을
	마. 재적 학생 현황	
	바. 외국인 학생 현황	1) 외국인 유학생 현황 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졸업생 현황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1)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2) 전체 신규 전임교원 현황
	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1) 국가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2) 전공계열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사. 직원 현황	

한국연구재단

		정보공시내용		
7.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가.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			
	가. 연구비 수혜 실적			
	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현황			
	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1) 산학협력단 고용주체별 인력 현황		
		2)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		
	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1) 현장실습 운영 현황	
			2) 캡스톤 디자인(창의적 설계) 운영 현황	
			3) 학교기업 운영 현황	
4)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설치 운영 현황				
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1) 교원·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2) 창업교육 지원 현황			
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정보공시내용	
8. ·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라. 예·결산[합산재무제표] 현황	사립대학
	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1) 법인회계 자금예산서(예산)
		2) 법인회계 자금계산서(결산)
		3) 법인회계 운영(손익) 계산서
		4) 법인회계 대차대조표
	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1)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예산)
2) 교비회계 자금계산서(결산)		
3) 교비회계 운영(손익) 계산서		
4)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사. 적립금 현황		
아. 기부금 현황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1) 산학협력단 현금예산서(예산)
		2) 산학협력단 현금흐름표(결산)
		3) 산학협력단 운영(손익) 계산서
		4) 산학협력단 재무상태표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마. 기숙사 현황	1) 기숙사 수용 현황
		2) 기숙사 운영 결과
		3)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2)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한국장학재단

	정보공시내용	
8. ·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차. 등록금 현황	1) 등록금 현황 2)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금 산정근거	1) 등록금 산정근거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다. 장학금 수혜 현황	1) 장학금 수혜 현황 2) 학자금 대출 현황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공시항목	정보공시내용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3) 대학 강의 공개 실적
	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파. 안전관리 현황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정보공시항목	정보공시내용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파. 안전관리 현황	1)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
		2) 시설 안전관리 현황

2) 항목 및 내용

		정보공시내용
1.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1) 전공과목 성적 분포 2) 교양과목 성적 분포 3) 교직과목 성적 분포 4) 졸업생의 졸업성적 분포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1) 신입생 모집요강 2) 편입생 모집요강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2) 편입학 선발 결과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1) 국·공립대 대학회계 예산 2) 국·공립대 대학회계 결산
	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1) 국·공립대 발전기금회계 예산 2) 국·공립대 발전기금회계 결산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금 산정근거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2)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PDF] 1) 국·공립대학
10.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1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PDF] 2) 학교 특성화 현황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1) 학생 규모별 강좌 수 2) 교원 강의 담당 비율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1)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PDF]
	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나. 법인의 임원 현황	
	아.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1) 대학 자체평가 결과 2) 대학별 평가인증 현황
	차. 강사 강의료	
	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파. 안전관리 현황	4) 폭력예방교육 현황

3) **항목 및 내용**

		정보공시내용
4.	,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나. 기회균형 선발 결과 전문대학 정원내 기회균형선발결과 부분 직접입력

7. 문의처

대학정보공시센터 연락처 : 02-6919-3881~3889, 3891~3892, 3897~3898

- 이메일 : open@kcue.or.kr
- 홈페이지 : <http://www.academyinfo.go.kr>
- 팩스 : 02-6919-3899
- 주소 : (08504)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A동 22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 항목별관리기관 연락처

	연락처
	043-530-9640~6(고등통계) 043-530-9657~59,9660~62(취업통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053-714-0546(장서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053-714-0419(대학 강의 공개 현황) 053-714-0346(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입학기획팀)	02-6919-3837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형료 관리시스템)	02-6919-399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02-364-1514
한국사학진흥재단	053-770-2638
한국연구재단	042-869-6836(연구실적관련) 042-869-6411(산학협력관련)
한국장학재단	1599-2280(한국장학재단 교직원콜센터)
교육시설재난공제회	02-781-0134

2019 대학정보공시 작성 지침

주요 용어 설명

1. : 2019년 대학의 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
2. 학과 : 2019년 대학의 학칙(부칙)에 의거한 학과
3. 구분 : [주간, 야간, 계절제, 원격]으로 구분
4. 학과특성 : [일반과정, 산업체위탁, 특별과정, 계약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 학사학위전공심화(경력있음), 학사학위전공심화(경력없음), 학석사통합과정, 산학협력취업약정제]로 구분
5. 학과상태 : [기존, 변경, 분리, 통합, 신설, 폐지]로 구분

대학용 작성 지침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수시(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양식 : 제목과 목차 및 최종개정본의 시행일을 명시한 학교의 자체 양식

공시방법 : PDF 파일 또는 접근 가능한 URL 링크 중 선택하여 공시하되(연중), 12월 말 수시항목 완료 공문 제출 시 최종 PDF 파일 모두 업로드

■ 작성지침

【학교규칙】 : ① 학교 설립 시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한 학교규칙 (예 : 「고등교육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제2조 등)

②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교규칙 시행세칙을 포함

【학교규칙 외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학위수여, 졸업자격, 성적처리, 학점인정, 복수전공이수, 부전공이수, 복수학위제운영, 편입·전과규정 등 학교규칙에서 위임된 각종 규정

【연구윤리규정】 : 대학 내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학교규칙(「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대학 등의 조치)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 등)

【시행일】 : 학칙에 명시된 최종개정본의 시행일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URL 링크 시, 위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내용 변경(PDF, URL 링크) 시, 시행일 및 개정일 입력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가.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2-가.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2-가-1. 전공과목 성적 분포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4월

【공시내용】 : 2018년 학과별, 학기별 성적평가 결과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매 학기별 최종성적 산출 시점)

연도	단과 대학	학과 (전공)	구분	학과 특성	학기	전공 성적인정 학생총수	등급(평점)별 학생 수 및 비율																
							등급(평점)		등급(평점)		등급(평점)		등급(평점)		등급(평점)		등급(평점)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1																		
					2																		
					3																		
					4																		

■ 작성지침

【학기】 : 각 학교의 학사규정에 따른 연간 운영되는 정규학기 단위이며, 계절학기는 입력에서 제외

【조사대상】 : 전공성적으로 인정받는 성적만 입력, 전공성적 외로 인정받는 일반선택 성적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단, 전공성적이더라도 PASS/FAIL 과목은 성적평가 결과 산출 시 제외

【대상학생】 : 본교에 학적을 둔 정규 학위과정 학생(외국인 학생 포함)의 성적만 입력함. 시간제학생,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연수생) 등 비학위과정이나 본교에 학적을 두지 않은 학생의 성적은 입력에서 제외

※ 타 대학과 학점교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생이 소속된 대학에만 성적을 기입

※ 본교 학생이 외국대학과 학점교류 등으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성적 인정 시점이 각 학기별 최종성적 산출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입력에서 제외

【전공성적인정학생총수】 : 2018년 학기별(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최종성적 산출 시 전공성적으로 인정받은 전 학년 학생 수의 총합

경영학과에서 A과목을 전공성적으로 인정받은 학생 수가 20명, B과목을 전공성적으로 인정받은 학생 수가 50명일 경우, 경영학과와 전공성적 인정학생총수는 70명으로 기입

※ 과목 개설학과 기준이 아닌 학생의 본 소속학과 기준으로, 학생이 인정받은 성적 기준으로 입력

예시

1. 학생 A가 2018년 1학기에 '경영학원론'을 '일반선택'으로 들었고, 1학기 성적표에 '일반선택' 학수코드로 성적을 부여받았음. 1학기 이후 경영학과 다전공 신청 및 학수코드 변경 신청을 하여 '경영학원론' 학수코드가 '전공필수'로 변경되었음
 - 올바른 예 : 2018년 1학기 최종성적 산출 시점에 '일반선택'이었으므로, 전공과목 성적평가 분포에 반영하지 않음(O)
 - 잘못된 예 : 2019년 4월 기준으로 2018년 1학기 '경영학원론' 학수코드는 '전공필수'이므로, 전공과목 성적평가 분포에 반영(X)
2. 경영학과 학생 B가 2018년 1학기 '전공기초'인 '경영학원론'의 성적이 C가 나왔음. 잘 안나온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 2학기에 동일한 '전공기초'인 '경영학원론'을 재수강하여 성적 A를 받았고, 2학기 성적산출이 종료된 이후 수강 이력 삭제 신청을 하여 1학기에 들었던 성적 C를 삭제하였음
 - 올바른 예 : 성적분포 결과 입력 자료기준일은 매 학기별 최종성적 산출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1학기 성적 C는 1학기에 입력하고, 2학기 성적 A는 2학기에 입력함(O)
 - 잘못된 예 : 재수강한 2학기 성적 A만 입력함(X) / 1학기에만 재수강한 성적 A를 입력함(X), 재수강을 반영하지 않아 1학기만 C를 입력함(X)
3. 경영학과 학생 C가 2018년 2학기에 컴퓨터학과로 전과를 하였음
 - 올바른 예 : 1학기 성적은 경영학과에 경영학과 이수구분에 맞게 입력, 2학기 성적은 컴퓨터학과에 컴퓨터학과 이수구분에 맞게 입력함(O)
 - 잘못된 예1 : 1, 2학기 성적을 모두 현재 학생의 소속학과인 컴퓨터학과에 입력함(X)
 - 잘못된 예2 : 1학기 성적은 경영학과에, 2학기 성적은 컴퓨터학과에 입력하였으나, 이수구분은 현재 학생의 소속학과인 컴퓨터학과 기준으로 입력함(X)
4. 학칙상 타과 전공을 수강하여 획득한 성적은 일반선택 성적으로 분류되는 학교에서, A학과에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B학과 학생이 수강하여 일반선택 성적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 입력에서 제외
5. 학칙상 타과 전공을 수강하여 획득한 성적은 교양과목 성적으로 분류되는 학교에서, A학과에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B학과 학생이 수강하여 교양성적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 2-가-2. 교양성적 분포에 등급별로 인원을 기입
6. 타 대학과 학점교류를 통해 학점을 부여받은 경우, 학생이 소속된 대학에만 성적을 기입
(A대학의 학생이 B대학에서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여, A대학에서 전공성적으로 성적을 인정받은 경우, A대학 학생의 소속학과 전공성적에 기입함. B대학에서는 기입하지 않음)

【등급(평점)】 :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학업성적의 등급(평점), 전공성적 인정학생총수를 등급(평점)에 따라 분류하여 입력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에 자료 입력 시, 학교별로 4.0/4.3/4.5제를 선택한 후 등급(평점)을 입력해야 함

【비율(%)】 : (해당 등급(평점) 성적인정학생 수/전공과목성적인정학생총수) × 100,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표시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2-가-2. 교양과목 성적 분포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4월

[공시내용] : 2018년 학기별 성적평가 결과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매 학기별 최종성적 산출 시점)

연도	학기	교양 성적인정 학생총수	등급(평점)별 학생 수 및 비율											
			등급(평점)		등급(평점)		등급(평점)		등급(평점)		등급(평점)		등급(평점)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1													
	2													
	3													
	4													

■ 작성지침

[학기] : 각 학교의 학사규정에 따른 연간 운영되는 정규학기 단위이며, 계절학기는 입력에서 제외

[조사대상] : 교양성적으로 인정받는 성적만 입력, 교양성적 외로 인정받는 일반선택 성적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단, 교양성적이더라도 PASS/FAIL 과목은 성적평가 결과 산출 시 제외

[대상학생] : 본교에 학적을 둔 정규 학위과정 학생(외국인 학생 포함)의 성적만 입력함. 시간제학생,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연수생) 등 비학위과정학생의 성적은 입력에서 제외

※ 타대학과 학점교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생이 소속된 대학에만 성적을 기입

※ 본교 학생이 외국대학과 학점교류 등으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성적 인정 시점이 각 학기별 최종성적 산출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입력에서 제외

[교양성적인정학생총수] : 2018년 학기별(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최종성적 산출 시 교양성적으로 인정받은 전 학년 학생 수의 총합

에서 A과목을 교양성적으로 인정받은 학생 수가 20명, B과목을 교양성적으로 인정받은 학생 수가 50명일 경우, 교양성적인정학생총수는 70명으로 기입

※ 과목 개설학과 기준이 아닌 학생의 본 소속학과 기준으로, 학생이 인정받은 성적 기준으로 입력

예시

1. 학생 A가 2018년 1학기에 '경영학원론'을 '일반선택'으로 들었고, 1학기 성적표에 '일반선택' 학수코드로 성적을 부여받았음. 1학기 이후 경영학과 다전공 신청 및 학수코드 변경 신청을 하여 '경영학원론' 학수코드가 '전공필수'로 변경되었음
 - 올바른 예 : 2018년 1학기 최종성적 산출 시점에 '일반선택'이었으므로, 2-가-1. 전공과목 성적평가 분포에 반영하지 않음(O)
 - 잘못된 예 : 2019년 4월 기준으로 2018년 1학기 '경영학원론' 학수코드는 '전공필수'이므로, 2-가-1. 전공과목 성적평가 분포에 반영(X)
2. 교육학과 학생 B가 2018년 1학기 '선택교양인 심리학의 이해'의 성적이 C가 나왔음. 잘 안나온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 2학기에 동일한 '선택교양'인 '심리학의 이해'를 재수강하여 성적 A를 받았고, 2학기 성적산출이 종료된 이후 수강 이력 삭제 신청을 하여 1학기에 들었던 성적 C를 삭제하였음
 - 올바른 예 : 성적분포 결과 입력 자료기준일은 매 학기별 최종성적 산출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1학기 성적 C는 1학기에 입력하고, 2학기 성적 A는 2학기에 입력함(O)
 - 잘못된 예 : 재수강한 2학기 성적 A만 입력함(X) / 1학기에만 재수강한 성적 A를 입력함(X), 재수강을 반영하지 않아 1학기만 C를 입력함(X)
3. 경영학과 학생 C가 2018년 2학기에 컴퓨터학과로 전과를 하였음
 - 올바른 예 : 1학기 성적은 경영학과에 경영학과 이수구분에 맞게 입력, 2학기 성적은 컴퓨터학과에 컴퓨터학과 이수구분에 맞게 입력(O)
 - 잘못된 예 1 : 1, 2학기 성적을 모두 현재 학생의 소속학과인 컴퓨터학과에 입력(X)
 - 잘못된 예 2 : 1학기 성적은 경영학과에, 2학기 성적은 컴퓨터 학과에 입력하였으나, 이수구분은 현재 학생의 소속학과인 컴퓨터학과 기준으로 입력함(X)
4. 학칙상 타과 전공을 수강하여 획득한 성적은 일반선택 성적으로 분류되는 학교에서, A학과에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B학과 학생이 수강하여 일반선택 성적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 입력에서 제외
5. 학칙상 타과 전공을 수강하여 획득한 성적은 교양과목 성적으로 분류되는 학교에서, A학과에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B학과 학생이 수강하여 교양성적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 등급별로 인원을 입력함
6. 타 대학과 학점교류를 통해 학점을 부여받은 경우, 학생이 소속된 대학에만 성적을 기입
(A대학의 학생이 B대학에서 교양으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여, A대학에서 교양 성적으로 성적을 인정받은 경우, A대학의 교양 성적에만 기입함. B대학에서는 기입하지 않음)

등급(평점) :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학업성적의 등급(평점). 교양성적인정학생총수를 등급(평점)에 따라 분류하여 입력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에 자료 입력 시, 학교별로 4.0/4.3/4.5제를 선택한 후 등급(평점)을 입력해야 함

【비율(%)】 : (해당 등급(평점) 성적인정학생 수/교양과목성적인정학생총수) × 100,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표시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2-가-3. 교직과목 성적 분포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4월

【공시내용】 : 2018년 학기별 성적평가 결과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매 학기별 최종성적 산출 시점)

	학기	교직 성적인정 학생총수	등급(평점)별 학생 수 및 비율											
			등급(평점)		등급(평점)		등급(평점)		등급(평점)		등급(평점)		등급(평점)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1													
	2													
	3													
	4													

※ 사이버대학은 본 항목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작성지침

【학기】 : 각 학교의 학사규정에 따른 연간 운영되는 정규학기 단위이며, 계절학기는 입력에서 제외

【조사대상】 : 교직성적으로 인정받는 성적만 입력, 교직성적 외로 인정받는 일반선택 성적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단, 교직성적이더라도 PASS/FAIL 과목은 성적평가 결과 산출 시 제외

【대상학생】 : 본교에 학적을 둔 정규 학위과정 학생(외국인 학생 포함)의 성적만 입력함. 시간제학생,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연수생) 등 비학위과정학생의 성적은 입력에서 제외

※ 타대학과 학점교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생이 소속된 대학에만 성적을 기입

※ 본교 학생이 외국대학과 학점교류 등으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성적 인정 시점이 각 학기별 최종성적 산출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입력에서 제외

【교직성적인정학생총수】 : 2018년 학기별(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최종성적 산출 시 교직성적으로 인정받은 전 학년 학생 수의 총합

예시 A과목을 교직성적으로 인정받은 학생 수가 20명, B과목을 교직성적으로 인정받은 학생 수가 50명일 경우, 교직성적인정학생총수는 70명으로 기입

과목 개설학과 기준이 아닌 학생의 본 소속학과 기준으로, 학생이 인정받은 성적 기준으로 입력

예시

1. 학생 A가 2018년 1학기에 '경영학원론'을 '일반선택'으로 들었고, 1학기 성적표에 '일반선택' 학수코드로 성적을 부여받았음. 1학기 이후 경영학과 다전공 신청 및 학수코드 변경 신청을 하여 '경영학원론' 학수코드가 '전공필수'로 변경되었음
 - 올바른 예 : 2018년 1학기 최종성적 산출 시점에 '일반선택'이었으므로, 2-가-1. 전공과목 성적평가 분포에 반영하지 않음(O)
 - 잘못된 예 : 2019년 4월 기준으로 2018년 1학기 '경영학원론' 학수코드는 '전공필수'이므로, 2-가-1. 전공과목 성적평가 분포에 반영(X)
2. 수학교육과 학생 B가 2018년 1학기 '교직'인 '교육학개론'의 성적이 C가 나왔음. 잘 안나온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 2학기에 동일한 '교직'인 '교육학개론'을 재수강하여 성적 A를 받았고, 2학기 성적산출이 종료된 이후 수강 이력 삭제 신청을 하여 1학기에 들었던 성적 C를 삭제하였음
 - 올바른 예 : 성적분포 결과 입력 자료기준일은 매 학기별 최종성적 산출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1학기 성적 C는 1학기에 입력하고, 2학기 성적 A는 2학기에 입력함(O)
 - 잘못된 예 : 재수강한 2학기 성적 A만 입력함(X) / 1학기에만 재수강한 성적 A를 입력함(X), 재수강을 반영하지 않아 1학기만 C를 입력함(X)
3. 타 대학과 학점교류를 통해 학점을 부여받은 경우, 학생이 소속된 대학에만 성적을 기입
(A대학의 학생이 B대학에서 교직으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여, A대학에서 교직성적으로 성적을 인정받은 경우, A대학의 교직성적에만 기입함. B대학에서는 기입하지 않음)

【등급(평점)】 :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학업성적의 등급(평점). 교직성적인정학생총수를 등급(평점)에 따라 분류하여 입력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에 자료 입력 시, 학교별로 4.0/4.3/4.5제를 선택한 후 등급(평점)을 입력해야 함

【비율(%)】 : (해당 등급(평점) 성적인정학생 수/교직성적인정학생총수) × 100,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표시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2-가-4. 졸업생의 졸업성적 분포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4월

[공시내용] : 2018년 8월 및 2019년 2월 졸업자의 졸업성적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년 8월 및 2019년 2월)

단과대학	학과(전공)명	구분	학과특성	졸업자수	학과(전공)별 졸업평점평균	만점평점	학과(전공)별 졸업 백분율점수 평균	백분율점수구간	학생 수	비율
								95점 이상~100점 이하		
								90점 이상~95점 미만		
								85점 이상~90점 미만		
								80점 이상~85점 미만		
								75점 이상~80점 미만		
								70점 이상~75점 미만		
								65점 이상~70점 미만		
								60점 이상~65점 미만		
								60점 미만		

■ 검증사항

[졸업자] : <5-가>의 졸업자수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졸업자] :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졸업자로 학사 등록이 된 자

※ 외국인 유학생 중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 등은 입력에서 제외

[학과(전공)별 졸업평점평균] : 각 학과(전공)별 졸업자 평점평균의 평균

※ 산식 : 학과(전공)별 졸업자 졸업평점평균의 합/학과(전공)별 졸업자 수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만점평점]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에 자료 입력 시, 학교별로 4.0/4.3/4.5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반영됨

학과(전공)별 졸업 백분율점수 평균 : 각 학과(전공)별 졸업자 학점당 백분율점수의 평균

- ※ 각 졸업자의 학점당 백분율점수는 학교 자체의 백분율점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계산
- ※ 산식 : 학과(전공)별 졸업자 학점당 백분율점수의 합/학과(전공)별 졸업자 수
-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백분율점수구간】 : 9개로 분류한 백분율점수구간에 각 졸업자의 학점당 백분율점수를 학생 수와 비율로 표시

【비율(%)】 : (해당 백분율점수구간 졸업자 수/총 졸업자수)×100,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표시

예시

< 준비하는 원자료(raw data)>

A대학교는 평점만점을 4.5로 규정하며, 학생의 학점당 백분율점수를 구할 때에는 평점평균을 학교의 자체 백분율 산출식을 적용하여 계산

1. A대학교 백분율점수 산식

$$\text{백분율점수} = (\text{평점평균} \times 11.4285) + 48.5714$$

2. 졸업자별 평점평균 산출 원자료

학과명	졸업자명	졸업평점평균(b/a)	백분율점수(환산식 적용)
xx학과	김OO	3.86	92.69
	이OO	4.44	99.31
	박OO	4.46	99.54
	최OO	2.29	74.74
	정OO	3.03	83.20

<입력장표 적용>

(전공)	구분	학과특성	학위취득자수	학과(전공)별 졸업평점평균	학과(전공)별 졸업 백분율점수 평균	백분율점수구간	학생 수	비율
xx	주간	일반과정	5	3.62 (=(각 졸업자의 졸업평점평균 합/5))	89.90 (=(각 졸업자의 백분율점수 합/5))	95점 이상~100점 이하	2	40
						90점 이상~95점 미만	1	20
						85점 이상~90점 미만	0	0
						80점 이상~85점 미만	1	20
						75점 이상~80점 미만	0	0
						70점 이상~75점 미만	1	20
						65점 이상~70점 미만	0	0
						60점 이상~65점 미만	0	0
						60점 미만	0	0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3-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3-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3-가-1. 신입생 모집요강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수시(모집요강 확정 시 30일 이내공시, 모집요강 변경 시 7일 이내 재공시)

※ 확정 : 대학에서 학생 모집을 위하여 모집요강이 최초 공표된 시기

※ 변경 : 최초 모집요강 공표 이후 수정 사항이 발생한 시기

【공시내용】 : 당해연도에 확정된 입학안내 등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공시양식】 : 학교의 자체 양식

【공시방법】 : PDF 파일 또는 접근 가능한 URL 링크 중 선택하여 공시하되(연중), 12월 말 수시항목 완료 공문 제출 시 최종 PDF 파일 모두 업로드

■ 작성지침

【모집요강】 :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학기에 전형을 실시할 예정인 학과(전공)별 모집요강 (학과(전공)입학정원, 지원자격 등을 포함)

※ 외국인 유학생, 계약학과, 산업체위탁과정 등 신입생 선발에 대한 모든 모집요강을 공시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URL 링크 시, 학교의 입학사이트 메인페이지 등이 아닌 모집요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어야 함

3-가-2. 편입생 모집요강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수시(모집요강 확정 시 30일 이내공시, 모집요강 변경 시 7일 이내 재공시)

※ 확정 : 대학에서 학생 모집을 위하여 모집요강이 최초 공표된 시기

※ 변경 : 최초 모집요강 공표 이후 수정 사항이 발생한 시기

【공시내용】 : 당해연도에 확정된 학년도 대학 편입학 모집요강

【공시양식】 : 학교의 자체 양식

【공시방법】 : PDF 파일 또는 접근 가능한 URL 링크 중 선택하여 공시하되(연중), 12월 말 수시항목 완료 공문 제출 시 최종 PDF 파일 모두 업로드

■ 작성지침

【모집요강】 : 편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전형을 실시하였거나 예정인 학과(전공)별 모집요강(지원자격,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방법, 전형일정, 지원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

※ 외국인 유학생, 계약학과, 산업체위탁과정 등 편입생 선발에 대한 모든 모집요강을 공시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URL 링크 시, 학교의 입학사이트 메인페이지 등이 아닌 모집요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어야 함

4. 총원을,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 4-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 4-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 4-다. 신입생 총원 현황
- 4-라. 학생 총원 현황(편입학 포함)
- 4-마. 재적 학생 현황
-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 4-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 4-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4-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2019학년도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공시양식】 : 다음의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년 3월 학기 신입생)

연도	정원 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대분류)	전형명 (중분류)	전형명 (소분류)	수시			정시			추가			최종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률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률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률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률
	정원내																
	정원외																
	합계																

※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최종'만 입력, 기술대학은 본 항목 공시대상에서 제외

■ 검증사항

【최종 등록인원】 : <4-나> 총 입학자, <4-다> 입학자, <4-자> 총 입학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사이버대학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으로 3학년 별도편입학자를 모집한 경우, <4-다> 입학자에 별도편입학자를 포함하여 입력하므로 <4-가> 총 입학자, <4-나> 총 입학자, <4-자> 총 입학자의 합계와 다를 수 있음

※ 학석사통합과정을 모집한 경우, <4-다> 입학자에 학석사통합과정을 제외하여 입력하므로 <4-가> 총 입학자, <4-나> 총 입학자, <4-자> 총 입학자의 합계와 다를 수 있음

■ 작성지침

입학전형 유형별 등록 현황] : 전형유형별, 모집시기별(수시/ 정시“가”/ 정시“나”/ 정시“다”/ 추가) 모집인원, 등록인원 및 등록률 기입

【전형유형】 : 학생부위주(교과), 학생부위주(종합), 논술위주, 수능위주, 실기위주 등 핵심 전형요소 위주로 구분

【전형명(대분류)】

- ① 전형명(대분류)은 지정(지정된 전형명칭은 변경하지 않음)
- ② 모집시기별로 구분하여 모두 표기
- ③ 일반전형 : 특별한 재능이나 특기, 수상경력 등을 지원자격으로 제한하지 않는 전형

【전형명(중분류)】 , 【전형명(소분류)】

- ① 일반학생 / 취업자 / 산업대학특별전형우선선발 / 농어촌학생(정원외,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 / 특성화고교졸업자(정원외,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정원외,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 장애인 등 대상자(정원외,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정원외,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라목) / 단원고 특별전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 서해 5도 학생(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북한이탈주민(정원외,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정원외,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전 교육과정 이수자(정원외,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재외국민과 외국인(정원외,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산업체위탁학생(정원외,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 계약학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 기타는 전형명을 지정(전형명칭 변경하지 않음)
※ 정원외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
- ② 사이버대학의 경우, 일반학생 / 특별전형(정원내) / 산업체군위탁생(정원외) / 장애인 등 대상자(정원외) / 재외국민과외국인(정원외) / 기회균형선발(정원외) / 외국에서 12년 교육이수자(정원외) 등은 전형명을 지정(전형명칭 변경하지 않음)
- ③ 특기분야 및 세부전형유형 :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이 다른 각각의 특기분야 및 세부전형으로 구분하여 아래로 서식을 늘려서 활용하며, 모집인원은 특기분야 및 세부유형별로 구분 작성
- ④ 특기자 특별전형은 특기분야별 구분(어학 / 체육 / 컴퓨터 등)
- ⑤ 대학독자적기준특별전형은 각 기준별 전형 구분(국가유공자및자손 / 사회봉사자 / 수상 및 표창자 / 추천자 등)

【수시】 : 수시 모집인원, 등록인원 및 등록률

【정시】 : 정시 모집인원, 등록인원 및 등록률

【모집인원】 : 입학할 위해 공고되는 모집요강에서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기준(단, 9월 학기 입학자 제외)

- ① 총모집인원 = 입학정원 + 이월인원 - 모집정지인원 - 당해연도 2+4 약학대학 입학정원 + 재외국민과 외국인(총 입학정원 2%이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농어촌학생(총 입학정원 4%이내) + 특성화고교졸업자(총 입학정원의 1.5%이내)}(총 입학정원 5.5%이내)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총 입학정원 11%이내) + 서해 5도 학생(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총 입학정원의 1% 이내, 모집단위별 5% 이내) + 단원고 특별전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총 입학정원의 1% 이내)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체위탁학생 + 계약학과 + 장애인 등 대상자 + 기타

총모집인원 (사이버대학) = 입학정원 + 이월인원 - 모집정지인원 - 사이버대학 3학년 별도편입학 입학정원 + 위탁생(총 입학정원 20% 이내) + 재외국민(총 입학정원 2% 이내) + 기회균형선발(총 입학정원 9% 이내) + 장애인 등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 + 외국에서 12년 교육이수자 등

- ③ 농어촌학생특별전형(정원외)은 총 입학정원의 4%이내, 특성화고교졸업자특별전형(정원외)은 총 입학정원의 1.5%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정원외)은 총 입학정원의 2%이내(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제외), 서해 5도 학생(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총 입학정원의 1% 이내, 모집단위별 5% 이내), 단원고 특별전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총 입학정원의 1% 이내)

※ 참고 : 사전예고 시의 모집인원은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으로 하며, 해당 학년도의 실제 모집인원은(모집단위별 모집인원 포함) 추후 해당 모집시기 전에 공고되는 모집요강에 서 당해 학년도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확정 변경됨

※ 모집인원의 제한이 없는 전형의 경우, 해당 전형의 등록인원 수대로 모집인원을 입력

※ 최종 모집인원은 당초 계획된 인원 입력(수시, 정시, 추가 모집인원의 합이 아님)

【등록인원】 : 2019학년도 입학전형 결과로 선발된 인원 중 등록을 완료한 인원수

※ 제외 : 재입학 및 편입학, 2+4 약학대학 입학자, 사이버대학 3학년 별도편입학자,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 의 본과 진급생 및 교육대학의 계절제 편입생

【등록률(%)】 : (등록인원/모집인원) × 100

■ 참고사항

-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4-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2019학년도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 해당하는 선발 결과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년 3월 학기 신입생)

총 입학자 (A)	기회 균형 선발 결과														기회 균형 선발 비율(%) (D/A×100)		
	합계 (D=B+C)	정원의외										정원내					
		소계(B)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농어촌 학생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5도 학생	단원고	소계(C)	고른기회 대상자	대학 독자적 기준				
전형명	...																

※ 기술대학은 본 항목 공시대상에서 제외

■ 검증사항

【총 입학자】 : <4-가> 최종 등록인원, <4-다> 입학자, <4-자> 총 입학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사이버대학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으로 3학년 별도편입학자를 모집한 경우, <4-다> 입학자에 별도편입학자를 포함하여 입력하므로 <4-가> 총 입학자, <4-나> 총 입학자, <4-자> 총 입학자의 합계와 다를 수 있음

※ 학석사통합과정을 모집한 경우, <4-다> 입학자에 학석사통합과정을 제외하여 입력하므로 <4-가> 총 입학자, <4-나> 총 입학자, <4-자> 총 입학자의 합계와 다를 수 있음

■ 작성지침

【기회 균형 선발】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에 의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자' 와 상이한 개념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 해당하는 선발이며, 구체적으로는 위 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의미

【총 입학자】 : 2019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 정원내와 정원외를 포함

제외 : 재입학 및 편입학, 2+4 약학대학 입학자, 사이버대학 3학년 별도편입학, 의학과·치위학과·한의학과 의 본과 진급생 및 교육대학의 계절제 편입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에 라목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정원으로 입학한 학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0호에서 정하는 계층의 자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서 정하는 자로 정원으로 입학한 학생 수의 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 법 제4조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특성화고 졸업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나목에 의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졸업자로서 당해 학교의 장이 특성과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 수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에 의거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

【농어촌 학생】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가목에 의거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출신 정원의 입학자수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가목 :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북한이탈주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자녀로 정원으로 입학한 학생 수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장애인 등 대상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여 정원으로 입학한 학생 수

참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정원외 입학자수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 :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호 :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 ※ 특수교육대상자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서해5도학생】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서해 5도 출신 학생 중 정원으로 입학한 학생 수의 합

단원고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중 정원외로 입학한 학생 수의 합

【고른기회 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만학도, 주부, 지역인재(수도권 제외)등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원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수

【대학 독자적 기준】 :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 대상자로서, 1)소년소녀 가장 2)국가보훈대상자 자녀 3)국가유공자 및 자손 4)농어촌학교 출신자 5)농어민 후계자 및 자녀 6)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자녀 7)기타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에 대한 전형의 전형명을 기입하고 이에 해당하는 전형 결과를 입력

※ 취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공무원자녀 등의 전형은 해당하지 않음

※ 전형명은 학교 자체 전형명을 기입하고, 해당 입학자 수를 기입

【기회 균형 선발 비율(%)】 : (기회 균형 선발에 의한 입학자수/총 입학자수) × 100

■ 참고사항

- 기회 균형 선발 결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모집인원 : 입학 을 위해 공고되는 모집 요강에서 당해학년도 모집인원 기준(단, 9월 학기 입학자 제외). 총모집계획인원 = 정원내 모집인원 + 정원의외 모집인원

【정원내 모집인원】 : 정원내 모집인원 = 입학정원 + 이월인원 - 모집정지인원 - 당해연도 2+4 약학대학 입학정원

※ 모집인원과 입학정원이 불일치할 경우(예시 모집정지인원 발생, 이월인원 발생 등), 비고란에 사유 명시

【정원의외 모집인원】 : 정원의외 모집인원 = 재외국민과 외국인(총 입학정원 2%이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농어촌학생(총 입학정원 4%이내) + 특성화고교졸업자(총 입학정원의 1.5%이내)}(총 입학정원 5.5%이내)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총 입학정원 11%이내) + 서해 5도 학생(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총 입학정원의 1% 이내, 모집단위별 5% 이내) + 단원고 특별전형(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총 입학정원의 1% 이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체위탁학생 + 계약학과 + 장애인 등 대상자 + 기타

※ 참고 : 모집인원이 학과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기타모집단위'로 입력

※ 모집인원의 제한이 없는 전형의 경우, 해당 전형의 입학자 수대로 모집인원을 입력

【지원자】 : 2019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지원한 정원내, 정원의외 지원자 수 (수시 및 일반·특별전형 등의 지원자 포함)

【입학자】 : 2019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모집정원 미달로 추가 모집한 입학자 포함), 정원내와 정원의외로 구분

※ 제외 : 재입학 및 편입학, 2+4 약학대학 입학자, 의학과·치위학과·한의학과 의 본과 진급생 및 교육대학의 계절제 편입생

※ 입학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한함

【정원내 입학자】 : 정원내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 수

【정원의외 입학자】 : 전형유형에 따라 산업체위탁생, 계약학과, 군위탁생, 농어촌학생, 재외국민과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자 등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 (정원내 입학자 수 / 정원내 모집인원) × 100

【경쟁률】 : (정원내 지원자 수 / 정원내 모집인원),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표시

■ 참고사항

○ 신입생 충원 현황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9. 4. 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4-라. 학생 총원 현황 (편입학 포함)

4-라-1. 재학생 총원을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9년 계열별 재학생 총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 4. 1.)

	계열	학생정원(A)	학생 모집정지 인원(B)	재학생			재학생 총원율(%) {C/(A-B)}×100	정원내 재학생 총원율(%) {D/(A-B)}×100
				계(C)	정원내(D)	정원외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합계							

■ 검증사항

【계열별 학생정원】 : <6-나> 학부 계열별 학생정원과 반드시 같아야 함

【재학생 수 합계】 : <4-마> 재학생(계, 정원내, 정원외)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계열】 : 「대학설립운영규정」, 「기술대학 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계열 구분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1>에 의해 분류

	포함되는 소계열
·사회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자연과학계열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계열	공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계열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통합학과 운영으로 계열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최초 전공 또는 계열구분 연도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류

② 기술대학 : 기술대학 설립·운영규정의 <별표1>에 의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사회실무계열	경영·관광·유통·보험 및 실용예술 등
자연공학계열	해양농학수산이학 및 공학 등

【학생정원】

①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구분	학생정원 산출공식	
편제가 완성된 대학	5개학년 편성교	2019~2015학년도 입학정원의 합(2015학년도는 5학년 입학정원)
	4개학년 편성교	2019~2016학년도 입학정원의 합
신설 및 학제변경으로 인해 편제가 미완성된 대학	3개학년 편성교(2017년도 신설교)	2019학년도 입학정원 + 2018학년도 입학정원 + 2017학년도 입학정원
	2개학년 편성교(2018년도 신설교)	2019학년도 입학정원 + 2018학년도 입학정원
	1개학년 편성교(2019년도 신설교)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의예과, 의학과, 치의예과, 치의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등	의예과 1, 2학년 정원	자연과학계열 2019학년도와 2018학년도에 입력
	의학과 1~4학년 정원	의학계열 2019~2016학년도에 입력

② 사이버대학 : 2019~2016학년도 신입학 입학정원 + 2019~2018학년도 별도편입학 입학정원

【재학생】 : 2019. 4. 1. 현재 정원내, 정원의 재학생

【학생모집정지인원】 : 학생정원이 산출되는 학년도의 계열별 입학정원에서 행정처분으로 학생 모집이 정지된 인원

【재학생 충원율(%)】 : {재학생 수 / (학생정원 - 학생 모집정지 인원)} × 100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 {정원내 재학생 수 / (학생정원 - 학생 모집정지 인원)} × 100

■ 참고사항

재학생 증원율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9. 4. 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입니다

- 편제 미완성교의 학생정원은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4-라-2. 편입학 선발 결과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편입학 선발 결과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학년도 후기(9월), 2019학년도 전기(3월))

	모집시기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자						등록인원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일반 편입	기타	학사 편입	특별 편입학	기타		일반 편입	기타	학사 편입	특별 편입학	기타		일반 편입	기타	학사 편입	특별 편입학	기타	
				학과별구분	학과별구분불가							학과별구분	학과별구분불가							
	합계		-		-		-		-											

■ 작성지침

【모집시기】 : 전기, 후기 중 선택

【모집단위】 : 2018학년도 후기(9월), 2019학년도 전기(3월) 편입생을 모집한 모든 모집단위

【모집인원】 : 총모집계획인원 = 정원내 편입학 모집인원(일반편입 및 기타) + 정원외 편입학 모집인원(학사편입 및 기타)

【정원내】 : ① 모집인원의 정원내 편입학(일반편입) = {전년도(4. 1., 10. 1. 기준) 1, 2학년 총 결손인원 × 4대요건 확보율에 따른 산정비율} +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 인원 + 기타

※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인원 :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에서 교육부로부터 다음연도(또는 다다음연도)의 신입생 인원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인원을 신입생 인원으로 이월 신청하지 않은 인원

예시 A학과 모집정원이 50명이고, 당해연도에 10명을 충원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또는 다다음연도)의 신입생 인원으로 이월 신청 가능한 인원이 1명인데, 동 1명에 대해 다음연도(또는 다다음연도)의 신입생 인원으로 이월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편입학 여석으로 사용 가능

※ 정원내 기타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2+4 약학대학 입학자,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전환에 따른 학사편입학자, 산업대학 중 당해연도 입학정원으로 3학년 편입학을 모집한 인원을 입력

② 정원내 편입학 모집인원(사이버대학의 경우만 해당) = 해당년도 입학정원 - {전년도(4. 1., 10. 1. 기준) 1, 2 학년 총 결손인원}

정원의외 : 모집인원의 정원의 편입학(학사편입 및 기타) = 학사편입학 + 폐교에 따른 특별편입학자 + 재외국민과외국인 등 + 농어촌학생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학생 + 의료인력·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소지자 + 특성화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산업체 재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기타

【정원의외-특별편입학】 : 「고등교육법」 제62조(학교 등의 폐쇄)의 교육부 학교폐쇄 명령 또는 자진 폐교인가에 따라 폐교된 대학에서 본 대학으로 정원의 특별편입학한 자 수

【정원의외-기타】 :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 농어촌학생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학생 + 의료인력·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소지자 + 특성화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산업체 재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기타

※ 참고 : 학과별로 구분되는 경우, 학과별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학과별로 구분이 안될 경우, 합계수준에서 기입

【지원자】 : 2018학년도 후기(9월) 및 2019학년도 전기(3월) 편입학 모집에 지원한 모든 지원자 수

【등록인원】 : 편입학 시험에 합격하여 편입학이 허가되고 등록을 완료한 인원

※ 사이버대학의 별도편입생은 입력에서 제외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참고사항

- 재적 학생 현황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9. 4. 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4-바-1. 외국인 유학생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9년 국가별 외국인 학생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 4. 1.)

연도	국가	계 (D=A+B+C)	학위과정(대학)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B)	연수과정					언어능력			기숙사 수용 여부								
			소계 (A)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예체능 계열	의학 계열		소계 (C)	어학 연수생	교환학 생	방문학 생	기타 연수생	계(E)	TOPIK 4급이상 (예체능 3급) 이상 학생 수	영어트랙 TOEFL 530수준 이상 학생 수	언어능력 충족 학생비율(% (E/A)×100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계 (F)	수용	미수용	계 (G)	수용	미수용		
	합계																									

■ 검증사항

- [기숙사 수용 여부 - 학위과정] 계(F)는 학위과정 소계(A)와 일치해야 함
- [기숙사 수용 여부 - 비학위과정] 계(G)는 교육과정 공동운영생(B), 연수과정 소계(C)의 합과 일치해야 함
- 한명의 학생이 두 개 이상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한쪽에만 입력함

■ 작성지침

[국가] : 재적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수를 출신 국가별로 입력(순수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국적 재외동포도 포함)

외국국적 재외동포의 국가 : 재외○○동포

※ 연변(조선)족 : 재외중국동포

※ 북한이탈자 : 외국인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입력

【학위과정(대학)】 : ① 2019. 4. 1. 현재 해당 대학에 재적 중인 외국인 정규 학위과정 유학생, 재학생, 휴학생, 학사학위취득 유예학생 모두 입력. 단,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은 제외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동향의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를 포함하되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및 편입생 등을 포함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과 협약에 의하여 학위과정의 교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외국인 유학생

【연수과정 - 어학연수생】 : 대학부설 어학원 등 비학위과정(Non-degree Program)인 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여 수학하고 있지만 학점은 취득하지 않는 유학생

【연수과정 - 교환학생】 :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해서 상호 학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연수과정 - 방문학생】 : 학교간의 협정이 아닌 개인의 해당대학 방문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연수과정 - 기타 연수생】 : 정규학위과정 학생,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을 제외한 기타 연수생

【언어능력 - TOPIK 4급 이상(예체능 3급 이상) 학생 수】 : 학위과정생(대학) 중, TOPIK 시험에 응시하여 4~6급(예체능계의 경우 3~6급)의 자격을 취득한 학생 수

【언어능력 - 영어트랙 TOEFL 530수준 이상 학생 수】 :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영어 능력 TOEFL 530점(또는 IBT 71, IELTS 5.5, TEPS 600) 이상 취득한 학생 수. 단, TOEIC 성적은 해당되지 않음

※ 1인의 학생이 TOPIK 4급 이상(예체능 3급 이상) 자격과 영어트랙 TOEFL 530수준 이상일 경우, 둘 중 하나에만 입력

【언어능력 충족 학생비율(%)】 : 학위과정생(대학) 중, TOPIK 4급 이상 (예체능계의 경우 3급 이상), 영어 능력 TOEFL 530점(또는 IBT 71, IELTS 5.5, TEPS 600) 이상 획득한 학생 비율, 단 TOEIC 성적은 해당되지 않음. (언어능력 총계 / 학위과정(대학) 소계)×100

【기숙사 수용 여부 - 학위과정(수용/미수용)】 : 2019.4.1. 현재 해당 대학에 재적 중인 외국인 학위과정 유학생

【기숙사 수용 여부 - 비학위과정(수용/미수용)】 : 2019.4.1. 현재 해당 대학에 재적 중인 외국인 비학위과정 유학생

※ 사이버 및 원격대학은 학제특성을 고려하여 기숙사 수용여부, 언어능력은 입력하지 않음

■ 참고사항

○ 외국인 유학생 현황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9. 4. 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4-바-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8년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 3. 1. ~ 2019. 2. 28., 재적학생 : 2018. 4. 1.)

국가	외국인 재적학생							중도탈락 학생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B/A)×100
	총계(A)	학위과정 (대학)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 연수생	총계(B)	학위과정 (대학)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 연수생	
합계															

■ 검증사항

- [외국인 재적학생 총계] : 2018년 <4-바-1> 외국인 유학생 총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한 명의 학생이 두 개 이상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한쪽에만 입력함

■ 작성지침

[국가] : 재적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수를 출신 국가별로 입력(순수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국적 재외동포도 포함)

※ 외국국적 재외동포의 국가 : 재외○○동포

※ 연변(조선)족 : 재외중국동포

※ 북한이탈자 : 외국인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입력

[학위과정(대학)] : ① 2018. 4. 1. 현재 해당 대학에 재적 중인 외국인 정규 학위과정 유학생, 재학생 및 휴학생 모두 입력. 단,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은 제외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동향의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를 포함하되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및 편입생 등을 포함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과 협약에 의하여 학위과정의 교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 : 대학부설 어학원 등 비학위과정(Non-degree Program)인 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여 수학하고 있지만 학점은 취득하지 않는 유학생

교환학생 :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해서 상호 학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방문학생 : 학교간의 협정이 아닌 개인의 해당대학 방문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기타 연수생 : 정규학위과정(대학)생,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을 제외한 기타 연수생

중도탈락 학생 : 2018. 3. 1. ~ 2019. 2. 28.까지 제적생과 자퇴생의 합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 (중도탈락 학생 수/외국인 재적학생 수)×100

※ 외국인 재적학생 수 자료기준일(2018. 4. 1.)과 중도탈락 학생 수 자료기준일(2018. 3. 1. ~ 2019. 2. 28.)의 차이로 인하여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예시 A 유학생 중 2018. 4. 1. 기준 재적학생은 5명, 2018년 9월에 입학했다가 중도탈락한 학생이 7명일 경우, 중도탈락학생 비율은 7명/5명×100=140%

■ 참고사항

- 외국인 유학생 재적학생 수는 2018년도 <4-바-1>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연계 활용할 예정임
- 중도탈락 학생 현황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2018년 3월 자료는 '2018년 상반기'에 기 제출 자료 활용
 - 2018년 4월 ~ 2018년 9월 자료는 '2018년 하반기'에 기 제출 자료 활용
 - 2018년 10월 ~ 2019년 2월 자료는 '2019년 상반기'에 기 제출 자료 활용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수업연한 초과] : 수업연한 경과로 제적된 학생 수

【기타】 : 위에 열거한 사유 외의 내용으로 제적된 학생 수

【중도탈락학생비율(%)】 : (중도탈락 학생 수/ 재적학생 수) × 100

※ 재적학생 수 자료기준일(2018. 4. 1.)과 중도탈락 학생 수 자료기준일(2018. 3. 1. ~ 2019. 2. 28.)의 차이로 인하여 중도탈락학생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예시 A학과 3월 입학생 20명 중 12명이 3월에 중도탈락하여 2018. 4. 1. 기준 재적학생이 8명일 경우, 중도탈락학생비율은 12명/8명×100=150%

■ 참고사항

- 재적학생 수는 2018년도 <4-마> 재적학생 현황을 연계 활용할 예정임
- 중도탈락 학생 현황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2018년 3월 자료는 '2018년 상반기'에 기 제출 자료 활용
 - 2018년 4월 ~ 2018년 9월 자료는 '2018년 하반기'에 기 제출 자료 활용
 - 2018년 10월 ~ 2019년 2월 자료는 '2019년 상반기'에 기 제출 자료 활용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작성지침

총 입학자 : 2019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모집정원 미달로 추가 모집한 입학자 포함), 정원내와 정원외를 포함

※ 제외 : 재입학 및 편입학, 2+4 약학대학 입학자, 사이버대학 3학년 별도편입학,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의 본과 진급생 및 교육대학의 계절제 편입생

<<학교유형은 2019학년도 3월 신입생이 졸업한 고교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입력(2015. 1. 1. 시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5050호)기준)>>

예시 1 2016년 A고교(일반고)에 입학했지만 B고교(특성화고)로 전학하여 2019년 2월 B고교에서 졸업한 경우, B고교(특성화고)의 2016년 고교유형으로 입력(졸업하는 학교의 2016년 유형)

예시 2 2016년 A고교(일반고)에 입학했지만 2017년에 A고교가 자율고로 전환된 경우, A고교의 2016년 고교유형(일반고)으로 입력(입학연도 기준의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특수목적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의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특성화 고등학교(대안교육 특성화고 포함)

【자율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4항의 자율고등학교

【영재학교】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지정된 영재학교

【검정고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3조의 합격자

【기타】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고등학교, 폐교 등

■ 참고사항

-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지원 위반자 시스템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5-가. 졸업생 현황

5-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졸업소요기간] : (졸업연도-입학연도), 각 연도별 졸업생의 졸업소요기간을 “〇〇년 〇〇개월”로 산출하여 기입, 졸업소요기간의 소계와 합계에는 평균치를 기입 (“〇〇년 〇〇개월”로 기입)

※ 학과명칭 변경, 신설, 폐과, 학부제 등으로 인해 졸업자가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비교란에 특이사항을 명기

■ 참고사항

- 졸업생 현황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진학자 : 2017년 8월과 2018년 2월 졸업자 중 2018. 12. 31. 기준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 진학, 편입, 재 진학한 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2019년 입학허가서를 받은 진학예정자는 진학자로 인정하지 않음

※ 해외 어학연수자, 학점은행제 및 특정 학점인정기관(예 :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 훈련기관, 평생교육원 등)에 입학한 자는 제외

【국내전문대학】 :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내의 전문대학으로 진학한 자

【국내대학】 : 학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내의 대학으로 진학한 자, 학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내의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에 진학한 자

【국내대학원】 : 석·박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내의 대학원에 진학한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을 통해 국내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 입학한 경우 ‘국내대학원’ 진학자로 입력

【국외전문대학】 :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외의 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국외대학】 : 학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외의 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국외대학원】 : 석·박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외의 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진학률(%)】 : (진학자수/졸업자수) × 100

※ 학과명칭 변경, 신설, 폐과, 학부제 등으로 인해 졸업자가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비교란에 특이사항을 명기함

■ 참고사항

- 졸업생의 진학 현황(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학교)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 12. 3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 12. 31. 기준)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5-나-(2) 졸업생의 진학 현황(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졸업자 중 진학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년 8월 졸업자 2018. 10. 1., 2019년 2월 졸업자 2019. 4. 1.)

연도	졸업연도	단과대학	학과 (전공)	구분	학과 특성	졸업자(A)		진학자(B)												진학률(% (B/A)×100				
								계		국내						국외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8년 8월																							
	2019년 2월																							
	합계																							

■ 검증사항

【졸업자 합계(남, 여)】 : <2-가-4>, <5-가>의 졸업자 합계(남, 여)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학과(전공)】 :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졸업생이 있는 모든 학과

【졸업자】 :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졸업자로 학사 등록이 된 자

※ 외국인 유학생 중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 등은 입력에서 제외

【진학자】 : 2018년 8월 졸업자는 2018. 10. 1. 기준, 2019년 2월 졸업자는 2019. 4. 1. 기준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 진학, 편입, 재 진학한 자

※ 해외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고, 학위 준비과정으로 어학연수 코스에 진학한 자는 포함

※ 해외 어학연수자, 학점은행제 및 특정 학점인정기관(예 :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 훈련기관, 평생교육원 등)에 입학한 자는 제외

【국내전문대학】 :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내의 전문대학으로 진학한 자

국내대학 : 학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내의 대학으로 진학한 자, 학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내의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에 진학한 자

【국내대학원】 : 석·박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내의 대학원에 진학한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을 통해 석·박사 과정에 입학한 경우 ‘국내대학원’ 진학자로 입력

【국외전문대학】 :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외의 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국외대학】 : 학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외의 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국외대학원】 : 석·박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외의 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진학률(%)】 : (진학자수/졸업자수) × 100

※ 학과명칭 변경, 신설, 폐과, 학부제 등으로 인해 졸업자가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비교란에 특이사항을 명기함

■ 참고사항

- 졸업생의 진학 현황(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 10. 1., 2019. 4. 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 10. 1., 2019. 4. 1. 기준)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검증사항

졸업자 합계(남, 여) : 졸업자는 2018년 <5-가>, <5-나>, 2019년 <5-나>의 졸업자 합계(남, 여)와 반드시 같아야 함

진학자 합계(남, 여) : 진학자는 2019년 <5-나>의 진학자 합계(남, 여)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학과(전공)】 : 2017년 8월과 2018년 2월 졸업생이 있는 모든 학과

【졸업자】 : 2017년 8월과 2018년 2월 졸업자로 학사 등록이 된 자

※ 외국인 유학생 중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 등은 입력에서 제외

【취업자】 : 2017년 8월과 2018년 2월 졸업자 중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건강보험DB연계 취업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건강보험DB를 통해 확인)

※ 단, 교외취업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도 대학의 재정지원[교비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정부재정지원금(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등을 포함한 대학의 모든 회계]으로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아 한시적으로 취업한 졸업자는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음

* 졸업자가 대학으로부터 인건비를 직접 지원받는 경우, 또는 대학이 졸업자의 인건비를 기업체에 지원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함

【해외취업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해외 국가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

【농림어업종사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림어업종사자 정의 :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거하여 농업인확인서 발급이 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용),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어업인용), 어업허가내역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 자료를 제출한 자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졸업 이후부터 조사기준일(2018. 12. 31.)까지 개인작품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자

【1인 창(사)업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국세청DB에서 2018년에 사업자등록 사실과 2018년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665만원 이상이 확인된 자 또는 2018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하는 기술형 창업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정부 창업경진대회 수상한 경우(본선 진출자 이상),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특허 및 실용신안을 보유한 경우, 벤처캐피털, 엔젤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국세청DB에서 2018년 월천정수 대상 사업소득이 4,056,690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자

【진학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 진학, 편입, 재 진학한 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2019년 입학허가서를 받은 진학예정자는 진학자로 인정하지 않음

※ 해외 어학연수자, 학점은행제 및 특정 학점인정기관(예 :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 훈련기관, 평생교육원 등) 입학자는 제외

입대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군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수행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외국인유학생 : 외국국적을 가진 유학생(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으로 진학, 취업 등 졸업 후 상황과 관계없이 졸업자 중 외국인 학생 수를 입력

건강보험직장가입제외대상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자가 아니므로 취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 (의료급여 수급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종교지도자 양성관련학과 졸업자, 경찰공무원 채용 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 후보자 중 훈련생)

기타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취업, 진학, 입대, 취업불가능, 미상, 제외인정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미상 : 조사기준일(2018. 12. 31.)당시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자

취업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해외취업자+농림어업종사자+개인창업활동 종사자+1인(창)사업자+프리랜서)/(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 대상자))] × 100

입학당시 기취업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입학당시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가진 자

교내취업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대학(산학연,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포함)에 취업한 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최저 임금 이상의 월급여(1,352,230원)를 받는 자로서 사업장(학교,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에서 상시 근무하는 자. 이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는 자는 취업자로 불인정

※ 계약만료 이전에 사직한 교내취업자는 사직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직 후 후임자가 없을 경우 취업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유지취업률(%) : 취업통계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일정기간 경과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유지되고 있는 비율(수시(4회)), (2018. 12. 3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추가조사 시점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2018. 12. 3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100

- 1차 유지취업률 = $\frac{\text{'18년 12월}'\text{'19년 3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text{'18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times 100$
- 2차 유지취업률 = $\frac{\text{'18년 12월}'\text{'19년 3월}'\text{'6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text{'18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times 100$
- 3차 유지취업률 = $\frac{\text{'18년 12월}'\text{'19년 3월}'\text{'6월}'\text{'9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text{'18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times 100$
- 4차 유지취업률 = $\frac{\text{'18년 12월}'\text{'19년 3월}'\text{'6월}'\text{'9월}'\text{'11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text{'18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times 100$

※ 학과명칭 변경, 신설, 폐과, 학부제 등으로 인해 졸업자가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비교란에 특이사항을 명기함

■ 참고사항

○ 졸업생의 취업 현황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 12. 3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6-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교원
- 2019. 4. 1.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 대학원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전임교원 수준의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전담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인문한국사업: HK, 중점연구소사업 등)의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
 - ※ 소속학과는 수행하는 업무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
- 국·공립대 기금교수(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전임교원에 포함
 -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라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된 교원
 -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 근무 계약교원
- HK교수 : 국·공립대는 ‘HK교수 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 같은 처우로 계약되고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교원, 사립대는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 국공립대 산학협력중점교수 관련 규정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임용된 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임교원으로 포함하며, 사립대는 교육부 산학협력 중점교수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에 한하여 전임교원으로 포함

※ 인정 제외대상 교원(기타 비전임교원으로 분류)

- ①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 ②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교원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 ③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 총장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음

【비전임교원】 :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및 기타비전임교원의 실제인원을 입력

【겸임교원】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4항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교원
- 원소속(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이 3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단, 전일근무를 하는 겸임교원은 원소속(본직)기관의 휴직자도 포함 가능)

* 정규직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직원을 의미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교원

- 과목이 겸임교원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용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 ※ 인정 제외대상 교원(기타교원으로 분류)
 - ① 겸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 ②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교원
 - ③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담당과목이 부합되지 아니한 자(순수 학술이론을 강의하는 자)
 - ④ 본직기관의 비상근 근무자,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전임연구원
- [초빙교원]**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4항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 근무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약된 교원
 -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 받는 교원
 - 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교원
 - 2019. 4. 1.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대학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 ※ 인정 제외대상 교원(기타교원으로 분류)
 - ① 초빙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 ②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전임연구원
- [시간강사]** : 2019. 4. 1. 현재 재직 중인 시간강사의 실제 인원
- [기타교원]** : 전임교원 및 겸·초빙교원, 시간강사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으로, 전임교원 및 겸·초빙교원의 인정제외자를 포함하여 입력

■ 참고사항

-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9. 4. 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6-가-2. 전체 신규 전임교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9년 학과별 신규 전임교원 현황 (전체, 대학원 소속 교원 포함)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은 작성지침 참고)

(원)명	기준일자	단과대학	학과 (전공)	합계		신규 전임교원							
						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8.10.1.												
	2019.4.1.												

■ 작성지침

【학과(전공)】 : 2018. 10. 1.과 2019. 4. 1. 기준의 모든 학과를 가리키며, 교원의 소속에 따라 입력함

예시 대학의 경영학과 소속일 경우 경영학과 소속으로, 경영대학원 소속일 경우 경영대학원 소속으로 입력

※ 교원의 임용/발령된 소속학과가 없을 경우, 소속학과없음으로 입력, 혹은 강의 담당 비율이 높은 학과로 입력, 혹은 담당업무와 밀접한 학과로 입력

【신규 전임교원】 : 2018. 4. 2. ~ 2018. 10. 1. 동안 신규 임용되어 2018. 10. 1. 당시에도 근무 중인 전임교원과 2018. 10. 2. ~ 2019. 4. 1. 동안 신규 임용되어 2019. 4. 1. 당시에도 근무 중인 전임교원

※ 2018. 10. 1. 기준 신규 전임교원의 소속은 2018년 하반기 기준, 2019. 4. 1. 기준 신규 전임교원의 소속은 2019년 상반기 기준임

■ 참고사항

- 전체 신규 전임교원 현황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 10. 1. 및 2019. 4. 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6-나-(1)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9년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생 1인당 전임교원 확보율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 4. 1.)

연도	계열	학생 현황						전임교원 현황		교원 법정정원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전임교원 확보율	
		학부		대학원		계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 (B)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B')	계		학생정원 기준 (A/B)	재학생 기준 (A'/B')	학생정원 기준 (B/C×100)	재학생 기준 (B'/C'×100)
		학생정원	재학생	학생정원	재학생	학생정원 (A)	재학생 (A')			학생정원 기준 (C)	재학생 기준 (C')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합계														

■ 검증사항

학생현황 - 학부 계열별 학생정원] : <4-라-1> 계열별 학생정원과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학생현황] : 학부 및 대학원 학생정원과 재학생

[계열] : 대학설립운영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계열 구분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1>에 의해 분류

	포함되는 소계열	비고
·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이학해양농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 등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등 예과는 자연과학계열에 포함

※ 통합학과 운영으로 계열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최초 전공 또는 계열구분 연도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류

② 기술대학 :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1>에 의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비고
사회실무계열 자연공학계열	경영관광유통보험 및 실용예술 등 해양농수산이학 및 공학 등	

[학생정원]

①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구분	학생정원 산출공식		비고
편제가 완성된 대학	5개학년 편성교	2019~2015학년도 입학정원의 합(2015학년도는 5학년 입학정원)	
	4개학년 편성교	2019~2016학년도 입학정원의 합	
신설 및 학제변경으로 인해 편제가 미완성된 대학	3개학년 편성교(2017년도 신설교)	2019학년도 입학정원 + 2018학년도 입학정원 + 2017학년도 입학정원	
	2개학년 편성교(2018년도 신설교)	2019학년도 입학정원 + 2018학년도 입학정원	
	1개학년 편성교(2019년도 신설교)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의예과, 의학과, 치의예과, 치의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등	의예과 1,2학년 정원	의예과 1학년, 2학년 정원: 자연과학계열 2019학년도와 2018학년도에 입력	
	의학과 1~4학년 정원	의학과 1학년~4학년 정원: 의학계열 2019~2016학년도에 입력	

② 대학원 : 입학정원의 합을 의미하며, 대학원의 종류에 따라 입학정원을 근거로 대학원 학생정원 산출기준에 따라 환산

		산출공식		비고
완성된 대학원	4학기제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	(2019+2018학년도 입학정원)×1.5	
		전문대학원/대학원대학	(2019+2018학년도 입학정원)×2	
	5학기제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	(2019+2018+2017학년도 입학정원의 1/2)×1.5	
		전문대학원/대학원대학	(2019+2018+2017학년도 입학정원의 1/2)×2	
	6학기제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	(2019+2018+2017학년도 입학정원)×1.5	
		전문대학원/대학원대학	(2019+2018+2017학년도 입학정원)×2	
	8학기제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	(2019+2018+2017+2016학년도 입학정원)×1.5	
		전문대학원/대학원대학	(2019+2018+2017+2016학년도 입학정원)×2	
편제가 미완성된 대학원	1~2학기 (1차연도)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	(2019학년도 입학정원)×1.5	
		전문대학원/대학원대학	(2019학년도 입학정원)×2	
	3~4학기 (2차연도)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	(2019+2018학년도 입학정원)×1.5	
		전문대학원/대학원대학	(2019+2018학년도 입학정원)×2	
	5~6학기 (3차연도)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	(2019+2018+2017학년도 입학정원)×1.5	
		전문대학원/대학원대학	(2019+2018+2017학년도 입학정원)×2	

학생정원 산출 공식에 따라 산출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산정

- ③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학생정원 환산 방법
 - 총정원이 500명 미만인 경우

$$\text{연별 환산정원} = (500\text{명} - \text{총정원}) \times \frac{\text{계열별 학생정원}}{\text{총정원}} + \text{계열별 학생정원}$$

- 총정원이 200명 미만인 경우

$$\text{계열별 환산정원} = (200\text{명} - \text{총정원}) \times \frac{\text{계열별 학생정원}}{\text{총정원}} + \text{계열별 학생정원}$$

【재학생】 : 2019. 4. 1. 현재 재학 중인 자(단, 계약학과 및 원격학과 재학생 수 제외, 원격대학원 재학생 수 제외)

- ① 대학 : 2019. 4. 1. 현재 재학 중인 학생 수
 ② 대학원 : 2019. 4. 1. 현재 재학생 수를 대학원 종류에 따라 아래 산출 공식에 따라 환산 인원 산출

< 재학생 환산 인원 공식 >

- ㉠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계절제 교육대학원 : (A+B+D+E)×1.5+(C/2)×1.5
 ㉡ 전문대학원, 대학원대학 : (A+B+D+E)×2.0+(C/2)×2.0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계절제 교육대학원의 경우

	수업연한별 재학생 수					공식	재학생 환산 인원 계 (A+B+D+E)×1.5+(C/2)×1.5	
	2년(4학기)(A)	2.5년(5학기)		3년(6학기)(D)	4년(8학기)(E)			계(F)
		올해+전년도 입학자(B)	제작년 이전 입학자(C)					
석사과정						1.5		
박사과정						1.5		
석/박사통합과정						1.5		
소계								

○ 전문대학원, 대학원대학의 경우

구분	수업연한별 재학생 수					공식	재학생 환산 인원 계 (A+B+D+E)×2.0+(C/2)×2.0	
	2년(4학기)(A)	2.5년(5학기)		3년(6학기)(D)	4년(8학기)(E)			계(F)
		올해+전년도 입학자(B)	제작년 이전 입학자(C)					
석사과정						2.0		
박사과정						2.0		
석/박사통합과정						2.0		
소계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교원
- 2019. 4. 1.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전임교원 수준의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전담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인문한국사업: HK, 중점연구소사업 등)의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
 - ※ 소속학과는 수행하는 업무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

○ 국·공립대 기금교수(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전임교원에 포함

-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라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된 교원
-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 근무 계약교원

○ HK교수 : 국·공립대는 ‘HK교수 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 같은 처우로 계약되고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교원, 사립대는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 국공립대 산학협력중점교수 관련 규정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임용된 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임교원으로 포함하며, 사립대는 교육부 산학협력 중점교수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에 한하여 전임교원으로 포함

※ 휴직상태의 교원 중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경우(아래의 사유 외에 기타 청원에 의한 휴직은 교원확보율에서 제외됨)

교육공무원법 제 44조(휴직)의 사유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

- ② 학교의 정관에 명시된 사유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
- ③ 고용휴직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학교에 휴직하고 산업체에서 급여를 받음.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 2 참고)

※ 인정 제외대상 교원

- ①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 ②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교원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 ③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 총장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음

※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의 전임교원 수에서 제외됨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 재학생 기준 교원확보율 및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산출 시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에서 안식년/연구년제 교원(국립·공립·사립), 파견 교원(국립·공립) 중 전임교원 조건 미충족자를 제외한 교원 수

참고

<교원확보율 및 교원1인당 학생 수(재학생 기준)에서 제외되는 전임교원>

	설립구분	관련 규정	제외 교원
/연구년제	국립·공립·사립	연구의무 부과, 선발요건 및 인원제한, 종료 후 의무복무 근거 마련, 지정제한 등	안식년/연구년제 근거 및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안식년/연구년제 교원
파견	국립·공립	안식년/연구년제와 유사한 수준의 의무 부여 및 이와 연계한 지정제한 등	파견규정 근거 및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파견교원

<안식년/연구년 교원(국립·공립·사립) 및 파견교원(국립·공립) 전임교원 인정 조건>

- 1) 안식년/연구년 교원(국립·공립·사립)
 - 학칙 또는 규정에 안식년/연구년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연구의무 부과, 선발요건 및 인원제한, 종료 후 의무복무 근거 마련, 지정제한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전임교원에 포함

/연구년 관련 규정 예시(안)

- ▶ (의무사항) 1)종료 후 연구보고서 제출, 2)안식년·연구년 기간 00배 의무복무
- ▶ (선발요건) 재직기간 00년 이상인 자
- ▶ (선발인원) 안식년·연구년 및 파견 포함 전체 교수의 00% 이내
- ▶ (지정제한) 최근 00년 이내 안식년·연구년, 최대 00회, 통산 00년 등

- 2) 파견교원(국립·공립)

- 학칙 또는 규정에 파견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

- 임용령 제7조의3 7호 파견교원에게는 안식년/연구년과 유사한 수준의 의무를 부여, 안식년/연구년과 연계한 지정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만 전임교원에 포함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7호 :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7호 파견 관련 규정 예시(안)
 ▶ (지정제한) 최근 00년 이내 안식년/연구년/파견인 경우 제한
 ▶ (기타 선발요건·인원·의무사항) 안식년/연구년 교원과 유사하게 규정

교원 법정정원]

-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1항 별표5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학생정원, 재학생별)하되, 소수점이하는 올림하여(예 : 환산인원이 5.2명일 경우 6명) 교원 법정정원을 산출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1인당 학생 수	25	20	20	20	8

- 기술대학 :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제1항 별표4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학생정원, 재학생별)하되, 소수점이하는 올림하여(예 : 환산인원이 5.2명일 경우 6명) 교원 법정정원을 산출

대계열	사회실무	자연공학
교원 1인당 학생 수	25	20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생정원 기준】 : (학생정원/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 재학생 기준】 : (재학생/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

【전임교원확보율 - 학생정원 기준】 :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학생정원 기준 교원 법정정원×100),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

【전임교원확보율 - 재학생 기준】 :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재학생 기준 교원 법정정원×100),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

■ 참고사항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9. 4. 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6-나-(2)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사이버대학)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9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 4. 1.)

	학생 현황							전임교원 현황		교원 법정정원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정원			재학생				학생정원 기준 (B)	재학생 기준 (B')	학생정원 기준(C)	재학생 기준 (C')	학생정원 기준 (A/B)	재학생 기준 (A'/B')	학생정원 기준 (B/C×100)	재학생 기준 (B'/C'×100)	
	학부	대학원	계 (A)	학부	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계 (A')									

■ 검증사항

【학생현황 - 학부 학생정원】 : <4-라-1> 학생정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학생현황】 : 학생정원, 재학생 및 시간제등록생

【학생정원】

① 학부 : 2019~2016학년도 신입학 입학정원 + 2019~2018학년도 별도편입학 입학정원

② 대학원 : 입학정원의 합을 의미하며, 대학원의 종류에 따라 입학정원을 근거로 대학원 학생정원 산출기준에 따라 환산

< / 5학기제 >

		산출공식	비고
완성된 대학원		(2019+2018+2017학년도 입학정원의 1/2)×1.5	
편제가 미완성된 대학원	1~2학기(1차연도)	(2019학년도 입학정원)×1.5	
	3~4학기(2차연도)	(2019+2018학년도 입학정원)×1.5	

【재학생】

- ① 학부 : 2019. 4. 1. 현재 재학중인 자(정원내 및 정원외 전체)
- ② 대학원 : 2019. 4. 1. 현재 재학생 수를 아래 산출 공식에 따라 환산 인원 산출

2.5년(5학기)		공식	재학생 환산 인원 계 (A×1.5)+(B/2×1.5)
올해+전년도 입학자(A)	제작년 이전 입학자(B)		
		1.5	

- ③ 시간제등록생 : 2019. 4. 1. 현재 시간제등록생 수 3명을 1명으로 환산하여 입력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교원
- 2019. 4. 1.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전임교원 수준의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전담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인문한국사업: HK, 중점연구소사업 등)의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
 - ※ 소속학과는 수행하는 업무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

○ 국·공립대 기금교수(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전임교원에 포함

-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라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된 교원
-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 근무 계약교원

○ HK교수 : 국·공립대는 ‘HK교수 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 같은 처우로 계약되고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교원, 사립대는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 국공립대 산학협력중점교수 관련 규정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임용된 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임교원으로 포함하며, 사립대는 교육부 산학협력 중점교수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에 한하여 전임교원으로 포함

휴직상태의 교원 중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경우(아래의 사유 외에 기타 청원에 의한 휴직은 교원확보율에서 제외됨)

- ① 교육공무원법 제 44조(휴직)의 사유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
- ② 학교의 정관에 명시된 사유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
- ③ 고용휴직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학교에 휴직하고 산업체에서 급여를 받음.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 2 참고)

※ 인정 제외대상 교원

- ①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 ②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교원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 ③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 총장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음

※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의 전임교원 수에서 제외됨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 재학생 기준 교원확보율 및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산출 시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에서 안식년/연구년제 교원(국립·공립·사립), 파견 교원(국립·공립) 중 전임교원 조건 미충족자를 제외한 교원 수

참고

< 및 교원1인당 학생 수(재학생 기준)에서 제외되는 전임교원>

	설립구분	관련 규정	제외 교원
/연구년제	국립·공립·사립	연구의무 부과, 선발요건 및 인원제한, 종료 후 의무복무 근거 마련, 지정제한 등	안식년/연구년제 근거 및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안식년/연구년제 교원
파견	국립·공립	안식년/연구년제와 유사한 수준의 의무 부여 및 이와 연계한 지정제한 등	파견규정 근거 및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파견교원

<안식년/연구년 교원(국립·공립·사립) 및 파견교원(국립·공립) 전임교원 인정 조건>

- 1) 안식년/연구년 교원(국립·공립·사립)
 - 학칙 또는 규정에 안식년/연구년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연구의무 부과, 선발요건 및 인원제한, 종료 후 의무복무 근거 마련, 지정제한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전임교원에 포함

안식년/연구년 관련 규정 예시(안)

- ▶ (의무사항) 1)종료 후 연구보고서 제출, 2)안식년·연구년 기간 00배 의무복무
- ▶ (선발요건) 재직기간 00년 이상인 자
- ▶ (선발인원) 안식년·연구년 및 파견 포함 전체 교수의 00% 이내
- ▶ (지정제한) 최근 00년 이내 안식년·연구년, 최대 00회, 통산 00년 등

- 2) 파견교원(국립·공립)

- 학칙 또는 규정에 파견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

- 임용령 제7조의3 7호 파견교원에게는 안식년/연구년과 유사한 수준의 의무를 부여, 안식년/연구년과 연계한 지정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만 전임교원에 포함
-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7호 :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7호 파견 관련 규정 예시(안)

- ▶ (지정제한) 최근 00년 이내 안식년/연구년/파견인 경우 제한
- ▶ (기타 선발요건·인원·의무사항) 안식년/연구년 교원과 유사하게 규정

교원 법정정원 : 학생의 학생정원과 재학생 수를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200명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소수점이하는 올림 하여(예 : 환산인원이 5.2명일 경우 6명) 교원 법정정원을 산출

○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조직 및 교원 등)

1. 사이버대학에는 학칙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 등을 둔다.
2. 사이버대학의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 등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 또는 학부 등에 전공별로 교원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총수는 학생 수를 2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를 올림 한다]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학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인원을 합한 수 또는 학생정원 중 그 수가 많은 인원

가. 대학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있는 정원 중 등록학생

다. 시간제등록 인원을 3으로 나눈 수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제1호의 학생 수와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를 합한 학생 수

※ 대학원이 있는 대학의 교원 법정정원(계)은 학부와 대학원의 학생 학생정원, 재학생을 각각 합한 후 교원 법정정원을 산출하는 교육기본통계조사의 교원 법정정원 지침을 따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생정원 기준】 : (학생정원/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 재학생 기준】 : (재학생/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

【전임교원확보율 - 학생정원 기준】 :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학생정원 기준 교원 법정정원×100),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

【전임교원확보율 - 재학생 기준】 :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재학생 기준 교원 법정정원×100),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6-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6-다-1. 국가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9년 국가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 4. 1.)

	국가	전임교원							
		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계								

■ 검증사항

[전임교원 합계] : <6-다-2> 전임교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국가] : 출신 국가명을 기입하고, 국가별 외국인 전임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분류

[전임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실제 인원을 입력

■ 참고사항

- 국가별 외국인 교원 현황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9. 4. 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6-다-2. 전공계열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9년 계열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 4. 1.)

연도	계열	전임교원							
		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소속학과 없음								
	합계								

■ 검증사항

【전임교원 합계】 : <6-다-1> 전임교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계열】 : 대학설립운영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계열 구분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1>에 의해 분류

	포함되는 소계열	비고
·사회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자연과학계열	이학해양농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계열	공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계열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통합학과 운영으로 계열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최초 전공 또는 계열구분 연도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류

② 기술대학 :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1>에 의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비고
사회실무계열	경영관광유통보험 및 실용예술 등	
자연공학계열	해양농수산이학 및 공학 등	

【전임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실제인원을 입력

■ 참고사항

- 전공계열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9. 4. 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7.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7-가.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

■ 작성지침

전임교원 : 2019. 4. 1. 현재 재직 중인 전임교원(휴직교원 포함)을 말하며,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분류, 외국인 전임교원 포함(<6-가> 전임교원 기준)

※ 총장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음

【연구재단 등재지(후보포함)】 : 소속대학 전임교원이 2018. 1. 1. ~ 12. 31. 기간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국내에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는 제외)에 게재된 논문 수

【기타 국내발간 일반학술지】 : 소속대학 전임교원이 2018. 1. 1. ~ 12. 31. 기간에 기타 국내발간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SCI급/SCOPUS 제외)에 게재된 논문 수

【SCI급/SCOPUS 학술지】 : 소속대학 전임교원이 2018. 1. 1. ~ 12. 31. 기간에 국제전문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에 게재된 논문 수, 국내에서 발행되는 SCI급/SCOPUS 학술지 게재 논문을 포함

※ SCOPUS의 문서 유형 중 Conference Paper, Article-in press, Conference Review, Short survey, Editorial, Letter, Note는 SCI급/SCOPUS학술지에서 제외(Editorial, Letter, Note는 2017. 3. 1.부터 제외 적용)

【기타 국제발간 일반학술지】 : 소속대학 전임교원이 2018. 1. 1. ~ 12. 31. 기간에 기타 국제발간 학술지(SCI급, SCOPUS 학술지 제외)에 게재된 논문 수

【논문게재실적】 : 논문게재 실적 산정 기준에 따라 산출

※ ISSN 번호 혹은 e-ISSN 번호가 존재하는 논문실적만 인정

※ 논문게재 실적 산정 기준

· 단독저자인 경우 실적은 1건이며

· 논문저자 수가 2명 이상일 경우, 주저자 실적= $\frac{2}{n+2}$, 교신저자 실적= $\frac{2}{n+2}$, 공동저자 실적= $\frac{1}{n+2}$

* n = 논문저자 수, 논문저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n=100으로 처리

· 학과별 논문실적 : 논문 1편당 실적은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학과별 논문실적은 해당학과 전임교원의 논문실적의 합계를 소수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넷째자리까지 표시

·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 : 학과별 논문실적/전임교원 수, 소수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넷째자리까지 표시

※ 저자의 구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함

· 저자의 구분(학문분야나 학술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아래의 지침을 따름)

– 주저자 : 일반적으로 학술논문의 저자 목록 중 첫 번째로 표기된 제1저자나 논문 작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

– 교신저자 : 학술지의 편집자와 서신 등을 주고받으며 논문 출판에 최종적으로 기여한 자 또는 연구프로젝트 책임자

– 공동저자 :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공동 참여 저자

【저·역서】 : 2019. 4. 1. 기준 소속대학 전임교원이 2018. 1. 1. ~ 12. 31. 기간에 출판한 단행본 저술실적(단위: 건수)을 의미하며, 저·역서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출

※ ISBN이 수록된 출판물만 인정

제외 :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개정증보판, 저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편집저자 등

※ 저·역서 수 산정 기준

· 단독저술 실적은 1건이며,

· 공동저술의 경우 : $\frac{1}{n}$

* n = 저술에 참여한 인원수, 연구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

· 학과별 저·역서 실적 : 저·역서 1편당 실적은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학과별 저·역서 실적은 해당학과 전임교원의 저·역서 실적의 합계를 소수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넷째자리까지 표시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국내】 : 국내논문실적/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국제】 : 국제논문실적/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포함)】 :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또는 등재후보(논문수)/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SCI급/SCOPUS 학술지】 : (SCI급 논문수 + SCOPUS 논문수) /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 저·역서 실적/전임교원 수

■ 참고사항

-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및 저·역서 실적은 한국연구재단 조사시스템(KRI)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8-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 8-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 8-라. 예·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 8-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 8-사. 적립금 현황
- 8-아. 기부금 현황
- 8-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 8-차. 등록금 현황
- 8-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8-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8-가-1. 국·공립대 대학회계 예산

■ 공시지침

【공시기관】 : 국·공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국·공립대학 대학회계 예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예산 - 2019 회계연도)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세입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세출	인건비	인건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운영비		
	교육활동수입	입학금,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물건비	여비	
		최고경영자과정 수업료,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			업무추진비	
		전형료 및 논문심사료			직무수행경비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연구용역비	
		부담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자산매각수입			이전지출	보전금
		이자수입				민간이전
	제재금수입	대학 부담금				
	기타수입	연구지원 대응사업비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자산취득 및 운용	건설보상비	
		보조금 등 사용잔액			건설비	
		전년도이월금			유형자산	
	내부거래 및 기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무형자산	
세입 합계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세출 합계			

■ 작성지침

예산] : 2019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자료

【유의사항】 : 세입예산합계와 세출예산합계는 일치해야함

※ 국공립대 예산 현황에 ‘별도의 회계를 사용하는 부속기관(부속중고, 부속병원 등)’의 현황은 포함되지 않음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가-2. 국·공립대 대학회계 결산

■ 공시지침

공시기관 : 국·공립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국·공립대학 대학회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결산 - 2018 회계연도)

				(: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세입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세출	인건비		인건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물건비		운영비	
	자체수입	교육활동수입	입학금,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이전지출		여비	
			최고경영자과정 수업료,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				업무추진비	
		전형료 및 논문심사료					직무수행경비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연구용역비	
		부담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자산매각수입					보전금	
		이자수입					민간이전	
		제재금수입					대학 부담금	
	기타수입		연구지원 대응사업비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자산취득 및 운용		건설보상비	
		보조금 등 사용잔액					건설비	
		전년도이월금					유형자산	
	내부거래 및 기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비비 및 기타		무형자산	
	세입 합계		세출 합계				예비비 및 기타	

※ 세입과 세출의 차액 사유 :

■ 작성지침

결산] : 2018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자료

【유의사항】 : 세입과 세출의 차액에 대한 설명을 추가

※ 국·공립대 결산 현황에 '별도의 회계를 사용하는 부속기관(부속중고, 부속병원 등)'의 현황은 포함되지 않음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8-다-1. 국·공립대 발전기금회계 예산

■ 공시지침

【공시기관】 : 국·공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국·공립대학 발전기금회계 예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예산 - 2019 회계연도)

(: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세입	이월금		세출	경상비		
	기부금			목적사업비	장학사업비	
					연구지원비	
					교육기자재 및 시설확충비	
	법인세환급금			기타사업비		
잡수입		기본재산증자비				
세입 합계		차기이월금				
		예비비				
		세출 합계				

■ 작성지침

【예산】 : 2019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자료

【이월금】 : 전년도 이월액을 의미

【기부금】 : 지정기부금(목적사업)과 일반기탁금을 모두 포함

【법인세 환급금】 : 법인세 환급금액을 의미

잡수입 :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을 의미

【경상비】 : 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업무추진비 등 재단 운영에 사용한 경비

【목적사업비 중 기타사업비】 : 장학사업, 연구지원, 교육기자재 및 시설확충비를 제외한 기타 사업

【기본재산증자비】 : 발전기금회계의 기본재산 증자비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다-2. 국·공립대 발전기금회계 결산

■ 공시지침

【공시기관】 : 국·공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국·공립대학 발전기금회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결산 - 2018 회계연도)

(: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세입	이월금		세출	경상비		
	기부금			목적사업비	장학사업비	
					연구지원비	
					교육기자재 및 시설확충비	
	법인세환급금			기타사업비		
잡수입		기본재산증자비				
		차기이월금				
		예비비				
세입 합계		세출 합계				

■ 작성지침

【결산】 : 2018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자료

【이월금】 : 전년도 이월액을 의미

【기부금】 : 지정기부금(목적사업)과 일반기탁금을 모두 포함

【법인세 환급금】 : 법인세 환급금액을 의미

【잡수입】 :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을 의미

【경상비】 : 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업무추진비 등 재단 운영에 사용한 경비

목적사업비 중 기타사업비】 : 장학사업, 연구지원, 교육기자재 및 시설확충비를 제외한 기타 사업

【기본재산증자비】 : 발전기금회계의 기본재산 증자비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라. 예·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국립대법인, 특별법법인

【공시시기】 : 당해연도 예산 - 6월, 전년도 결산 - 8월

【공시내용】 : 사립대학, 국립대법인, 특별법법인 예·결산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예산 - 2019 회계연도, 결산 - 2018 회계연도)

(: 원)

수입구분	당해연도 예산 (A)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B)	결산 (C)	차액 (B-C)	비고
법인회계(a)					
교비회계(b)					
내부거래제거(c)					
합계(a+b-c)					

※ 국립대법인, 특별법법인은 당해연도 수입지출 예산(6월),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8월) 현황을 대학 자체 양식에 따라 항 단위까지 작성하여 PDF파일로 공시

■ 작성지침

【법인회계】 : 법인일반회계

【교비회계】 : 특별회계를 포함

【당해연도 예산】 : 2019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자료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 2018 회계연도의 최종 세입·세출 예산자료

【결산】 : 2018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자료

■ 참고사항

○ 사립대학 예·결산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국립대법인, 특별법인인은 PDF 파일을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사립대학 중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8-마-1. 법인회계 자금예산서(예산)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사립대학 법인 자금예산서 (당해연도 예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예산 - 2019 회계연도)

(: 원)

수입구분		금액	비율	지출구분		금액	비율
법인수입	전입금			법인지출	보수		
	기부금				관리운영비		
	국고보조금				연구학생경비		
	교육외수입				교육외비용		
자산및부채수입			전출금				
미사용전기이월자금			예비비				
합계		100%	자산및부채지출				
			미사용차기이월자금				
			합계			100%	

■ 작성지침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상의 유보재원(예산서에만 표시됨)

【국고보조금수입】 : 전년도이월국고보조금은 합산하지 않음

【합계】 : 수입합계와 지출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학 자금예산서(예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입니다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마-2. 법인회계 자금계산서(결산)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사립대학 법인 자금계산서 (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결산 - 2018 회계연도)

(: 원)

수입구분		금액	비율	지출구분		금액	비율
운영수입	전입금			운영지출	보수		
	기부금				관리운영비		
	국고보조금				연구학생경비		
	교육외수입				교육외비용		
자산및부채수입			전출금				
자산및부채수입				자산 및 부채지출			
미사용전기이월자금				미사용차기이월자금			
합계			100%	합계			100%

■ 작성지침

[국고보조금수입] : 전년도이월국고보조금은 합산하지 않음

[합계] : 수입합계와 지출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학 자금계산서(결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마-2-(1) 법인회계 감사증명서[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8 회계연도 결산 사립대학 법인 감사증명서

【공시양식】 : PDF 파일 형태로 공시

■ 작성지침

【감사증명서】 : 「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PDF업로드)

※ 감사증명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전체를 의미함

■ 참고사항

- 법인회계 감사증명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마-3. 법인회계 운영(손익) 계산서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사립대학 법인 운영(손익)계산서 (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결산 - 2018 회계연도)

(: 원)

수익과목		금액	비율	비용과목		금액	비율
운영수익	전입금			운영비용	보수		
	기부금				관리운영비		
	국고보조금				연구학생경비		
	교육외수입				교육외비용		
[고목준비금환입액]			[고목준비금전입액]				
				기본금 대체액			
				운영차액대체액			
				당기운영차액			
합계			100%	합계			100%

■ 작성지침

【고목준비금환입액/고목준비금전입액】 : 세무 관련 항목으로, 학교별로 사용여부 선택이 가능

【운영수익/운영비용】 : 자금계산서 동일 계정의 금액과 일반적으로 동일

【국고보조금수입】 : 전년도이월국고보조금은 합산하지 않음

【운영차액대체액】 : “+”값으로 입력, 운영비용합계에서 운영차액대체가 차감

【당기운영차액】 : 운영수익 - 운영비용 (보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의 합계) - 기본금대체액 + 운영차액대체액

합계] : 수입합계와 비용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학 운영(손익)계산서 - 결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마-4. 법인회계 대차대조표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사립대학 법인 대차대조표 (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결산 - 2018 회계연도)

(: 원)

수입구분	금액	비율	지출구분	금액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투자외기타자산			고정부채		
고정자산			기본금		
자산 합계		100%	부채와 기본금 합계		100%

■ 작성지침

【합계】 : 자산 합계와 부채와 기본금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무관련 항목으로 고정부채 또는 기본금으로 계상되어 있음

■ 참고사항

- 사립대학 대차대조표 - 결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8-바-1.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예산)

8-바-1-(1) 교비회계(통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사립대학 자금예산서 (당해연도 예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예산 - 2019 회계연도)

(: 원)

수입구분		금액	비율	지출구분		금액	비율
일반수입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등록금수입		운영지출	보수		
		수강료수입			관리운영비		
	전입금	법인전입금			연구학생경비		
		기타전입금			교육외비용		
	기부금				전출금		
	국고보조금				예비비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자산및부채지출		
	교육부대수입				미사용차기이월자금		
	교육외수입				합 계		100%
	자산및부채수입						
미사용전기이월자금							
합 계			100%				100%

■ 작성지침

-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등록금수입** : 학생들에게 받는 등록금수입
-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수강료수입】** : 특별강좌·특별교육강좌 개설 등의 단기교육 수강료
- 【전입금-법인전입금】** : 법인이 학교에 전출하는 전입금의 합(경상비 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 【전입금-기타전입금】** : 법인이외에서 학교에 전출하는 전입금의 합(부속병원 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교내전입금)
-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상의 유보재원(예산서에만 표시됨)
- 【국고보조금수입】** : 전년도이월국고보조금은 합산하지 않음
-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 【합계】** : 수입합계와 지출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학 자금예산서(예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바-1-(2) 등록금회계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사립대학 자금예산서 (당해연도 예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예산 - 2019 회계연도)

(: 원)

수입구분		금액	비율	지출구분		금액	비율
등록금수입	등록금수입			운영지출	보수		
	전입금				관리운영비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				연구학생경비		
	교육외수입				교육외비용		
			전출금				
			예비비				
자산및부채수입				자산및부채지출			
미사용전기이월자금				미사용차기이월자금			
합 계			100%	합 계			100%

■ 작성지침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상의 유보재원(예산서에만 표시됨)

【합계】 : 수입합계와 지출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학 자금예산서(예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바-1-(2)-1. 잉여금 처리 원칙[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사립대학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 회계연도)

■ 작성지침

【잉여금】 : 2018 회계연도 자금계산서 결산의 차기이월자금 - 2019 회계연도 자금예산서(본예산) 전기이월자금

잉여금 처리 원칙] : 본예산 편성 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으로 별도의 양식 없음(PDF 업로드)

■ 참고사항

- 잉여금 처리 원칙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바-1-(3) 비등락금회계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사립대학 자금예산서 (당해연도 예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예산 - 2019 회계연도)

(: 원)

수입구분		금액	비율	지출구분		금액	비율
표수영입	수강료수입			운영지출	보수		
	전입금				관리운영비		
	기부금				연구학생경비		
	국고보조금				교육외비용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전출금		
	교육부대수입				예비비		
	교육외수입						
자산및부채수입				자산및부채지출			
미사용전기이월자금				미사용차기이월자금			
합 계			100%	합 계			100%

■ 작성지침

【수강료수입】 : 특별강좌·특별교육강좌 개설 등의 단기교육 수강료

【국고보조금】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전년도이월국고보조금은 합산하지 않음)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교육부대수입】 : 교육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부대수입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상의 유보재원(예산서에만 표시됨)

합계] : 수입합계와 지출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학 자금예산서(예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바-2. 교비회계 자금계산서(결산)

8-바-2-(1) 교비회계(통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사립대학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통합공시 및 비교공시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결산 - 2018 회계연도)

(: 원)

수입구분		수입 본예산(A)	수입 결산(B)	수입 차액(C=A-B)	지출구분	지출 본예산(A)	지출 결산(B)	지출 차액(C=A-B)
수입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등록금수입			지출	보수		
		수강료수입				관리운영비		
	전입금	법인전입금				연구학생경비		
		기타전입금				교육외비용		
	기부금			전출금				
	국고보조금			예비비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자산및부채지출				
	교육부대수입			미사용차기이월자금				
	교육외수입			합 계				
	자산및부채수입							
미사용전기이월자금								
합 계								

■ 작성지침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등록금수입 : [비고]란에 등록금 수입을 목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입학금: ○○○원, 수업료: ○○○원” 문구 입력

※ [비고]란에 기입한 입학금, 수업료 합이 등록금 수입(항)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수강료수입 : 특별강좌·특별교육강좌 개설 등의 단기교육 수강료

전입금-법인전입금 : 법인이 학교에 진출하는 전입금의 합(경상비 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전입금-기타전입금 : 법인 이외에서 학교에 진출하는 전입금의 합(부속병원 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교내전입금)

국고보조금수입 : 전년도이월국고보조금은 합산하지 않음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본예산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2018년 6월 공시된 본예산 자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상의 유보재원(예산서에만 표시됨)

결산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차액 : 본예산 - 결산

합계 : 수입합계와 지출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학 자금계산서(결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바-2-(2) 등록금회계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사립대학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통합공시 및 비교공시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결산 - 2018 회계연도)

(: 원)

수입구분		수입 본예산(A)	수입 결산(B)	수입 차액(C=A-B)	지출구분		지출 본예산(A)	지출 결산(B)	지출 차액(C=A-B)
비영수입	등록금수입				영수입지출	보수			
	전입금					관리운영비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연구학생경비			
	교육외수입					교육외비용			
				전출금					
					예비비				
자산및부채수입					자산및부채지출				
미사용전기이월자금					미사용차기이월자금				
합 계					합 계				

■ 작성지침

【등록금수입】 : [비고]란에 등록금수입을 목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입학금: ○○○원, 수업료: ○○○원” 문구 입력

※ [비고]란에 기입한 입학금, 수업료 합이 등록금수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본예산】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상의 유보재원(예산서에만 표시됨)

【결산】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차액] : 본예산 - 결산

【합계】 : 수입합계와 지출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학 자금계산서(결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바-2-(3) 비등록금회계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사립대학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통합공시 및 비교공시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결산 - 2018 회계연도)

(: 원)

수입구분		수입 본예산(A)	수입 결산(B)	수입 차액(C=A-B)	지출구분		지출 본예산(A)	지출 결산(B)	지출 차액(C=A-B)
비 등록 금 수 입	수강료수입				비 등록 금 지 출	보수			
	전입금					관리운영비			
	기부금					연구학생경비			
	국고보조금					교육외비용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전출금			
	교육부대수입					예비비			
	교육외수입								
자산및부채수입					자산및부채지출				
미사용전기이월자금					미사용차기이월자금				
합 계					합 계				

■ 공시지침

【수강료수입】 : 특별강좌·특별교육강좌 개설 등의 단기교육 수강료

【국고보조금】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전년도이월국고보조금은 합산하지 않음)

【교육부대수입】 : 교육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부대수입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본예산】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2018년 6월 공시된 본예산 자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상의 유보재원(예산서에만 표시됨)

【결산】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차액】 : 본예산 - 결산

【합계】 : 수입합계와 지출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학 자금계산서(결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바-3. 교비회계 운영(손익) 계산서

8-바-3-(1) 교비회계(통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사립대학 운영(손익)계산서 (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결산 - 2018 회계연도)

(: 원)

수익과목		금액	비율	비용과목		금액	비율
운영수익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운영비용	보수		
	전입금				관리운영비		
	기부금				연구학생경비		
	국고보조금				교육외비용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전출금		
	교육부대수입				[고목준비금전입액]		
	교육외수입				기본금대체액		
[고목준비금환입액]			운영차액대체액				
			당기운영차액				
합 계			100%	합 계			100%

■ 작성지침

【운영수익/운영비용】 : 자금계산서 동일 계정의 금액과 일반적으로 동일

【국고보조금수입】 : 전년도이월국고보조금은 합산하지 않음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고목준비금환입액/고목준비금전입액】 : 세무관련 항목으로, 학교별로 사용여부 선택이 가능

【운영차액대체액】 : “+”값으로 입력, 운영비용합계에서 운영차액대체가 차감

【당기운영차액】 : 운영수익 - 운영비용 (보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의 합계) - 기본금대체액 + 운영차액대체액

【합계】 : 수익합계와 비용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학 운영(손익)계산서 - 결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바-3-(2) 등록금회계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사립대학 운영(손익)계산서 (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결산 - 2018 회계연도)

(: 원)

수익과목		금액	비율	비용과목		금액	비율
운영수입	등록금수입			운영비용	보수		
	전입금				관리운영비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연구학생경비		
	교육외수입				교육외비용		
[고목준비금환입액]			전출금				
				[고목준비금전입액]			
				당기운영차액			
합 계			100%	합 계			100%

■ 작성지침

【운영수익/운영비용】 : 자금계산서 동일 계정의 금액과 일반적으로 동일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고목준비금환입액/고목준비금전입액】 : 세무관련 항목으로, 학교별로 사용여부 선택이 가능

【당기운영차액】 : 운영수익 - 운영비용 (보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의 합계) + 운영차액대체액

【합계】 : 수익합계와 비용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학 운영(손익)계산서 - 결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바-3-(3) 비등록금회계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사립대학 운영(손익)계산서 (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결산 - 2018 회계연도)

(: 원)

수익과목		금액	비율	비용과목		금액	비율
운영수익	수강료수입			운영비용	보수		
	전입금				관리운영비		
	기부금				연구학생경비		
	국고보조금				교육외비용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전출금		
	교육부대수입				[고목준비금전입액]		
	교육외수입				기본금대체액		
[고목준비금환입액]				운영차액대체액			
				당기운영차액			
합 계			100%	합 계			100%

■ 작성지침

【운영수익/운영비용】 : 자금계산서 동일 계정의 금액과 일반적으로 동일

【국고보조금수입】 : 전년도이월국고보조금은 합산하지 않음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고목준비금환입액/고목준비금전입액】: 세무관련 항목으로, 학교별로 사용여부 선택이 가능

【운영차액대체액】: “+”값으로 입력, 운영비용합계에서 운영차액대체가 차감

【당기운영차액】: 운영수익 - 운영비용 (보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의 합계) - 기본금대체액 + 운영차액대체액

【합계】: 수익합계와 비용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학 운영(손익)계산서 - 결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바-4.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8-바-4-(1) 교비회계(통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사립대학 대차대조표 (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결산 - 2018 회계연도)

(: 원)

수입구분	금액	비율	지출구분	금액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예수금		
			선수금		
			기타유동부채		
투자외 기타자산			고정부채		
고정자산			기본금		
자산 합계		100%	부채와 기본금 합계		100%

■ 작성지침

【합계】 : 자산 합계와 부채와 기본금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무관련 항목으로 고정부채 또는 기본금으로 계상되어 있음

■ 참고사항

- 사립대학 대차대조표 - 결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바-4-(2) 등록금회계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사립대학 대차대조표 (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결산 - 2018 회계연도)

(: 원)

수입구분	금액	비율	지출구분	금액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부채		
고정자산			기본금		
자산합계		100%	부채와 기본금 합계		100%

■ 작성지침

【합계】 : 자산합계와 부채기본금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무관련 항목으로 고정부채 또는 기본금으로 계상되어 있음

■ 참고사항

- 사립대학 대차대조표 - 결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바-4-(3) 비등록금회계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사립대학 대차대조표 (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결산 - 2018 회계연도)

(: 원)

수입구분	금액	비율	지출구분	금액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부채		
고정자산			기본금		
자산합계		100%	부채와 기본금 합계		100%

■ 작성지침

【합계】 : 자산합계와 부채기본금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무관련 항목으로 고정부채 또는 기본금으로 계상되어 있음

■ 참고사항

- 사립대학 대차대조표 - 결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사. 적립금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결산 - 2018 회계연도)

(: 원)

회계별	구분	전기말 누계액(A)	당기 인출액(B)	당기 적립액(C)	기타 증감(D)	당기말 누계액 (E=A-B+C+D)	당기말 비율
법인 회계	원금보존 연구기금						
	원금보존 건축기금						
	원금보존 장학기금						
	원금보존 퇴직기금						
	원금보존 특정목적기금						
	계						
	임의연구기금						
	임의건축기금						
	임의장학기금						
	임의퇴직기금						
	임의특정목적기금						
	계						
소계						100%	
교비 회계	원금보존 연구기금						
	원금보존 건축기금						
	원금보존 장학기금						
	원금보존 퇴직기금						

(: 원)

회계별	구분	전기말 누계액(A)	당기 인출액(B)	당기 적립액(C)	기타 증감(D)	당기말 누계액 (E=A-B+C+D)	당기말 비율	
	원금보존 특정목적기금							
	계							
	임의연구기금							
	임의건축기금							
	임의장학기금							
	임의퇴직기금							
	임의특정목적기금							
	계							
	소계						100%	
법안·교비회계 합계	원금보존 연구기금							
	원금보존 건축기금							
	원금보존 장학기금							
	원금보존 퇴직기금							
	원금보존 특정목적기금							
	계							
	임의연구기금							
	임의건축기금							
	임의장학기금							
	임의퇴직기금							
	임의특정목적기금							
	계							
		합계						100%

■ 작성지침

- 【전기말 누계액】 : 전년도 대차대조표 상 적립금 기말잔액과 일치
 【당기인출액】 : 당해연도 자금계산서 상 적립금 인출액과 일치
 【당기적립액】 : 당해연도 자금계산서 상 적립금 적립액과 일치
 【기타 증감】 : 평가손익 등으로 인한 기타 증감
 【당기말 누계액】 : 당해연도 대차대조표 상 적립금 기말잔액과 일치

■ 참고사항

-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아. 기부금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사립대학 기부금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결산 - 2018 회계연도)

(: 원)

구 분	법인회계(A)	교비회계(B)	산학협력단회계(C)	당해연도 합계 (D=A+B+C)	전년도 합계(E)	당기 증감액 (F=D-E)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연구기부금						
합계						

■ 작성지침

【일반기부금】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연구기부금】 : 외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는 기부금

■ 참고사항

- 기부금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8-자-1. 산학협력단 현금예산서(예산)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국·공·사립 산학협력단 현금예산서(예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예산 - 2019 회계연도)

(: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현금 유입액	운영활동 현금유입	산학협력수익		운영활동 현금유출	산학협력비	
		지원금수익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수익			간접비사업비	
		전입및기부금수익			일반관리비	
		운영외수익			운영외비용	
	투자활동 현금유입	투자자산수입		투자활동 현금유출	학교회계전출금	
		유형자산매각대			투자자산지출	
		무형자산매각대			유형자산취득지출	
	재무활동 현금유입	기타비유동자산수입		재무활동 현금유출	무형자산취득지출	
		부채의차입			기타비유동자산지출	
		기본금의조달			부채의상환	
		소계			기본금의반환	
					소계	
	현금의 증감(유입-유출)					
예비비						
기초의 현금						
기말의 현금						

■ 작성지침

예비비] : 예산항목에서는 나타나나 결산에 나타나지 않은 값

[등식] : 현금유입액+기초의현금 = 현금유출액+예비비+기말의현금

■ 참고사항

- 현금예산서(예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자-2. 산학협력단 현금흐름표(결산)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국·공·사립 산학협력단 현금흐름표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 기준일 : 결산 - 2018 회계연도)

(: 원)

수입구분		금액	비율	수입구분		금액	비율	
현금유입액	운영활동 현금유입	산학협력수익		현금유출액	운영활동 현금유출	산학협력비		
		지원금수익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수익				간접비사업비		
		전입및기부금수익				일반관리비		
		운영외수익				운영외비용		
			학교회계전출금					
	투자활동 현금유입	투자자산수입			투자활동 현금유출	투자자산지출		
		유형자산매각대				유형자산취득지출		
		무형자산매각대				무형자산취득지출		
		기타비유동자산수입				기타비유동자산지출		
	재무활동 현금유입	부채의차입			재무활동 현금유출	부채의상환		
		기본금의조달				기본금의반환		
	소계				소계			
	현금의 증감(유입-유출)							
기초의 현금								
기말의 현금								

■ 작성지침

등식] : 현금유입액+기초의현금 = 현금유출액+기말의현금

■ 참고사항

- 현금흐름표(결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자-3. 산학협력단 운영 계산서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국·공·사립 산학협력단 운영 계산서(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결산 - 2018 회계연도)

(: 원)

수익과목		금액	비율	비용과목		금액	비율
수익 의 과목	산학협력수익			비용 의 과목	산학협력비		
	지원금수익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수익				간접비사업비		
	전입및기부금수익				일반관리비		
	운영외수익				운영외비용		
합계		100%	학교회계전출금				
				당기운영차손익			
				합계		100%	

■ 참고사항

- 운영 계산서(결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자-4. 산학협력단 재무상태표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국·공·사립 산학협력단 재무상태표(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결산 - 2018 회계연도)

(: 원)

수입구분		금액	비율	지출구분		금액	비율
자산	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기본금	출연기본금		
					적립금		
					운영차익		
자산합계			100%	부채와기본금 합계			100%

■ 작성지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무관련 항목으로 비유동부채 또는 기본금으로 계상되어 있음

■ 참고사항

- 재무상태표(결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차. 등록금 현황

8-차-1. 등록금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4월(등록금 현황), 8월(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

[공시내용] : 학과별·학년별 학생 1인당 등록금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등록금 현황은 2019년,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은 2018년)

(: 명, 천원)

등록금 현황(4월)										
기준연도	단과대학	학과(전공)	구분	학과특성	학년구분	입학정원	입학금(A)	수업료(B)	등록금(D=B)	비고
					1학년		해당없음			
					...					
					6학년					
			학과 평균							
			인문사회계열 평균							
			자연과학계열 평균							
			공학계열 평균							
			예체능계열 평균							
			의학계열 평균							
			학교 평균							

(단위 : 학점, 천원)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8월)				
구분		총 신청 학점(A)	총 수강료 수입(B)	학점당 평균액 (C=B/A)
대학 (2018년 기준)	여름학기			
	겨울학기			
대학원 (2018년 기준)	여름학기			
	겨울학기			

■ 작성지침

입학정원 : 대학이 정하는 정원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 계절제·원격·산업체위탁·특별과정·계약학과·산학협력 취업약정제·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은 제외(단, 총정원 내 입학정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

【입학금】 : 학과별 2019년 책정된 학생 1인당 입학금

【수업료】 : 학과별 2019년 책정된 학생 1인당 연간 수업료

【등록금】 : 학과별 2019년 책정된 1인당 연간액

※ 계절제·원격·산업체위탁·특별과정·계약학과·산학협력 취업약정제·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의 입학금, 수업료가 책정된 경우 입학금, 수업료 입력

※ 신청한 학점으로 등록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35학점을 기준으로 함

※ 사이버대학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출함

- 1~3학년 : 학점당 등록금×연 36학점

- 4학년 : 학점당 등록금×연 32학점

【학과 평균】 : 해당학과 전체학년(학년별 등록금×학년별 정원내 입학정원)의 합/해당학과 정원내 입학정원의 합

【계열 평균】 : 해당계열 전체학과(학과별 학년별 등록금×학과별 학년별 정원내 입학정원)의 합/해당계열 정원내 입학정원의 합

【학교 평균】 : 전체학과(학과별 학년별 등록금×학과별 학년별 정원내 입학정원)의 합/전체 정원내 입학정원의 합

【비고】 : 학점당 등록금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점당 등록금제”로 기재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 :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은 이에 관련한 총 신청 학점과 총 수강료 수입을 위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하고, 결정사항은 여름학과 겨울학과를 각각 모두 작성함

‘9-가-1. 등록금 산정근거’를 통해 8월 조사하며, 4월 공시된 ‘8-차. 등록금 현황’에 추가 반영되는 사항임

■ 참고사항

- 등록금 현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은 대학 장표에 대학 부설 대학원의 내용이 통합되어 공시됨
- 한국장학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차-2.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4월(실시 현황), 8월(이용 현황)

【공시내용】 : 2019년 1학기 등록금 납부제도 및 이용학생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년 1학기, 이용 학생 수 및 이용 금액은 2019. 6. 30. 기준)

(: 명, 천원, %)

기준연도	등록금 납부방법		실시 현황(4월)								이용 현황(8월)			
			최초 시행연도	금년도 실시여부	분납 개월수	분납 가능 횟수	분할납부제 관련 제한 여부			분할납부 시스템 서비스 여부	거래 카드사 수	이용 학생 수	이용 금액	학교부담 카드 수수료를
							장학금 수혜자 제한	행정사항						
								제 증명서 발급제한	장학금 지급 제한					
납부방법	분할													
	일시													
납부수단	계좌이체													
	학교창구													
	카드													
	기타													
등록금 고지서 반영	분할납부제 표기 여부													
	카드납부제 표기 여부													
합계														

■ 작성지침

【분할】 : 월별분납, 분기납, 납부연기 등 등록금을 여러 차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납 횟수나 분납 개월 수는 최댓값으로 표기

- 월별분납 : 등록금을 월별로 분납하는 경우
- ② 분기납 : 등록금을 분기별로 분납하는 경우
- ③ 납부연기 : 등록금의 납입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 【계좌이체】** : 등록금의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학교 대표계좌,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고지서 및 지로영수증을 통한 계좌이체 등 포함)
- 【학교창구】** : 대학 창구를 이용하여 오프라인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카드】** : 등록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교부담 카드수수료율】** : 카드납부시 학교에서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율
 - ※ 카드사가 둘 이상인 경우 평균으로 기재
- 【기타】** : 학교 자체 등록금 납부수단을 기입하고 해당 납부방법별 실시여부 및 최초 시행연도를 입력
- 【최초 시행연도】** : 등록금 납부제도별 최초 시행연도를 선택
- 【금년도 실시여부】** : 금년도에 실시한 경우 [예, 아니오] 중 [예] 선택
- 【분납 개월수】** : 해당 학기 개시 후 분할납부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
- 【분납 가능 횟수】** : 해당 학기 개시 이전 납부 횟수를 포함한 총 분할납부 횟수
 - ※ 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 예시 해당 학기 개시 후 3개월 동안, 해당 학기 개시 이전 납부 횟수를 포함하여 4회 나누어 납부할 경우, 분납 개월수는 3개월, 분납 횟수는 4회로 기재
- 【분할납부제 관련 제한 여부】** : 분할납부 신청에 있어 제외되는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
 - ① ‘장학금 수혜자’의 분할납부 신청 제외 대상 포함 유무
 - 예시 장학금 수혜자에 대해 분할납부 신청을 제한할 경우, 제한여부 ‘예’로 기재
- 【행정사항】** : 분할납부 이용자에게 대학의 행정제재가 있는지 여부
 - ① 제증명 발급 제한 : 분할납부 신청자의 제증명 발급 제한 여부 또는 분납금 미납 또는 연체자의 제증명 발급 제한 여부
 - ② 장학금 지급 제한 : 분할납부 대상학생에게 (일시 납부 재학생과 차별적으로) 교내·외 장학금의 지급을 제한하는지 여부
- 【분할납부 시스템 서비스 여부】** : 온라인상에서 분할납부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 【거래카드사 수】** : 카드납부 이용이 가능한 카드사 수
- 【등록금 고지서 반영】**
 - ① 고지서상 ‘금년도 실시여부’에 대한 고지여부
 - ② 고지서상 ‘분납 개월수’에 대한 고지여부 (매월 납부일 고지 여부)
 - ③ 고지서상 ‘분납 가능횟수’에 대한 고지여부

고지서상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제한 사항 고지여부

- ⑤ 고지서상 '체증명서 발급 제한 유무'에 대한 고지여부
- ⑥ 고지서상 '장학금 지급 제한'에 대한 고지여부
- ⑦ 고지서상 '분할납부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고지여부
- ⑧ 고지서상 '거래카드사'에 대한 고지여부

【이용학생 수】 : 2019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방법별 학부 및 대학원 이용학생 수의 합(2019. 6. 30. 기준)

【이용금액】 : 2019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방법별 학부 및 대학원 이용금액의 합(2019. 6. 30. 기준)

- ※ 등록금 납부 후 자퇴하여 일부 금액을 환불한 경우, 환불 후 남은 금액을 이용금액에 포함하여 입력
- ※ 선감면 장학금과 후지급 장학금이 있는 경우, 등록금 실수납액 기준으로 입력하며, 등록금 고지서상 선감면 장학금은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입력
 예시 등록금이 100만원이고 선감면이 20만원일 때, 학생이 등록금을 낼 때 80만원만 내므로 80만원 입력
 등록금이 100만원이고 후지급이 20만원일 때, 후지급은 학생이 등록금을 100만원을 내고 추후에 지급하는 장학금이므로 100만원 입력

■ 참고사항

-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장학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8-카-1.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8-카-1-(1) 입학 전형료 수입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8년 결산 기준 입학 전형료 수입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년 결산)

(: 명, 원)

기준연도	구분	학부			학부 편입	대학원	기타 특수과정*	합계
		소계(A+B)	수시(A)	정시(B)				
	입학전형료 납부인원							
	입학전형료 수입 총액							

*학부, 대학원을 제외한 타 전형(평생교육원, 시간제등록제·특별과정 등 단기과정)

■ 작성지침

입학전형료 납부인원 : 회계연도 범위 내 입학전형료를 납부한 지원자 수

【입학전형료 수입】 : 입학원서대, 일반관리비, 수험료, 전형료, 실기고사료, 논술고사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대학의 입학(편입학 포함)과 관련하여 입시지원자로부터 수수하는 금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상의 가액

※ 사립대학의 경우 “입학전형료 수입” 합계 금액은 학교 교비회계 수입 항목의 일부인 “입시수수료수입”과 일치해야 함

※ 단,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입학 전형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시관리비에 포함되었다면 입력에서 모두 제외할 것

■ 참고사항

- 대학 입학전형료 관리시스템 사용대상 학교는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지 않으며 대학 입학전형료 관리시스템에 기 제출된 자료를 연계 활용하여 공시할 예정임
 - * 대학 입학전형료 관리시스템 조사대상 :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이 실시하는 신입생 모집(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다만 전문대학,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기타 특수과정 및 편입학, 대학원입학은 제외
- 대학 입학전형료 관리시스템의 조사대상 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대학부설대학원의 ‘입학 전형료 수입 현황’ 공시자료는 각 대학원별 입력시스템 화면에 값을 입력하면 추후 대학알리미 대학 장표에 자동 연계되어 각 대학원의 합계가 산출됨

8-카-1-(2) 입학 전형료 지출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8년 결산 기준 입학 전형료 지출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년 결산)

(: 원)

기준연도	내역	학부 신입학			학부 편입학	대학원	기타 특수과정*
		수시	정시	공통(수시·정시)			
	수당	출제수당					
		평가수당					
		감독수당					
		준비·진행수당					
		전형안내 수당					
		회의 수당					
	경비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비					
		여비					
		주차료					
		시설 사용료					
		기타					
		합계					

* 학부, 대학원을 제외한 타 전형(평생교육원, 시간제등록제·특별과정 등 단기과정)

■ 작성지침

입학 전형료 지출 : 입시수당과 입시경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대학의 입학(편입학 포함)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상의 가액

※ 사립대학의 경우 “입학 전형료 지출” 함께 금액은 학교 교비회계 지출 항목의 일부인 “입시관리비”와 일치해야 함

※ 단,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입학 전형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시관리비에 포함되었다면 입력에서 모두 제외할 것

【수당】 :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

【출제 수당】 : 논술 및 실기 등 문제 출제에 따른 비용

【평가 수당】 : 서류, 논술 및 실기 등의 채점 및 평가에 따른 비용

【감독 수당】 : 논술 및 실기 등 시험 감독에 따른 비용

【준비·진행 수당】 : 면접, 논술 및 실기 등 입학전형 준비 및 진행에 따른 비용

【전형안내 수당】 : 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 등 입학전형 홍보에 따른 비용

【회의 수당】 :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의 참석에 따른 비용

【경비】 :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중 수당을 제외한 비용

【홍보비】 :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회의비】 : 입학전형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

【업무위탁 수수료】 : 입학전형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

【인쇄비】 : 입학원서, 모집요강, 안내책자 등 입학전형 관련 인쇄물 제작 등에 드는 비용

【자료 구입비】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자료 구입 비용

【소모품비】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소모품 구입 비용

【공공요금】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우편료 등의 비용

【식비】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식비

【여비】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

【주차료】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주차료

【시설 사용료】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시설 사용료

【기타】 : 위에 속하지 아니한 비용으로 입시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대학 편입학, 대학원, 대학원대학만 입력항목임)

■ 참고사항

대학 입학전형료 관리시스템 사용대상 학교는 대학정보공시입력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지 않으며 대학 입학전형료 관리시스템에 기 제출된 자료를 연계 활용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 대학 입학전형료 관리시스템 조사대상 :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이 실시하는 신입생 모집(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다만 전문대학,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기타 특수과정 및 편입학, 대학원입학은 제외

- 대학 입학전형료 관리시스템의 조사대상 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대학부설대학원의 '입학 전형료 지출 현황' 공시자료는 각 대학원별 입력시스템 화면에 값을 입력하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계되어 추후 대학알리미 대학 장표에 각 대학원의 합계가 산출됨

8-카-2. 입학전형료 산정 근거[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20학년도 입학전형료 산정근거 및 2019~2020학년도 입시수당 산정기준

【공시양식】 : 대학의 자체 양식

【공시방법】 : 입학전형료 산정근거 및 산정기준을 PDF 파일 형태로 공시

■ 작성지침

【입학전형료 산정근거】 : 입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당과 경비 등 입학전형료 예산편성 내역(2020학년도 기준)

- 지출항목 구분별 소요 예산추계 금액 및 주요내역을 PDF로 탑재

【입시수당 산정 기준】 : 입시업무를 수행한 교직원에게 실비변상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산정기준(2019~2020학년도 기준, 2개년도)

- 출제수당, 감독수당, 평가수당, 회의수당 등 입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대학별 자체 기준)을 PDF로 탑재

예시

□ 2020학년도 입학전형료 산정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추계	주요내역
수당	출제수당	2,000	논술출제(위촉) 1,000 논술출제(직원) 1,000
	평가수당	2,500	서류평가(위촉) 1,750 실기평가(직원) 1,750
	감독수당	1,000	논술감독(직원) 500 실기감독(직원) 500
	준비·진행수당	2,000	면접준비(직원) 1,000 실기진행(직원) 1,000
	전형안내수당	1,500	지역설명회 1,000 대교협박람회 500
	회의수당	1,000	전형관리위원회 300 수시전형준비회의 500 출제위촉회의 200
경비	홍보비	100,000	온라인홍보 100,000
	회의비	2,000	전형관리위원회 1,000 출제회의 1,000
	업무위탁수수료	20,000	원서접수대행 20,000
	인쇄비	15,000	모집요강 15,000
	자료 구입비	1,000	수능온라인제공 1,000
	소모품비	3,000	A4용지 구입 1,000 프린트토너 구입 2,000
	공공요금	10,000	우편발송비 5,000 SMS통신비 5,000
	식비	5,000	수시 면접교사 수험생 식음료 5,000
	여비	5,000	수시박람회 5,000 정시박람회 5,000
	주차료	5,000	수시 면접교사 수험생 주차료 5,000
	시설사용료	11,000	실기고사장 대관 1,000 차량 임대료 10,000
	합계		

예시

□ 2019학년도 입시수당 산정기준

(단위 : 천원)

	세목	지급금액	비고
출제수당	출제위원장 및 위원	300	1일 지급 기준임
	출제진행요원	150	
감독수당	감독 및 진행수당	70	1일 지급 기준임. 시험시간 및 업무난이도에 따라 차등지급
	외부인사 감독	100	
평가수당	교수	200	1,000자 논술/1일 150매 내외 기준이며, 논술자수 및 매수의 증감에 따라 차등 지급
	직원	100	일일 8시간 기준
	외부교수	250	연합관리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변경 지급

□ 2020학년도 입시수당 산정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세목	지급금액	비고
출제수당	출제위원장 및 위원	300	1일 지급 기준임
	출제진행요원	150	
감독수당	감독 및 진행수당	70	1일 지급 기준임. 시험시간 및 업무난이도에 따라 차등지급
	외부인사 감독	100	
평가수당	교수	200	1,000자 논술/1일 150매 내외 기준이며, 논술자수 및 매수의 증감에 따라 차등 지급
	직원	100	일일 8시간 기준
	외부교수	250	연합관리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변경 지급

■ 참고사항

대학 입학전형료 관리시스템 사용대상 학교는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지 않으며, 대학 입학전형료 관리시스템에 기 제출된 자료를 연계 활용하여 공시할 예정임.

※ 대학 입학전형료 관리시스템 조사대상 :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이 실시하는 신입생 모집(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다만, 전문대학,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기타 특수과정 및 편입학, 대학원입학은 제외

- 대학 입학전형료 관리시스템의 조사대상 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다만, 입학전형료 산정근거는 4년제 대학의 신입학 전형료에 대해서만 작성
- 2019년에 한하여 입시수당 산정기준을 2개 연도 공시함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9-가. 등록금 산정근거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9-가. 등록금 산정근거

9-가-1. 등록금 산정근거

9-가-1-(1) 등록금 산정근거[PDF][국·공립대학]

■ 공시지침

【공시기관】 : 국·공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4월, 8월

※ 4월 공시 : 전년도의 경우 세입 및 세출예산서의 본예산과 최종 추가경정예산을, 금년도의 경우 세입 및 세출예산서의 본예산을 토대로 공시함

※ 8월 공시 : 전년도의 경우 세입 및 세출예산서의 최종 추가경정예산을, 금년도의 경우 세입 및 세출예산서의 본예산을 토대로 4월에 공시한 등록금 산정근거를 수정하여 공시함. 또한, 전년도의 경우 세입 및 세출결산서의 전전년도 결산과, 금년도의 경우 세입 및 세출결산서의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공시함(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공시내용】 : 등록금 산정근거(등록금 책정 절차, 등록금 책정의 기본방향, 등록금 산정 세부 내역, 등록금 책정 결정 사항, 계절학기 수업료 등)

【공시양식】 : 제공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공시하되, 대학의 자체 양식을 추가할 수 있음

※ 국립대법인의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양식을 따름

【공시방법】 : 등록금 산정근거 전체 내용을 PDF 파일(전체 A4 10장 내외) 형태로 공시(작성자 및 확인자 명시)

■ 참고사항

- 등록금 산정근거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장학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I. 등록금 책정 절차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

<국공립대학 등록금 책정 절차>

단계명	책정 조직	참여 주체	활동 내용
등록금 책정관련 자료 수집			
등록금 책정(안) 마련			
등록금 책정(안) 심의/의결			
등록금 책정(안) 확정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	해당 구성 위원	구성비율	비고
교직원위원			
학생위원			
전문가위원			
학부모 및 동문위원			
총계			

■ 작성지침

등록금 책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의견 수렴 및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 조직 및 기능, 의사결정 단계별 참여주체, 의견수렴 내용 및 활동 등을 기술함

【책정 단계명】 : 등록금 책정 단계의 명칭을 제공

【책정 조직】 : 등록금 책정을 위한 조직 또는 기구 명칭을 기재

【참여 주체】 : 등록금 책정을 위한 조직 또는 기구에 참여하는 주체의 구성단위를 기재

【활동 내용】 : 등록금 책정에 관한 활동 내용을 기재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 : 2019년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입력

II. 등록금 책정의 기본 방향(원칙) 및 고려 요소

1. 등록금 책정의 기본 방향(원칙)

<등록금 책정의 기본방향 및 원칙>

점	내 용
고객관점 (학생, 학부모 경제부담)	
지속성장관점 (대학장기발전계획등)	
사회경제적관점 등 (물가, 여론 등)	

■ 작성지침

“고객관점”, “지속성장관점”,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등록금 책정의 기본 방향 또는 원칙을 기술함

○ “지속성장관점”은 대학의 특수성, 재정 여건, 재정운용 계획 등 대학 장기발전 계획을 고려하여 기술함

2. 등록금 책정 고려 요소

<등록금 책정 고려 요소>

고려 요소	결과값	고려 여부	내 용
물가상승률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전년도 평균 등록금수준			
최근 5년간 등록금 증감률			
인건비 증감률			
기본 운영비 증감률			
주요사업비 증감률			
기타			

■ 작성지침

- 【물가상승률】 : 통계청이 발표하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의미하며, 결과값은 제공
-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을 의미하며, 결과값은 제공
- 【전년도 평균 등록금수준】 : 공시기관별 전년도 평균 등록금 수준으로, 결과값은 제공
- 【최근 5년간 등록금 증감률】 : 공시기관별 최근 5년간 등록금 증감률로, 결과값은 제공

- 【물가상승률】 부터 【최근 5년간 등록금 증감률】 까지의 결과값은 한국장학재단 등록금·장학금 통계조사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며, 이하 자료는 결과값, 고려여부, 내용 등을 직접 입력하도록 함
- 대학의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을 ‘고려여부’에 표시하고, ‘내용’에는 각 요소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며, 위에서 제시한 고려 요소 외에 대학이 고려하는 요소를 추가하여 제시할 수 있음

III. 등록금 산정 세부 내역

1. 국·공립대학 세입 및 세출 세부내역

1-1. 국·공립대학 세입 세부내역

<국·공립대학 세입 세부내역>

(: 천원)

구 분	예산 (4월 공시 입력)					결산 (8월 공시 입력)			
	전년도 본예산 (A)	전년도 최종추경 (B)	금년도 본예산 (C)	증감액 (D=C-B)	증감률 (E=D/B×100)	전전년도 결산 (F)	전년도 결산(G)	증감액 (H=G-F)	증감률 (I=H/F×100)
1.세입총계									
2.일반회계									
3.재산수입									
3.경상이전수입									
3.재화및용역판매수입									
4.면허료및수수료									
4.입학금및수업료									
4.기타집수입									
3.수입대체경비									
3.관유물매각대									
3.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전년도이월금									
3.(세출과의 차액)									

2.									
3.회비수입									
3.이월금									
3.보조금									
3.집수입									
3.수입대체경비									
2.대학회계									
3.(~2017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3.(~2017년) 자체 수입금									
3.(2018년~) 이전수입									
3.(2018년~) 자체수입									
3.(2018년~) 시계잉여금									
3.(2018년~) 내부거래 및 기타									
2.발전기금회계									
3.전기이월금									
3.기부금									
3.법인세환급금									
3.집수입									

■ 작성지침

국·공립대학 세입 세부내역은 교비일반회계, 기성회회계,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를 통합한 세입 결과를 제공된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전년도 본예산”,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금년도 본예산”은 4월 공시에 맞추어 작성하며, 8월 공시에는 4월에 공시한 국·공립대학 수지분석 결과를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금년도 본예산” 확정본으로 수정하여 공시함. 또한, 전전년도 결산과,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공시함

1-2. 국·공립대학 세출 세부내역

<국·공립대학 세출 세부내역>

(: 천원)

구 분	예산 (4월 공시 입력)				결산 (8월 공시 입력)				
	전년도 본예산 (A)	전년도 최종추경 (B)	금년도 본예산 (C)	증감액 (D=C-B)	증감률 (E=D/B×100)	전전년도 결산 (F)	전년도 결산 (G)	증감액 (H=G-F)	증감률 (I=H/F×100)
1.									
2. 일반회계									
3. 인건비									
3. 물건비									
3. 이전지출									
3. 자산취득									
3. 예비비									
2. 기성회계									
3. 인건비									
3. 운영비									
3. 경상이전비									
3. 자본지출경비									
3. 수입대체경비									
3. 기타									
2. 대학회계									
3. (~2017년) 인적경비									
3. (~2017년)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3. (~2017년) 운영비									
3. (~2017년) 자산적경비									
3. (~2017년) 예비비 및 기타									
3. (2018년~) 인건비									
3. (2018년~) 물건비									
3. (2018년~) 이전지출									
3. (2018년~) 자산취득 및 운용									
3. (2018년~) 예비비 및 기타									

2.									
3.경상비									
3.목적사업비									
4.장학사업비									
4.연구지원비									
4.교육기자재및시설확충비									
4.기타사업비									
3.기본재산증자비									
3.차기이월금									
3.예비비									

■ 작성지침

- 국·공립대학 세입 세부내역은 교비일반회계, 기성회회계,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를 통합한 세입 결과를 제공된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전년도 본예산”,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금년도 본예산”은 4월 공시에 맞추어 작성하며, 8월 공시에는 4월에 공시한 국·공립대학 수지분석 결과를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금년도 본예산” 확정본으로 수정하여 공시함. 또한, 전전년도 결산과,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공시함

2-1. 등록금 인상 및 인하 결정

<등록금 인상 및 인하 결정>

(: 천원)

관점	금년도	전년도
입학금 결정	○	○
수업료 결정	○	○

■ 작성지침

-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결정은 이에 관련한 결정사항과 결정액을 위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결정사항은 금년도와 전년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모두 작성함

2-2. 등록학생 수 추정

<등록학생 수 추정>

(: 명)

구 분	전전년도	전년도			금년도	추정오차		비고
	추정학생 수 (A)	추정학생 수 (B)	최종등록(C) (4월1일)	최종등록(D) (10월1일)	최종등록(E) $[(C+D)/2]$	추정학생 수 (F)	전년도 (G=E-B)	
합계								
학부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6학년							
대학원	소계(전과정)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관점	금년도(H)				전년도(G)			
추정오차 주요원인	○				○			

■ 작성지침

- 추정오차 전년도(G)에는 전년도 최종등록 수와 전년도 추정학생 수간의 추정오차를 기재함
- 추정오차 금년도(H)에는 금년도 추정학생 수와 전년도 최종등록 수간의 추정오차 기재함
- 전년도(G)와 금년도(H)의 추정오차가 발생한 주요원인에 대해 “추정오차 주요원인”에 기재함

2-3. 등록금 인상 및 인하 책정 내역

<등록금 인상 및 인하 책정 내역>

(: 천원)

구분		학부(연간액)				대학원(학기액)				비고
		전년등록금 (A)	금년등록금 (B)	조정률(C) (=[B-A]/A×100)	조정여부 (인상/인하)	전년등록금 (D)	금년등록금 (E)	조정률(F) (=[E-D]/D×100)	조정여부 (인상/인하)	
입학금	평균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수업료	평균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 작성지침

학부와 대학원의 계열별 입학금 및 수업료의 책정결과를 기재함

- 학점당으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경우, 비교란에 기준이 되는 연 학점을 기재함

3. 계절학기 수업료 현황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

(: 학점, 천원)

구분(8월 공시 입력)		총 신청 학점 (A)	총 수강료 수입 (B)	학점당 평균액 (C=B/A)
대학 (2018년 기준)	여름학기			
	겨울학기			
대학원 (2018년 기준)	여름학기			
	겨울학기			

■ 작성지침

-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은 이에 관련한 총 신청 학점과 총 수강료 수입을 위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결정사항은 여름학과 겨울학과를 각각 모두 작성함
- 8월 작성하며, 4월 공시된 '8-차. 등록금 현황'에 추가로 반영되는 사항임

9-가-1-(2) 등록금 산정근거[PDF][사립대학]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4월, 8월

※ 4월 공시 : 전년도에의 경우 세입 및 세출예산서의 본예산과 최종 추가경정예산을, 금년도에의 경우 세입 및 세출예산서의 본예산을 토대로 공시함

※ 8월 공시 : 전년도에의 경우 세입 및 세출예산서의 최종 추가경정예산을, 금년도에의 경우 세입 및 세출예산서의 본예산을 토대로 4월에 공시한 등록금 산정근거를 수정하여 공시함. 또한, 전년도에의 경우 세입 및 세출결산서의 전전년도 결산과, 금년도에의 경우 세입 및 세출결산서의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공시함(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공시내용】 : 등록금 산정근거(등록금 책정 절차, 등록금 책정의 기본방향, 등록금 산정 세부 내역, 등록금 책정 결정 사항, 계절학기 수업료 등)

【공시양식】 : 제공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공시하되, 대학의 자체 양식을 추가할 수 있음

【공시방법】 : 등록금 산정근거 전체 내용을 PDF 파일(전체 A4 10장 내외) 형태로 공시

■ 참고사항

- 등록금 산정근거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장학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 등록금 책정 절차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사립대학 등록금 책정 절차>

단계명	책정 조직	참여 주체	활동 내용
등록금 책정관련 자료 수집			
등록금 책정(안) 마련			
등록금 책정(안) 심의/의결			
등록금 책정(안) 확정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	해당 구성 위원	구성비율	비고
교직원위원			
학생위원			
전문가위원			
학부모 및 동문위원			
총계			

■ 작성지침

등록금 책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의견 수렴 및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 조직 및 기능, 의사결정 단계별 참여주체, 의견수렴 내용 및 활동 등을 기술함

【책정 단계명】 : 등록금 책정 단계의 명칭을 제공

【책정 조직】 : 등록금 책정을 위한 조직 또는 기구 명칭을 기재

【참여 주체】 : 등록금 책정을 위한 조직 또는 기구에 참여하는 주체의 구성단위를 기재

【활동 내용】 : 등록금 책정에 관한 활동 내용을 기재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 : 2019년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입력

II. 등록금 책정의 기본 방향(원칙) 및 고려 요소

1. 등록금 책정의 기본 방향(원칙)

<등록금 책정의 기본방향 및 원칙>

점	내 용
고객관점 (학생, 학부모 경제부담)	
지속성장관점 (대학장기발전계획등)	
사회경제적관점 등 (물가,여론 등)	

■ 작성지침

“고객관점”, “지속성장관점”,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등록금 책정의 기본 방향 또는 원칙을 기술함

○ “지속성장관점”은 대학의 특수성, 재정 여건, 재정운용 계획 등 대학장기발전 계획을 고려하여 기술함

2. 등록금 책정 고려 요소

<등록금 책정 고려 요소>

고려 요소	결과값	고려 여부	내 용
물가상승률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전년도 평균 등록금수준			
최근 5년간 등록금 증감률			
인건비 증감률			
기본 운영비 증감률			
주요사업비 증감률			
기타			

■ 작성지침

【물가상승률】 : 통계청이 발표하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의미하며, 결과값은 제공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을 의미하며, 결과값은 제공

【전년도 평균 등록금수준】 : 공시기관별 전년도 평균 등록금 수준으로, 결과값은 제공

【최근 5년간 등록금 증감률】 : 공시기관별 최근 5년간 등록금 증감률로, 결과값은 제공

- **【물가상승률】** 부터 **【최근 5년간 등록금 증감률】** 까지의 결과값은 한국장학재단 등록금·장학금 통계조사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며, 이하 자료는 결과값, 고려여부, 내용 등을 직접 입력하도록 함
- 대학의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을 ‘고려여부’에 표시하고, ‘내용’에는 각 요소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며, 위에서 제시한 고려 요소 외에 대학이 고려하는 요소를 추가하여 제시할 수 있음

III. 등록금 산정 세부 내역

1. 사립대학 자금 수입 전망

<사립대학 자금수입 전망>

(: 천원)

재원부담 주체	수입과목 구분	산출근거	전년도 최종추경(A)	금년도 본예산(B)	증감액 (C=B-A)	증감여부
합 계 액	-					
학생이 부담하는 재원	등록금수입					
	수강료수입					
	학생이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 등 교육에 부대되는 수입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	국고보조금수입					
대학조직이 당해연도에 조달예정인 재원	전입금 수입					
	이자수입 등 교육외 수입					
	전년도 미사용액					
내부조성재산의 매각이나 외부차입등으로 조달예정인 재원	투자자산의 매각 및 회수등					
	고정자산의 매각 및 처분 등					
	외부에서 단/장기로 차입					
	임대보증금 수입 등의 부채성 수입					
기타	<조정항목>					

■ 작성지침

【등록금수입】 : 입학금 및 등록금, 학부와 대학원을 분리하여 산출근거를 작성함

【수강료수입】 : 수강료 수입

【학생이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 등 교육에 부대되는 수입】 : 교육부대수입

【국고보조금 수입】 : 국고보조금 수입

【기부금수입】 : 등록금회계에서 받은 기부금수입

【전입금 수입】 : 전입금 수입

이자수입 등 교육외 수입] : 교육외 수입

【전년도 미사용액】 : 미사용전기이월자금

【투자자산의 매각 및 회수등】 : 투자와기타자산 수입

【고정자산의 매각 및 처분 등】 : 고정자산매각수입

【외부에서 단/장기로 차입】 : 유동부채입금 및 고정부채입금 중 장기차입금액

【임대보증금 수입 등의 부채성수입】 : 고정부채입금 중 기타고정부채

【기타(조정항목)】 : 기본금(출연)

- 사립대학 자금 수입 전망은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를 위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산출근거는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대비 본예산의 수입 전망의 고려요인 또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함
- 증감여부에는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대비 본예산의 “증가”, “감소”, “동결” 여부를 기재함

2. 사립대학 자금 지출 전망

<사립대학 자금 지출 전망>

(: 천원)

재원원원 주체	지출과목 구분	산출근거	전년도 최종추경 (A)	금년도 본예산 (B)	증감액 (C=B-A)	증감여부
합 계 액	-					
학생에게 직접 환원되는 지출	장학금의 지급					
	실험실습비 등 기타지원 경비					
	입시관리에 따른 지출					
대학 연구 성과를 위한 연구비	연구비 및 연구관리비					
대학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의 지급 (법정부담금 및 퇴직급여 포함)					
기본적 대학 경영을 위한 필수 운영비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운영비					
경상이전성격의 지출	(타회계 등) 전출금					
	이자지출 등 교육외 지출					
추정은 필요하나, 지출 미확정분	금년도 미사용액의 이월					
	예비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건설, 재산 매입이나 외부차입상환 등으로 지출 예정인 재원	투자자산의 매입 및 지출등					
	고정자산의 매입 및 지출 등					
	외부 단/장기차입금등 상환					

■ 작성지침

【장학금의 지급】 : 학생경비 중 장학금 및 학비감면액

【실험실습비 등 기타지원 경비】 : 학생경비 중 장학금 및 학비감면액과 입시관리비를 제외한 금액

【입시관리에 따른 지출】 : 학생경비 중 입시관리비

【연구비 및 연구관리비】 :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연구학생경비 중 연구비 및 연구관리비

【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의 지급(법정부담금 및 퇴직급여 포함)】 : 교원보수와 직원보수의 합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 : 관리운영비 중 시설관리비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 관리운영비 중 일반관리비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운영비】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

【(타회계 등) 전출금】 : 전출금

【이자지출 등 교육외 지출】 : 교육외비용

【금년도 미사용액의 이월】 :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예비비】 : 예비비

【투자자산의 매입 및 지출등】 : 투자와기타자산 지출

【고정자산의 매입 및 지출 등】 : 고정자산매입지출

【외부 단/장기차입금등 상환】 : 유동부채상환 및 고정부채상환액

- 사립대학 자금 수입 전망은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를 위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산출근거는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대비 본예산의 수입 전망의 고려요인 또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함
- 증감여부에는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대비 본예산의 “증가”, “감소”, “동결” 여부를 기재함

3. 사립대학 수지분석 결과

<사립대학 수지분석 결과>

(: 천원)

구 분	예산 (4월 공시 입력)					결산 (8월 공시 입력)			
	전년도 본예산 (A)	전년도 최종추경 (B)	금년도 본예산 (C)	증감액 (D=C-B)	증감율 (E=D/B×100)	전전년도 결산 (F)	전년도 결산 (G)	증감액 (H=G-F)	증감율 (I=H/F×100)
부족액 추정	○세입 부족 추정액								
	- 자금수입총계								
	- 자금지출총계								
운영수지	○운영수지(수입-지출)								
	- 운영수입항목								
	- 운영지출항목								
자본수지	○자본수지(수입-지출)								
	- 자산및부채수입								
	- 자산및부채지출								
점검항목	○이월금 증감 여부								
	- 미사용전기이월자금								
	-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수지분석 결과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

■ 작성지침

사립대학 수지분석 결과는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의 수지분석 결과를 운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누어 제공된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전년도 본예산”,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금년도 본예산”은 4월 공시에 맞추어 작성하며, 8월 공시에는 4월에 공시한 사립대학 수지분석 결과를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금년도 본예산” 확정본으로 수정하여 공시함. 또한, 전전년도 결산과,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공시함
- 운영수지의 “운영수입항목”에는 “내부조성재산의 매각이나 외부차입 등으로 조달예정인 자원”과 “기타(조정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재하며, “운영지출항목”에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건설, 재산 매입이나 외부차입상환 등으로 지출 예정인 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재함

자본수지의 “자산 및 부채수입항목”에는 “내부조성재산의 매각이나 외부차입 등으로 조달예정인 재원”을 기재하며, “운영지출항목”에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건설, 재산 매입이나 외부차입상환 등으로 지출 예정인 재원”을 기재함

- 점검항목인 “이월금 증감여부”에는 지출항목인 미사용전기이월자금에서 수입항목인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함
- 수지분석결과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은 운영수지와 자본수지 각각에 대한 주요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4. 사립대학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

4-1. 사립대학 수입 세부내역

<사립대학 수입 세부 내역>

(: 천원)

구분	계정과목	예산 (4월 공시 입력)				결산 (8월 공시 입력)				
		전년도 본예산 (A)	전년도 최종추경 (B)	금년도 본예산 (C)	증감액 (D=C-B)	증감률 (E=D/B×100)	전전년도 결산 (F)	전년도 결산 (G)	증감액 (H=G-F)	증감률 (I=H/F×100)
	합계									
운영수입	소계									
	등록금수입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외수입									
자산및부채수입	소계									
	투자외기타자산수입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부채입금									
	미사용전기이월자금									

■ 작성지침

사립대학 수입 세부내역은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의 수입 결과를 제공된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전년도 본예산”,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금년도 본예산”은 4월 공시에 맞추어 작성하며, 8월 공시에는 4월에 공시한 사립대학 수지분석 결과를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금년도 본예산” 확정본으로 수정하여 공시함. 또한, 전전년도 결산과,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공시함

4-2. 사립대학 지출 세부내역

<사립대학 지출 세부내역>

(: 천원)

구분	계정과목	예산 (4월 공시 입력)				결산 (8월 공시 입력)				
		전년도 본예산 (A)	전년도 최종추경 (B)	금년도 본예산 (C)	증감액 (D=C-B)	증감률 (E=D/B×100)	전전년도 결산 (F)	전년도 결산 (G)	증감액 (H=G-F)	증감률 (I=H/F×100)
	합계									
운영지출	소계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전출금									
	예비비									
자산및부채 지출	소계									
	투자및기타자산지출									
	고정자산매입지출									
	고정부채상환									
	미사용차기이월자금									

■ 작성지침

사립대학 수입 세부내역은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의 수입 결과를 제공된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전년도 본예산”,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금년도 본예산”은 4월 공시에 맞추어 작성하며, 8월 공시에는 4월에 공시한 사립대학 수지분석 결과를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금년도 본예산” 확정본으로 수정하여 공시함. 또한, 전전년도 결산과,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공시함

5. 등록금 책정 결정 사항

5-1. 주요 수입 및 지출 증감 추정 근거

<주요 수입 및 지출 증감 추정 근거>

	주요 수입 증감 추정 사유	주요 지출 증감 추정 사유
학생부담 관련	○	○
대학운영부담 관련	○	○
대학의 투자증감 관련	○	○

■ 작성지침

- 주요 수입 및 지출 증감 추정 근거는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의 결과를 위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주요 수입 증감 추정 사유”와 “주요 지출 증감 추정 사유”는 각각의 증감 사유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공시함
- 입학금 및 수업료 에 대한 증감 추정사유는 금년도 등록학생 수 추정을 토대로 산출된 금액임을 설명함

5-2. 등록금 인상 및 인하 결정

<등록금 인상 및 인하 결정>

(: 천원)

관점	금년도	전년도
입학금 결정	○	○
등록금(수업료) 결정	○	○

■ 작성지침

입학금, 등록금(수업료)의 결정은 이에 관련한 결정사항과 결정액을 위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결정사항은 금년도와 전년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모두 작성함

5-3. 등록학생 수 추정

<등록학생 수 추정>

(: 명, 천원)

구 분	전전년도	전년도				금년도	추정오차		비고
	추정학생 수 (A)	추정학생 수 (B)	최종등록(C) (4월1일)	최종등록(D) (10월1일)	최종등록(E) $[(C+D)/2]$	추정학생 수 (F)	전년도 (G=E-B)	금년도 (H=F-E)	
합계									
학부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6학년								
대학원	소계(전과정)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관점	금년도(H)					전년도(G)			
추정오차 주요원인	○					○			

■ 작성지침

- 추정오차 전년도(G)에는 전년도 최종등록 수와 전년도 추정학생 수간의 추정오차를 기재함
- 추정오차 금년도(H)에는 금년도 추정학생 수와 전년도 최종등록 수간의 추정오차 기재함
- 전년도(G)와 금년도(H)의 추정오차가 발생한 주요원인에 대해 “추정오차 주요원인”에 기재함

5-4. 등록금 인상 및 인하 책정 내역

<등록금 인상 및 인하 책정 내역>

(: 천원)

구분		학부				대학원				비고
		전년등록금 (A)	금년등록금 (B)	조정률(C) (=[B-A]/A*100)	조정여부 (인상/인하)	전년등록금 (D)	금년등록금 (E)	조정률(F) (=[E-D]/D*100)	조정여부 (인상/인하)	
입학금	평균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수업료	평균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 작성지침

학부와 대학원의 계열별 입학금 및 수업료의 책정결과를 기재함

- 학점당으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경우, 비교란에 기준이 되는 연 학점을 기재함

6. 계절학기 수업료 현황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

(: 학점, 천원)

구분(8월 공시 입력)		총 신청 학점 (A)	총 수강료 수입 (B)	학점당 평균액 (C=B/A)
대학 (2018년 기준)	여름학기			
	겨울학기			
대학원 (2018년 기준)	여름학기			
	겨울학기			

■ 작성지침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은 이에 관련한 총 신청 학점과 총 수강료 수입을 위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결정사항은 여름학과 겨울학과를 각각 모두 작성함

8월 작성하며, 4월 공시된 '8-차. 등록금 현황'에 추가로 반영되는 사항임

9-가-2.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수시(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내용】 : 2019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시양식】 : 2019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일이 명시된 학교의 자체 양식

【공시방법】 : PDF 파일 형태로 공시

■ 작성지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2019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PDF 파일) 첨부

※ 등록금심의위원회 각 차수별 모든 회의록을 탑재(수시)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9-나-1. 학생 1인당 교육비(국·공립대학, 국립대법인, 특별법법인)

■ 공시지침

【공시기관】 : 국·공립대학, 국립대법인, 특별법법인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18년 결산)

(: 원)

기준연도	대학회계(A)	발전기금회계(B)	산학협력단 회계(C)	도서구입비(D)	기계기구매입비(E)	총교육비(F=A+B+C+D+E)	재학생 수(G)	학생 1인당 교육비(H=F/G)

※ 국립대법인, 특별법법인은 대학 자체 양식에 따라 9-나-1, 9-나-2를 준용하여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작성 후 PDF파일로 공시
(산정근거에 포함된 회계 세부내역(산식) 필수 기재)

■ 검증사항

○ A, B, C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구입비와 기계기구매입비는 D, E에 중복 입력하지 않음

■ 작성지침

※ '별도의 회계를 사용하는 부속기관(부속중고, 부속병원 등)'의 현황은 포함되지 않음

【대학회계(A)】 : 인건비 + 물건비 + 이전지출 + 세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학비감면액(장학금 포함) - 운영비 중 지급이자 -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중 수입대체경비(최고경영자 과정, 각종 연수과정, 교양·문화과정, 어학과정, 지역사회과정 등의 평생교육과정 관련 비용, 입시 관련 비용, 국립대학 국유재산활용화비용)

【발전기금회계(B)】 : 경상비 + 목적사업비 중 장학사업비 및 연구지원비 + 기금교수인건비

【산학협력단회계(C)】 : 현금흐름표의 산학협력비 + 지원금사업비 + 일반관리비 + 간접비사업비

【도서구입비(D)】 : 대학회계, 기성회계, 발전기금회계 중 도서구입비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출된 도서구입비는 제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매해 조사되는 대학도서관 통계 조사' 중 '5.1. 교육부 제출용 도서구입비 결산 금액'의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최종 결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기계기구매입비(E)】 : 대학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중 기계기구매입(취득)비

※ 기계기구매입비는 연구 및 교육용만 포함하고, 행정용은 제외함

※ 소프트웨어 및 조달수수료는 기계기구매입비에서 제외

【재학생 수(G)】 : 2018. 4. 1. 기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수의 합('4-마. 재적학생 현황' 재학생 수)

※ 통폐합대학의 경우, 통합대상 대학 재학생 수도 포함해야 함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9-나-2. 학생 1인당 교육비(사립대학)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18년 결산)

(: 원)

기준연도	교비회계(A)	산학협력단 회계(B)	도서구입비(C)	기계기구매입비(D)	총교육비(E=A+B+C+D)	재학생 수(F)	학생1인당 교육비(G=E/F)

■ 작성지침

【교비회계】 : 자금계산서의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연구학생경비 중 입시관리비

【산학협력단회계】 : 현금흐름표의 산학협력비 + 지원금사업비 + 일반관리비 + 간접비사업비

【도서구입비】 : 교비회계 중 도서구입비

【기계기구매입비】 : 교비회계 중 기계기구매입비 + 산학협력단회계 중 기계기구취득비

【재학생 수】 : 2018. 4. 1. 기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수의 합('4-마. 재적학생 현황' 재학생 수)

※ 통폐합대학의 경우, 통합대상 대학 재학생 수도 포함해야 함

■ 참고사항

- 학생 1인당 교육비 중 총교육비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총교육비 자료를 공동활용할 예정임
- 학생 1인당 교육비 중 재학생 수는 2018년도 <4-마> 재학생 현황을 연계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0.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10-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수시(관련 공문 수신 후 30일 이내 지적 건명, 지적 내용, 처분 내용 1차 공시, 조치 결과 공문 발송 후 30일 이내 조치 결과 추가 공시)

【공시내용】 : 2019년에 처분 받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위반 사항 및 조치 결과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은 작성지침 참고)

감사 구분	지적 건명	지적 내용	처분	처분일	조치 결과	조치완료일

■ 작성지침

○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관실 감사, 행정처분위원회 결과로 2019년에 처분 받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위반 사항 및 조치 결과 입력

※ 감사 주체가 감사원, 교육부 감사관실(감사총괄담당관, 반부패청렴담당관, 사학감사담당관)인 경우 모두 해당(단, 처분은 감사원, 교육부 감사관실이 아닌 교육부 소관부서를 통해 통보될 수 있음)

【감사 구분】 : 처분 받은 감사명을 기재

【지적 건명】 : 2019년에 고등교육법 제60조 ~ 제62조에 의해 처분 받거나 조치 완료된 위반사항

참고

「고등교육법」 [시행 2019.1.1] [법률 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11.7.21.] [제목개정 2013.8.13.]
 제61조(휴업 및 휴교 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전문개정 2011.7.21.]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같은 사유로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지적 내용 :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지적 내용을 기재(행정처분 및 감사원, 교육부 등 감사에 따른 시정명령 포함)

【처분】 : 상기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교육부, 감사원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 제재예고 등을 받은 내용

처분일 : 처분 받은 일자(년, 월)를 기재

【조치결과】 : 처분에 따른 후속 처리 내용

※ 추가 소명 등으로 처분 내역 취소 시, 기 공시한 처분 내역 삭제

【조치완료일】 : 조치완료 일자(년, 월)를 기재

※ 처분 연도와 조치완료 연도가 다른 경우, 각각의 연도에 모두 공시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교육부, 감사원 등에서 받은 제재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 법인 소속의 기타 시설 및 개인에 관한 처분사항일지라도 공시(개인정보 제외)하고, 제재예고의 경우 예고사실을 기재하며 향후 제재예고가 취소될 경우, 해당 내용 삭제 후 수정공시
- 시정명령 및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조치 결과”에 관련 내용을 명기하여 공시 후, 결과에 따라 수정공시
- 감사에 의한 시정명령이 아닌 실태점검, 현장점검 등으로 인한 시정명령의 경우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1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11-가-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10월

【공시내용】 :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공시양식】 : 학교의 자체 양식(자료기준일 : 2019. 6. 30.)

【공시방법】 : PDF 파일 형태로 공시

■ 작성지침

-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수립일은 총장의 승인일
- 학교 발전계획은 대학발전을 위한 대학의 비전과 전략 설정 배경(대내외 환경 분석 등), 대학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교육 여건 개선 계획, 학사구조 개편, 구조개혁, 기타 등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 학교 특성화계획은 대학본부 관점에서 특성화 분야, 학교발전계획과의 연계 사항, 재정집행계획(자체투자, 연관 재정지원사업 등), 특성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계획, 특성화 분야 지원인프라 개선계획(교원 등), 특성화학과(전공)명 등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이 별도 개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공시 자료를 재 탑재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1-가-2. 학교 특성화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10월

[공시내용] : 학교 특성화 분야 현황

[공시양식 및 방법] : 다음의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년)

단과대학	학과	구분	학과특성	구분 (중점/예비육성 분야)	특성화 분류			학과특성화명	계획수립연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OO분야	
								(2)	
								...	
								(1)	
								(2)	
								...	

■ 작성지침

[특성화학과] : 해당 특성화 분야에 특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학과

[중점육성분야] : 2018년에 대학이 추진했던 특성화 분야로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해당연도에 추진실적(재원확보실적)이 1건 이상)이 있는 분야

[예비육성분야] : 2018년에 추진실적(재원확보실적)은 없으나, 추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상태로서 앞으로 육성하려는 분야

※ 2019년 신설학과의 경우 입력 불가

[특성화분류] : 특성화 분류체계 중 학과 및 특성화 분야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특성화 분류 선택

[학과특성화명] : 대학(학부, 학과, 전공)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명

[계획수립연도] : 해당 특성화분야의 특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총장의 승인을 받은 연도

예시) 2016년에 최초 계획이 수립되어 변경 없이 해당 분야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면 2016년으로 입력

참고

<특성화분류체계>

(총 14)	중분류(총 50)	소분류(총 202)
1. 건설·교통	1-1. 건축·토목	① 국토계획 및 개발 ② 시설물 설계 및 해석 ③ 건축·토목 시공 및 재료 ④ 건축설비 ⑤ 건설방재 ⑥ 건축·토목(융합)
	1-2. 교통	① 도로교통 ② 철도교통 ③ 항공교통 ④ 해양교통 ⑤ 교통(융합)
2. 공공서비스	2-1. 공무원	① 일반공무원 ② 교육공무원 ③ 군인·경찰 ④ 공무원(융합)
	2-2. 사회복지	① 아동복지 ② 장애인복지 ③ 여성복지 ④ 노인복지 ⑤ 가족복지 ⑥ 사회복지(융합)
	2-3. 종교전문직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종교전문직(융합)
3. 기계	3-1. 기계부품·소재	① 금형 ② 기계부품 ③ 기계설계 ④ 철강 ⑤ 기계부품·소재(융합)
	3-2. 로봇·자동화기계	① 로봇 ② 메카트로닉스 ③ 자동화기기 ④ 로봇·자동화기계(융합)
	3-3. 에너지기계	① 신재생에너지 기계 ② 에너지 발전 ③ 송·배전 계통 ④ 전력 IT ⑤ 에너지 기계(융합)
	3-4. 우주·항공기계	① 우주발사체·인공위성 ② 항공기부품 ③ 헬리콥터부품 ④ 우주·항공기계(융합)
	3-5. 정밀기기	① 방사선융합기술 ② 정밀계측·측정기기 ③ 초정밀부품 ④ 정밀기기(융합)
	3-6. 자동차·철도	① 자동차부품 ② 자동차조립·정비 ③ 철도차량 ④ 자동차·철도(융합)
	3-7. 조선·해양기계	① 선박설계· 건조 ② 조선시설·설비·부품 ③ 해양플랜트 ④ 조선·해양기계(융합)

4.	4-1. 인문학	① 역사학 ② 철학 ③ 언어학 ④ 문학 ⑤ 인문학(융합)
	4-2. 사회과학	① 정치·행정·법학 ② 경제학 ③ 사회·인류·생활과학 ④ 문헌정보·언론정보·커뮤니케이션학 ⑤ 사회과학(융합)
	4-3. 자연과학	① 수학 ② 물리학 ③ 화학 ④ 지구과학 ⑤ 생물학 ⑥ 자연과학(융합)
5. 농림수산물	5-1. 농림기술	① 식물자원과학 ② 동물자원·수의과학 ③ 농기계·토목공학 ④ 농림기술(융합)
	5-2. 식품가공·안전·조리	① 농축산물가공 ② 수산물가공 ③ 식품안전관리 ④ 식품조리 ⑤ 식품가공·안전·조리(융합)
	5-3. 해양수산기술	① 수산물생산 ② 해양자원관리 ③ 해양수산기술(융합)
6. 문화·예술·체육	6-1. 음악·미술	① 음악 ② 미술
	6-2. 연극·영화	① 연극 ② 영화
	6-3. 디자인	① 시각디자인 ② 산업디자인 ③ 섬유·패션디자인 ④ 환경디자인 ⑤ 디자인(융합)
	6-4. 무용·체육	① 무용 ② 체육
	6-5. 미용	① 헤어·메이크업·피부관리 ② 기타미용
	6-6. 관광	① 호텔·콘도미니엄 ② 여행(의료관광 포함) ③ 국제회의·컨벤션 ④ 카지노 ⑤ 관광(융합)
	6-7. 문화콘텐츠	① 게임콘텐츠 ② 캐릭터·만화·애니메이션 ③ 모바일·뉴미디어콘텐츠 ④ 영상(방송·통신)콘텐츠 ⑤ 문화콘텐츠(융합)
	6-8. 문화자원	① 문화유산관리 ② 문화상품 기획·개발 ③ 문화자원(융합)
7. 보건·의료	7-1. 의과학	① 기초의과학 ② 임상의학 ③ 치의과학 ④ 간호과학 ⑤ 한의과학 ⑥ 의과학(융합)
	7-2. 의약품	① 의약품 개발·안전 ② 바이오장기 ③ 의약품(융합)
	7-3. 의료기기	① 치료·진단기기 ② 기능복원·보조기기 ③ 의료기기(융합)

8. 지원	8-1. 경영	① 국제경영 ② 인사관리 ③ 마케팅·경영정보 ④ 재무·회계
	8-2. 무역	① 국제 무역 ② 국내 무역
	8-3. 물류·유통	① 물류 ② 유통 ③ 물류·유통(융합)
9. 생명과학	9-1. 생물공학	① 발효·효소공학 ② 세포·조직공학 ③ 생물청정기술 ④ 유전공학 ⑤ 생물 위해성 관리 ⑥ 생물공학(융합)
	9-2. 산업바이오	① 기능성 바이오 소재 ② 바이오화학소재 ③ 바이오 화장품·소재 ④ 기능성 식품 소재 ⑤ 바이오 칩·센서 ⑥ 산업바이오(융합)
	9-3. 바이오공정 기술·기기	① 바이오공정기술 ② 바이오공정·분석기기 ③ 바이오공정기술·기기(융합)
10. 전기·전자	10-1. 광 응용기기	① 광 부품 ② 광 계측·제어기기 ③ 광 응용기기(융합)
	10-2. 전기·전자기기	① 충전기기 ② 계측기기 ③ 가정용 기기 ④ 전기·전자 기기(융합)
	10-3. 반도체·디스플레이	① 반도체 장비 ② 반도체 소자·설계 ③ 디스플레이 ④ 반도체·디스플레이(융합)
	10-4. 전기전자 부품·전지	① 전기전자부품 ② 무기센서 및 제어 ③ 전지 ④ 전기전자부품·전지(융합)
11. 정보·통신	11-1. IT 기기 및 기술	① IT 일반기기 ② 통신 기기 및 기술 ③ 홈 네트워크 기기 및 기술 ④ 방송 기기 및 기술 ⑤ 멀티미디어 ⑥ IT 기기 및 기술(융합)
	11-2. 소프트웨어 개발	① 패키지 소프트웨어 ②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③ 소프트웨어(융합)
	11-3. IT 정보서비스	① 정보 보호·보안 ② 통신 서비스 ③ 방송 서비스 ④ IT 정보서비스(융합)

12.	12-1. 화학공정기술	① 나노화학 ② 고분자 ③ 생물화학 ④ 화학공정기술(융합)
	12-2. 섬유제조·제품	① 섬유제조 ② 섬유제품 ③ 염색가공 ④ 섬유제조·제품(융합)
	12-3. 정밀화학	① 정밀화학
13. 환경	13-1. 환경기술	① 대기환경 ② 수질환경 ③ 토양환경 ④ 생태환경 ⑤ 해양·연안환경 ⑥ 환경기술(융합)
	13-2. 환경평가·방재	① 환경보건·평가 ② 자연재해방재 ③ 환경평가·방재(융합)
14. 특화교육시스템	14-1. 교육과정 운영	① 공학교육인증 ② 국제화 교육 ③ 기초·인성 교육 ④ 전공특화교육·주문식 교육 ⑤ 취업 교육 ⑥ 교수-학습개선·e-Learning
	14-2. 교육여건개선	① 교육 환경 개선 ② 학생 활동 지원
	14-3. 산학협력	① 공동기술개발 ② 현장실습·인턴십 ③ 창업보육 ④ 산학협력(융합)

■ 참고사항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 12-가. 연구비 수혜 실적
- 12-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 12-다. 장학금 수혜 현황
- 12-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 12-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 12-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 12-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 현황
- 12-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 12-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 12-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 12-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 12-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 12-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 12-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 12-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두 기관 이상에서 지원받은 연구의 경우 지원규모가 더 큰 기관 기준으로 작성
 예시 중앙부처(60%), 지자체(40%)로 예산을 지원 받았을 경우 중앙부처에 과제수, 연구비를 기입

- ③ 단순 장학금 및 재정지원 사업(예: BK21,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지원사업),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연구장려금, 매월 지급되는 보수 성격의 교내 지원 연구과제 등은 제외
- ④ 연구비 내역 중, 전년도(2017년) 연구비는 제외(전년도 연구비에 해당하는 이월액, 이자발생액 제외)

【연구비】

- ① 2018년도 계약(협약)된 금액으로, '현금'만 포함 (다년과제인 경우, ④번 참고)
- ② 연구비에는 간접비를 포함하되 KRI 입력 시, 반드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함
- ③ 연구비에는 교내·외 대응자금을 포함하지 말고, 대응자금은 별도로 입력
- ④ 연구과제가 다년 과제인 경우, 2018년 연구비만 계산
 예시 총 연구비 4억 원에 3년 과제가 2차년도인 2018년도에 연구비가 1억 원으로 책정되면 연구비는 1억 원으로 기재
 ※ 제외 : 현물 (자료의 정확성 검증 불가)
- ⑤ 총괄과제에 포함되는 세부과제일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해당 연구비 입력

【과제】 : 2019. 4. 1. 기준 소속대학 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서 2018년도에 수행한 과제의 계약(협약) 건수

【연구비 지원구분】 : 교내/ 교외(중앙정부/ 지자체/ 외국/ 민간)로 구분

- 교내 : 대학자체(교내)에서 지원한 연구비
- 중앙정부 : 중앙정부(지자체 제외) 및 각 부처 산하 기관에서 지원한 연구비
-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기관에서 지원한 연구비
- 외국 : 외국정부, 민간 관계없이 외국에서 지원된 연구비를 의미함
- 민간 : 정부 이외의 민간 사업체, 연구소 등에서 지원한 연구비
- ※ 재원과 지원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 : 지원기관을 기준으로 입력

【대응자금】 :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협약)된 대응자금 금액

- ※ 제외 : 현물 (자료의 정확성 검증 불가)
- 교내 : 해당 과제의 지원연구비에 대응되는 교내의 계약(협약)된 대응자금 (자금 출처 -교내)
- 교외 : 해당 과제의 지원연구비에 대응되는 교외의 계약(협약)된 대응자금 (자금 출처 - 교내 이외의 기관)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 교내 : (교내연구비+교내대응자금)/전임교원 수

교외 : (교외연구비+교외대응자금)/전임교원 수

■ 참고사항

- 연구비 수혜 실적은 한국연구재단 조사시스템(KRI)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12-나-1. 학생 규모별 강좌수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4월, 10월

[공시내용] : 2019년 학생 규모별 강좌수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학년도 1학기(4월), 2학기(10월))

학기	강좌 유형	학생 규모별 강좌수								
		20명 이하	21~30명	31~40명	41~50명	51~60명	61~80명	81~100명	101~200명	201명 이상
1	오프라인									
	온라인									
2	오프라인									
	온라인									
3	오프라인									
	온라인									
4	오프라인									
	온라인									

■ 작성지침

[학기] : 각 학교의 학사규정에 따른 연간 운영되는 정규학기 단위이며, 계절학기는 입력에서 제외

[강좌 유형] : 강좌 유형을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구분하여 입력

※ 온라인 강좌는 수업의 70%이상이 원격(방송·통신)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며, 블렌디드러닝 강좌는 온라인 강의 비중이 70% 이상일 경우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70% 미만일 경우 오프라인으로 입력

※ 온라인 강좌 중 OCU, KCU 등 외부에서 개설되는 강좌는 제외하고, 대학 자체에서 개설한 온라인 강좌만 포함하여 입력

학생 규모별 강좌수】 : 학기별로 개설된 강좌를 수강인원 20명 이하, 21~30명, 31~40명, 41~50명, 51~60명, 61~80명, 81~100명, 101~200명, 201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입력

- ※ 분반은 각각의 강좌로 입력, 합반과 팀티칭은 하나의 강좌로 입력
- ※ PASS/FAIL과목 및 학점이 없는 강좌도 실제 수업이 진행되었다면 입력
- ※ 입력 제외 대상(아래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입력에서 제외)
 - 담당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강좌
 - 학생 개인이 현장체험이나 사회봉사, 인턴십을 하고 학점을 받는 등 100%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실습과목(단, 교원이 직접 학생을 인솔한 경우는 입력)
 - 교수가 학생 1인을 논문지도 해주는 경우(단,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논문지도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입력)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1학기 현황은 4월, 2학기 현황은 10월에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다음과 같이 대학정보공시센터 이메일(open@kcue.or.kr)로 별도 요청하여 입력

	입력 시기		
	1학기	2학기	3학기 이상
연간 2학기 운영 대학	4	10월	-
연간 3학기 이상 운영 대학	4월	10월	10월공시 이후 학기 확정 시기에 별도 요청

12-나-2. 교원 강의 담당 비율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4월, 10월

【공시내용】 : 2019년 교원 강의담당 비율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학년도 1학기(4월), 2학기(10월))

연도	단과대학	학과 (전공)	구분	학과특성	학기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 총계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기타		계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1													
					2													
					3													
					4													

■ 검증사항

○ 교원 강의담당학점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입력하되, 학과별 학기별 교원 강의담당학점을 구한 값을 반올림함

■ 작성지침

【학기】 : 각 학교의 학사규정에 따른 연간 운영되는 정규학기 단위이며, 계절학기는 입력에서 제외

【교원 강의 담당학점】 : 총 개설 강의학점 중 해당 직급의 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

강의 개설 학과 기준으로 입력

※ PASS/FAIL 강좌도 학점 및 담당교원이 있다면 포함하여 입력

※ 입력 제외 대상(아래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입력에서 제외)

- 개설 강좌의 학점이 없는 경우

- 개설 강좌의 담당교원이 없는 경우

- 강좌 중 OCU, KCU 등 외부에서 개설되는 강좌
- 개설 강좌 담당교원의 강의시수가 없는 경우(단, 담당교원의 강의시수가 없어도 교원이 실제로 한 학기동안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포함하여 입력)

예시

1. 'OOO' 담당교원이 배정되었지만, 담당교원은 실제 강의를 진행하지 않아 대학에서 강의시수를 책정하지 않음
→ 입력에서 제외
2. '△△△' 과목에 담당교원이 배정되어 매주 2시간, 15주 강의 진행. 업체와 대학 간 협약에 의해 강의료가 업체에서 지급되어, 학교에서는 강의시수를 책정하지 않음
→ 담당교원의 강의시수는 없지만 실제로 강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포함하여 입력
3. 1:1논문지도, 현장실습, 사회봉사의 강좌도 입력대상임. 단, 입력제외대상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함 (다른 강좌와 동일하게 적용)

※ 개설학과가 없는 강좌의 경우, 기타(소속학과없음)에 입력

※ 분반은 각각의 강좌로 보고 각 분반에 따른 학과에 교원 강의담당학점을 각각 입력, 팀티칭은 하나의 강좌에 해당하는 학점을 강의시간 비율로 나누어 계산, 합반의 교원 강의담당학점은 '학점 ÷ 합반한 강좌 수'로 계산하여 합반한 학과에 각각 입력

예시

1. 분반의 경우
경영학원론(3학점)을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A반, B반, 비전임교원이 강의하는 C반(총 3개 분반)이 있을 경우,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학점은 3(학점)×2(전임교원 수) 이며,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 학점은 3(학점)×1(비전임교원 수) 로 하여 실제 운영과 같이 교원강의담당학점 합계는 9학점이 됨
2. 팀티칭의 경우
경영학원론(3학점)을 전임교원 1명이 2시간, 비전임교원 1명이 1시간으로 하여 팀티칭을 하는 경우,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학점은 2(전임교원강의시간수)÷3(총강의시간수)×3(학점)이며,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 학점은 1(비전임교원 강의시간)÷3(총강의시간수)×3(학점)으로 교원강의담당학점 합계는 3학점이 됨
3. 합반의 경우
 - ① 음악학과에서 합창 1(3학점), 합창 2(3학점)를 합반하여 수업하고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경우, 한 강좌로 보아 전임교원 담당학점에 3학점만 입력
 - ②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경제학원론(3학점)을 경제학과, 농업경제학과에서 강좌를 각각 개설하였지만 합반하여 수업하는 경우, 교원강의담당학점은 3(학점)÷2(합반 수)씩 계산하여 경제학과, 농업경제학과에 전임교원 담당학점에 각각 1.5학점씩 입력

[전임교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교원
- 2019년 해당학기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 대학원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전임교원 수준의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전담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인문한국사업: HK, 중점연구소사업 등)의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
- 국·공립대 기금교수(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전임교원에 포함
 -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라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된 교원
 -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 근무 계약교원
- HK교수 : 국·공립대는 ‘HK교수 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 같은 처우로 계약되고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교원, 사립대는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 국공립대 산학협력중점교수 관련 규정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임용된 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임교원으로 포함하며, 사립대는 교육부 산학협력 중점교수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에 한하여 전임교원으로 포함
- ※ 인정 제외대상 교원(기타로 분류)
 - ①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 ②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교원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 ③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 ※ 총장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음
- 【겸임교원】**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4항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교원
 - 원소속(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이 3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단, 전일근무를 하는 겸임교원은 원소속(본직)기관의 휴직자도 포함 가능)
 - * 정규직원은 「기간제 및 단시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기간근로자’가 아닌 직원을 의미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교원
 - 담당 과목이 겸임교원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 ※ 인정 제외대상 교원(기타로 분류)
 - ① 겸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 ②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교원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담당과목이 부합되지 아니한 자(순수 학술이론을 강의하는 자)

④ 본직기관의 비상근 근무자,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전임연구원

【초빙교원】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4항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 근무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약된 교원
-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 받는 교원

- 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교원

- 2019년 해당학기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대학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 인정 제외대상 교원(기타로 분류)

- ① 초빙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 ②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전임연구원

【시간강사】 : 2019년 해당학기 현재 재직 중인 시간강사

【기타】 : 전임교원 및 겸·초빙교원, 시간강사를 제외한 자로, 전임교원 및 겸·초빙교원의 인정제외자를 포함

※ 총장(혹은 본교 교직원, 연구원 등)이 강의하는 경우, 기타에 입력

【(강의 담당) 비율(%)】 : (강의 담당 학점/강의 담당 학점 총계) × 100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1학기 현황은 4월, 2학기 현황은 10월에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다음과 같이 대학정보공시센터 이메일(open@kcue.or.kr)로 별도 요청하여 입력

	입력 시기		
	1학기	2학기	3학기 이상
연간 2학기 운영 대학	4	10월	-
연간 3학기 이상 운영 대학	4월	10월	10월공시 이후 학기 확정 시기에 별도 요청

12-나-3. 대학 강의 공개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10월

공시내용 : 2018학년도 대학 강의 공개 실적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은 작성지침 참조)

	강의 동영상 공개강좌 수	멀티미디어 자료 공개강좌 수	강의자료 공개강좌 수	전체 공개 건수(주차)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합계				

■ 작성지침

【용어정의】 : 주차와 차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주차 : 대학에서 개별 강좌를 한 학기 동안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1주 단위)을 정의하는데 활용되는 강의 시간 단위

※ 차시 : 주차를 구성하는 소단위로서 1주차에 여러 개의 분절된 차시가 포함될 수 있음

예시 1주차(곱셈과 나눗셈) : 1차시-곱셈, 나눗셈의 개념, 2차시-곱셈, 나눗셈 문제풀이, 3차시-곱셈, 나눗셈 문제응용

【자료기준일】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겨울 계절학기까지 기간(2018. 3. 1 ~ 2019. 2. 28)에 개설해서 활용한 강좌 중 KOCW에 메타데이터, 강의계획서, 강의동영상, 멀티미디어 자료 및 강의 자료를 탑재 공개한 강좌 건수

※ 제출마감일인 2019. 6. 30까지 대학에서 강의 정보를 KOCW에 제출한 데이터를 실적으로 인정

【강의계획서】 : 강의계획서는 공개가 원칙이며 한 학기 강좌 전체 주차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

※ 강의 탑재 시 PDF파일로 제출 필수, 교재가 있는 경우 강의계획서 내에 교재정보 반드시 기재

【강의 동영상 공개강좌】 : 한 학기 강좌 중 10주차 이상의 강의 동영상 혹은 강의 동영상 + 강의자료 공개한 경우, 한 학기 공개강좌로 인정

인정 시간 기준 : 1학점(총 150분), 2학점(총 300분), 3학점(총 450분), 주차별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주차의 총 강의 시간으로 산정

- ※ 강의 동영상 자료에 포함되는 범위
 - 오프라인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
 - 강의자료와 음성 파일로 구성된 콘텐츠
 - 이러닝 강의(저작도구를 활용하여 학습 관리가 가능한 강의 콘텐츠, 플래시 애니메이션 포함)
- ※ 메타데이터에 파일별로 주차 표시(1주차~15주차) 및 차시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 학기 강좌로 인정함
 예시 한 학기 3학점 강좌의 경우 : 10주차 이상 공개 시 한 학기 동영상 강좌로 인정함

【멀티미디어 공개강좌】 : 한 학기 강좌 주차별 분량 중 10주차 이상을 멀티미디어 자료로 공개한 강좌

- ※ 멀티미디어 공개 강좌로 포함되는 유형
 - 오프라인 강의를 촬영한 동영상, 이러닝 강의, 외부 동영상 자료 Link(유튜브 등), 퀴즈, 토론, 블로그, 과제, 교재정보, 참고문헌, 강의계획서, 강의자료(Lecture Notes)
 - 위의 자료들 중 주차별로 최소한 4가지 종류의 자료로 구성되면 공개 실적 건수로 인정
- ※ 메타데이터에 파일별로 주차 표시(1주차~15주차) 및 차시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 학기 강좌로 인정함

【강의자료 공개강좌】 : 강의자료만 공개하는 경우 한 학기 강좌 주차별 분량 중 최소 2/3 이상의 강의자료 공개한 경우, 공개 실적 건수로 인정

- ※ 강의자료 : 교수가 강의 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파워포인트 자료, 워드 파일, 엑셀 파일, 이미지 파일 등
- ※ 메타데이터에 파일별로 주차 표시(1주차~15주차) 및 차시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 학기 강좌로 인정함
- ※ 강의 동영상과 강의자료를 모두 공개할 경우 동영상 공개강좌로 인정

【전체 공개 건수(주차)】 : 강좌별로 공개된 주차 전체의 합

- ※ 1주차라도 공개한 자료가 있으면 실적에 포함

■ 참고사항

- KOCW (Korea Open CourseWare, <http://www.kocw.net>, 대학 강의 및 강의자료 공동활용서비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KOCW 사이트에 공개한 강의계획서, 강의동영상, 멀티미디어 및 강의자료를 시스템에서 자동 집계하여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으로 연계
- 강의계획서, 강의동영상, 멀티미디어 및 강의 자료 업로드 시 공개 강의 파일 탑재 기준이 KOCW 등록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음. 탑재 자료는 대학별 10% 이내에서 샘플링을 하여 탑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개 실적으로 인정되며, 탑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공개 실적에서 제외하고 KOCW에서 서비스를 중지함
- 공개 강의 파일 탑재 및 서비스 프로세스(KOCW 사이트의 강의기부 절차에 따라 수동 혹은 대학 강의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연계 가능)
- KOCW 홈페이지 내 실적 확인 : KOCW사이트 접속(<http://www.kocw.net>) → 메인 화면 우측 상단 '대학담당자'메뉴 선택 → '공시실적조회'메뉴 선택 → '대학강의공개 실적조회' 화면 내 해당 대학 선택 → '상세정보 엑셀 다운로드' 클릭 시 실적 상세내용 조회 가능

	파일(자료) 등록	⇒	파일(자료) 검증	⇒	서비스 개시
담당기관	대학		KERIS		KERIS
제출마감일	2019년 6월 30일		-		-
소요일수	-		3~5일		-
서비스 개시	-		-		2019년 8월 중

공개 강의 파일 탑재 기준

- 1) 강의계획서 파일 : 파일이 파손되어 열리지 않거나 파일에서 일부 또는 전부 내용이 없는 경우 서비스를 중지함
 - 2) 강의동영상 및 멀티미디어 파일 : 공개한 강의 동영상 및 이러닝 강의 콘텐츠에서 영상의 질은 화면상의 글씨, 그림 등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 실적에서 제외. 또한 100% 음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음질은 음성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공개 실적에서 제외
 - 파일 포맷 : .mp4 포맷 (인터넷 서비스 혹은 모바일 서비스용)
 - 파일 용량 : 기준 없음
 - 저작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부분 혹은 학습과 관계없는 부분은 삭제 후 공개 필요
 - 3) 강의자료 파일 : 파일이 파손되어 열리지 않거나 파일에서 일부 또는 전부 내용이 없는 경우 공개실적에서 제외
- 실적 산정 기준 : KOCW 강의 공개실적은 강의계획서, 메타데이터(반드시 파일별로 주차, 차시 표시)와 강의 동영상, 이러닝 강의 및 강의자료를 서버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검증사항

< 현황 >

- 재학생 수는 '0명'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지급금액은 '0원'이 아닐 경우 혹은 그 반대는 오류로 판단되므로 검증하여야 함
- '재학생'은 '학생 1인당 장학금'을 산출하기 위한 입력항목으로, 전년도(2018. 4. 1. 기준, 2018. 10. 1. 기준) 재학생과 일치하여야 함

< 학비감면 준수 여부 >

- 사립대학 : 등록금 수입 총액은 2018년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 작성지침

< 공통사항 >

- '관련법규'(국립학교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등)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가 면제되는 경우 등록금수입 및 장학금 입력 대상에서 제외함 (예 : 국립학교설치령 제16조,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제12조 등)
- 대응투자 : 대응자금비율이 적용되는 대응투자자의 경우, 교외와 교내 대응자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입력함

예시

- 보훈 자녀장학금의 경우, 국가 : 교내의 대응자금 비율이 50 : 50이므로, '교외-국가'와 '교내-기타'에 50%씩 나누어 입력
-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교외-국가'와 '교내-근로' 양쪽에 국가보조금과 교내 대응자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입력함

< 장학금 현황 >

- 2018. 4. 1., 10. 1. 기준 재적학생 중 2018년 1, 2학기에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모두 포함
 - ※ 교환학생, 방문학생, 시간제학생, 어학연수생, 교육과정 공동운영 외국인 유학생(공동학위·복수학위 과정 유학생)은 제외
 - ※ (2018년 기준) 회계연도 중 재적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해 자퇴 또는 제적된 경우라도 지급받은 장학금은 입력하고 반환된 금액은 제외

참고
< 인정 범위 >
○ 교내 장학금

: 2018년도 각 학교의 대학관계규정에 공식적으로 명시된 장학금으로 대학 내의 등록금 및 기금 등의 자체 예산에서 지급한 교내 장학금(교육부 대학장학과-4299호, 2012.12.8.)이면서, 사립대학은 2018년도 교비회계 자금결산서에, 국공립대학은 2018년도 일반회계·기성회계·대학회계·발전기금회계의 세출결산서에 반영된 장학금. 단, 관련 규정에 명시되었더라도 장학목적 외로 지급된 경우 장학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장학목적으로 지급한 교내장학금이란?

: 대학관계규정에 공식적으로 명시된 장학금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이나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등 학업과 연관성 있는 활동에 대해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생활비, 실습비 등의 금품을 말함. 단,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군 가산복무지원금은 '18년부터 장학금에서 제외함.

○ 교외 장학금

: 외부재원으로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으로 사립대학은 2018년도 자금결산서에, 국공립대학은 2018년도 세출결산서에 반영된 장학금. 단, 장학목적 외로 지급된 경우 장학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장학금에 대한 예외 인정 : 장학금 현황의 교외장학금의 경우, 예외적으로 회계(결산) 미반영액도 공시대상에 포함. 단, 제3자 관점에서 인정가능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대학이 확보 및 보관하여야 함 (예시 외부장학단체가 대학에 발송한 공문 등)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I 유형을 모두 수혜하여 대출금과 장학금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 등록금 초과금액이 자동 상환 처리되어 결산에 반영되지 않음
→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예시 등록금 500만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400만원, 국가장학금 I 유형 300만원 수혜 시, 200만원이 자동 상환 처리되어 학교에 100만원만 지급되었다고 교외-국가에 300만원으로 입력

※ 장학목적으로 지급한 교외장학금이란?

: 객관적 입증자료에 명시된 장학금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이나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등 학업과 연관성 있는 활동에 대해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생활비, 실습비 등의 금품을 말함. 단,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군 가산복무지원금은 '18년부터 장학금에서 제외함.

학기 : 1학과와 2학기 구분하여 입력함, 계절학기에 수혜한 장학금도 포함하여 입력하며, 하계는 1학기에 동계는 2학기에 입력함

재학생 : 2018년 1학기(2018. 4. 1. 기준)와 2학기(2018. 10. 1. 기준)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를 입력함

교외 장학금 : 외부의 재원으로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으로 재원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사설 및 기타로 구분함

교외-국가 : 국고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국비장학금 등)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훈장학금을 입력함

예시 보훈장학금 입력 기준

	보훈장학금 지급 대상	교외-국가	교내-기타	설립구분	보훈장학금 지급 대상	교외-국가	교내-기타
/공립	본인	-	100%	사립	본인	-	100%
	자녀	-	100%		자녀	50%	50%

- 교외-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교육청) 재원으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을 입력함
- 【교외-사설 및 기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일반 기업체, 민간단체, 기부자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입력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지만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원으로 조성되어 지급한 장학금은 '사설 및 기타'에 입력함
 예시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고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국가'에 입력하나, 예외적으로 기부금으로 조성된 사랑드림장학금은 '사설 및 기타'에 입력
- 【교내 장학금】** : 학생에게 지급된 교내 장학금의 수혜 명목에 따라 성적우수/저소득층/근로/교직원/기타로 구분하여 입력하며, 외국인전형 입학·편입학생의 장학금 수혜현황을 추가로 입력
 ※ 외국인전형 장학금 수혜현황을 추가로 입력하므로 기존 유형구분별 장학금 수혜현황 및 교내장학금 총계에는 외국인전형 장학금 수혜현황이 포함됨
- 【교내-성적우수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
 ※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아닌 장학금 수혜 명목인 성적우수장학금으로 입력함
 ※ 학업성적이 아닌, 체육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교내-기타'에 입력함
 ※ 신입생은 입학성적(내신, 수능, 논술, 면접, 수상경력 등 대학별 입학사정관제에 준함)이 학업성적임
- 【교내-저소득층장학금】** : 각 대학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
- 【교내-근로장학금】** : 교내·외 특정 장소에 배치되어 일정시간 근로한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예 : 국가근로장학금 중 대학 대응투자금액 및 대학자체 근로장학금)
- 【교내-교직원장학금】** : 해당 대학의 재직 교직원 또는 그 가족 등을 위해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
 ※ 대학 외(자매재단이나 동일법인, 타대학 등) 교직원에게 지급한 교직원장학금은 '교내-기타장학금'으로 분류함
- 【교내-기타】** : 성적우수장학금, 저소득층장학금, 근로장학금, 교직원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을 입력함
- 교내 외국인유학생(외국인전형)** : 외국인 대상 입학전형(외국인(특별)전형 및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등)으로 입학·편입학한 재직 외국인유학생의 교내장학금 수혜금액을 입력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인(제29조제2항제2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제29조제2항제6호), 전과정 해외이수 외국인(제29조제2항제7호)을 대상으로 입력하며, 재외국민(제29조제2항제2호), 북한이탈주민(제29조제2항제6호) 및 전 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제29조제2항제7호)은 제외
 ※ 외국인 대상 입학전형 외의 전형으로 입학·편입학한 재직 외국인유학생의 교내장학금 수혜금액은 제외
- 【재학생 1인당 장학금】** : (교내 및 교외 장학금의 합/재학생 수)
 ※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산출 시 재학생 수는 '전체 재학생 수의 합 / 2학기'로 산출
 ※ 학과명칭 변경, 신설, 폐과, 학부제 등으로 인해 재학생이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의 비교란에 특이사항을 명기함
- <학비감면 준수 여부>
- 【학비감면 준수 여부】**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2항 준수 여부
- 【10%규정 준수 여부】** : 당해연도 등록금 수입 재원으로 면제·감액(부득이)사후 지급된 금액을 입력함(계절학기 제외)
- 【30%규정 준수 여부】** : 당해연도 등록금 수입 재원으로 경제사정 곤란자에게 면제·감액(부득이)사후 지급된 금액을 입력함(계절학기 제외)

장학금 종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경제사정 곤란자가 학비를 감면받았을 경우도 인정함

【등록금수입총액】 : 결산기준의 등록금 수입 총액(수강료 수입 및 계절학기 제외)을 입력함

※ 등록금수입총액 = 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 사립대학 : 2018년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 참고사항

- 장학금 수혜현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4월 1일 재학생 수는 2018년도 <4-마> 재학생 현황을, 10월 1일 재학생 수는 2018년 교육기본통계 하반기 조사의 재학생 수를 연계 활용할 예정임
- 학비감면 준수 여부는 대학 장표에 대학 부설 대학원의 내용이 통합되어 공시됨
- 한국장학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다-2. 학자금 대출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8년 2학기, 2019년 1학기 학자금 대출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년 7월(학자금대출 자료추출 시점 기준))

(: 명, 원)

기준연도	구분	학기	재학생 (인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대출 이용학생비율(%)	
				전체(등록금+생활비)		등록금(학비)		전체(등록금+생활비)		등록금(학비)		전체	등록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8	대학	2											
2019		1											
2018	대학원	2											
2019		1											
합계													

■ 검증사항

[재학생] : 2018년 2학기 재학생 수는 <12-다-1>의 2018년 2학기 재학생 수 합계와, 2019년 1학기 재학생 수는 <4-마>의 재학생 수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재학생] : 2018년 2학기(10월 1일), 2019년 1학기(4월 1일) 재학생 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과 금액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로 구분하여 입력

<2018년 2학기 대출자격요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대상 학제	, 대학원	대학						
신청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55세 이하 ※ 만 55세 이전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 59세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5세 이하 ※ 전문대 계약학과 중 채용조건형에 해당하는 대출자에 한하여 만 45세까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성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군 : 성적기준 없음 ■ 재학생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수), 성적 70/100점 이상(C 학점) - 대학원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적용 제외 ■ 특별추천 :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2회),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1회), 재학생 기등록자(1회) 가능, 정규학기 초과자(최대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군 : 성적기준 없음 ■ 재학생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수), 성적 70/100점 이상(C 학점) -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적용 제외 ■ 특별추천 :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2회),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1회), 재학생 기등록자(1회) 가능, 정규학기 초과자(최대 4회)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분위(구간)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분위(구간) 8분위(구간) 이내 ■ 다자녀(세자녀 이상)가구 소득분위(구간)에 관계없이 대출가능 						
신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관리정보 규제종인 경우 대출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수혜가능)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중 총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 대학원 : 6천만원 · 의학, 치의학, 한의학 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학기당 한도 : 등록금 또는 여학연수비를 합한 금액 ■ 생활비 연2백만원 (학기당 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소요액전액 (한도없음) ■ 생활비 연3백만원 (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구분</th> <th style="width: 50%;">최장대출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생</td> <td>20년(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td> </tr> <tr> <td>전문대학원생(경영 등)</td> <td>17년(최대 7년 거치, 10년 상환)</td> </tr> </tbody> </table>	구분	최장대출기간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생	20년(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17년(최대 7년 거치, 10년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연소득 1,856만원)을 초과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유예,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된 후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완료시 까지(유예기간+상환기간) ■ 65세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이외의 다른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구분	최장대출기간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생	20년(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17년(최대 7년 거치, 10년 상환)							

<2019년 1학기 대출자격요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대상 학제	, 대학원(대학 등급별 학자금대출 제한 적용)	대학(대학 등급별 학자금대출 제한 적용)
신청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55세 이하 ※ 만 55세 이전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 59세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5세 이하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지원
성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군 : 성적기준 없음 ■ 재학생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수), 성적 70/100점 이상(C학점) - 대학원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적용 제외 ■ 특별추천 :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2회),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1회), 재학생 기등록자(1회) 가능, 정규학기 초과자(최대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군 : 성적기준 없음 ■ 재학생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수), 성적 70/100점 이상(C학점) -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적용 제외 ■ 특별추천 :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2회),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1회), 재학생 기등록자(1회) 가능, 정규학기 초과자(최대 4회)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분위(구간)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분위(구간) 8분위(구간) 이내 ■ 다자녀(세자녀 이상)가구는 소득분위(구간)에 관계없이 대출가능
신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관리정보 규제종인 경우 대출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수혜가능)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 재학중 총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 대학원 : 6천만원 . 의학, 치의학, 한의학 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학기당 한도 : 등록금 또는 어학연수비를 합한 금액 ■ 생활비 연2백만원 (학기당 1백만원), 이용횟수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소요액전액 (한도없음) ■ 생활비 연3백만원 (학기당 150만원), 이용횟수 4회
대출기간	구분	최장대출기간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생	20년(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17년(최대 7년 거치, 10년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연소득 1,856만원)을 초과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 유예,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된 후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완료시까지(유예기간+상환기간) ■ 65세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이외의 다른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학자금대출이용학생비율(%) : (학자금대출 인원/재학생 수) × 100

■ 참고사항

- 학자금 대출 현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장학재단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라. 외국대학교 교류 현황

12-라-1. 외국대학교 교류 현황[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8학년도 외국대학교 학점교류,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의 교류 현황

【공시양식】 : 학교의 자체양식

【공시방법】 : PDF 파일 형태로 공시

■ 작성지침

【외국대학교 교류현황】 : 교류 프로그램, 교류대상 국가, 교류대상 학교명, 학점교류 현황 등 외국대학교 교류 현황

※ 공동학위과정생, 복수학위과정생의 교류 현황 작성 시에는 프로그램명, 학위과정(학사, 석사, 박사), 대학의 관여학과(전공 혹은 단과대학), 외국 국가명, 파트너 대학의 관여 학과(전공 혹은 단과대학), 프로그램 별도설치(stand-alone) 여부, 참여 학생 수, 사용 언어(한국대학, 외국 파트너 대학), 이수 학점 수(한국대학, 외국 파트너 대학)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프로그램별(공동학위과정, 복수학위과정 구분)로 작성

※ PDF 파일로는 실제로 학점교류 실적이 없어도 자매결연 현황 포함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8학년도 외국대학과 학점 교류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 기준일 : 2018학년도)

	학점교류 현황		파견인원 (자 대학교→타 대학교)	유치인원 (타 대학교→자 대학교)
	국가명	대학명		

■ 작성지침

【기준연도】 : 학생이 학점 교류를 실시한 연도

【학점교류현황】 : 외국대학과 학점 교류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와 대학명 입력

【파견인원 : 자 대학교→타 대학교】 : 타 대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한 대학의 학생 수

※ 타 대학교의 어학연수 과정이 자 대학교의 정규 학점으로 인정될 경우 포함하여 입력함

【유치인원 : 타 대학교→자 대학교】 : 해당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한 타 대학교 학생 수

○ 파견인원과 유치인원은 학점 교류시점(시작일 ~ 종료일) 기준으로 입력함

○ 교류 기간이 2개 학기에 걸쳐 진행된 경우 학기별 각각 포함

【예시1】 2018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교류 시 2018년도에 2명으로 집계

【예시2】 2018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류 시 2018년 1명, 2019년 1명으로 집계

※ 2019년도 현황은 2019년 8월 공시 예정

■ 참고사항

○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 10. 1., 2019. 4. 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4월

【공시내용】 : 2018년 대학(학부)의 사회봉사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공개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 기준일 : 2018. 3. 1 ~ 2019. 2. 28.)

(: 학점, 명)						
강좌명	학기	기간	학점	구분	수강학생 수	이수학생 수
	1	-		사회봉사교과목		
	2학기	-				
	3학기	-				
	4학기	-				
	계절학기(여름)	-				
	계절학기(겨울)	-				
	학기구분없음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사회봉사교과목 외 프로그램		

※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은 본 공시항목 대상에서 제외

■ 작성지침

【강좌명】 : 2018학년도에 개설된 강좌명

【학기】 : 사회봉사교과목의 경우 2018학년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여름(계절)학기, 겨울(계절)학기 중 선택하여 입력하고, 사회봉사교과목 외 프로그램의 경우 학기구분없음을 선택하여 입력

동일한 사회봉사교과목이 1학기, 2학기에 각각 개설되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1학기, 2학기 모두 입력

【기간】 : 사회봉사교과목 외 프로그램의 활동 기간(0000년 00월 ~ 0000년 00월)을 입력

【학점】 : 인정 학점 수(학점이 없는 경우 '0'으로 입력)

【구분】 : 사회봉사교과목과 사회봉사교과목 외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입력함

사회봉사교과목 정의 : 사회봉사교과목이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교과목

- 1) 조건 1(목표) :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기본자세 함양, 이웃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의식 함양,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리더 양성, 대학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의 네 가지 항목(사회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대학 모두 인식하고 실천)과 유사한 내용을 목표로 하는 교과목
- 2) 조건 2(필요조건) : 사회봉사교과목은 대학기관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명칭에 '봉사'가 포함되거나, 사회봉사가 과목의 주요 내용이어야 하며,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을 대학에서 정해야 함. 또한 교과목의 담당교수가 봉사이론 및 안전에 대한 강의를 하여야 하며, 정해진 준거를 가지고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함
- 3) 조건 3(제외조건) : 특정 학과의 전공과목은 아니어야 함. 여기서 특정 학과의 전공과목이라 함은 해당 전공학생들만 수강할 수 있고, 이를 수강하면 그 학과의 전공과목으로만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 4) 조건 4(예외조건) : 졸업요건으로 사회봉사참여가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한 학생의 경우 사회봉사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사회봉사교과목 외 프로그램 정의 : 사회봉사교과목 외 프로그램이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

- 1) 조건 1(목표) :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기본자세 함양, 이웃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의식 함양,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리더 양성, 대학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의 네 가지 항목(사회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대학 모두 인식하고 실천)과 유사한 내용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 2) 조건 2(필요조건) : 교과목 외 프로그램은 대학기관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을 대학에서 정해야 함

【수강학생 수】 : 해당 교과목을 신청하여 수강한 인원

【이수학생 수】 :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인원

※ 사회봉사교과목 외 프로그램의 수강학생 수와 이수학생 수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수강학생 수와 이수학생 수에 동일하게 입력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대학의 원격강좌 개설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은 작성 지침 참조)

(: 원)

기준연도	운영 학기	원격강좌 개설 현황												일반인 제공 여부	군·복무자 제공 여부	
		강좌명	학문분야	교과구분	학점	수강인원				과목당 수강료						협약기관명
						본교생	타교생	일반인	군·복무자	본교생	타교생	일반인	군·복무자			
	1															
	2															
	계절학기(여름)															
	계절학기(겨울)															

※ 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은 본 항목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작성지침

【자료기준일】 : 2018. 3. 1. ~ 2019. 2. 28.(2018학년도 1학기, 2학기 및 여름(계절)학기 및 겨울(계절)학기)

【대상 원격강좌 정의】 : 대학에서 개설된 정규 혹은 비교과 과목 중 최소한 한 학기동안 학점이 인정되는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강좌로 중간-기말 고사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원격 수업의 비중이 전체 수업 시수의 70%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강좌. 단, 학점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적표에 기재되는 강좌는 포함.

※ 원격수업의 학점 당 이수 시간은 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이며, 이 경우 1차시 당 콘텐츠 진행(재생) 시간이 1학점 기준 25분 이상인 강좌(토론, 프로젝트 기반 원격수업 등은 강의 콘텐츠의 순수 재생 시간이 25분 이하 가능)

※ 콘텐츠 진행 시간을 포함한 1차시 총 학습 시간은 50분 이상으로 구성된 강좌(원격수업의 학습 시간 및 이수 시간은 콘텐츠 재생 시간, 질의·응답 및 온라인 토론 시간 등을 종합한 개념임)

※ 한 학기 지속 강좌 범주 : 정규학기-15주, 계절학기-4주, 쿼터제-8주, 단 비정규 교과목은 한 학기 지속 여부와 무관

본교에서 본교 플랫폼을 통해 본교 학생들 및 외부인에게 유-무료(등록금에 포함)로 공개한 강좌

※ 본교에서 본교 학생들 및 외부인을 위하여 타 기관(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과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강좌

※ 타 대학에서 개발된 강좌를 본교 플랫폼에 탑재하여 운영하며 본교 학생들 및 외부인에게 공개한 강좌

※ OCU 또는 KCU와의 협약(회원)을 통해 OCU 또는 KCU에서 제공하는 강좌

※ 조사 대상 실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강좌가 수업의 보조 자료로 쓰인 경우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서 제공하는 강좌
- 비정규 교과목 중 학점이 부여되지 않고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는 강좌
- 본교에서 원격 강좌를 개설하였으나 수강 인원이 없는 경우

【학기】 : 2018학년 1, 2학기 및 여름(계절)학기 및 겨울(계절)학기

【학문분야】 :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

【교과 구분】 : 전공, 교양(일반선택 포함), 교직, 비교과

【학점】 : 인정 학점 수(학점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입력)

※ 강좌를 개설한 대학에서 지정한 학점 수 기입

【개설 강좌명】 : 2018학년 1, 2학기 및 여름(계절)학기 및 겨울(계절)학기 개설 강좌명

【수강인원 - 본교 재학생】 : 본교 재학생 중 해당 개설강좌에 수강 신청하고 수강한 인원 수

【수강인원 - 타교 재학생】 : 타교 재학생 중 해당 개설강좌에 수강 신청하고 수강한 인원 수

【수강인원 - 일반인】 : 일반인 중에서 해당 개설강좌에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한 인원 수(본교생, 타교생 및 군복무 휴학생은 제외)

【수강인원 - 군복무자】 : 군복무 휴학생 중 해당 개설강좌에 수강 신청하고 수강한 인원 수

【과목당 수강료】 : 학점취득 목적으로 수강하기 위하여 학생 1인이 과목당 지불한 금액(단위 : 원)

※ 등록금 이외의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0원으로 입력

※ 수강료의 경우 “시스템 사용료” 혹은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해당되지 않음

※ 수강료가 책정되어 있다면, 수강인원이 0명이더라도 수강료 입력

【협약기관명】 : 학점 교류 가능한 대학명 모두 기입

【일반인 제공 여부】 : 일반인들에게 원격강좌를 공개하는지 여부

【군 복무자 제공 여부】 : 군 복무 휴학생에게 원격 강좌를 공개하는지 여부

참고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11.28.>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②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참고사항

대학의 원격 강좌 개설 현황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고등교육 이러닝 현황조사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조사 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2019년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 현황

공시양식 : 학교의 자체 양식(작성자 및 확인자 명시, 자료기준일 : 2019. 4. 1. 기준)

공시방법 : PDF 파일 형태로 공시

■ 작성지침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 현황] 다음 양식을 참조하여 학교 자체 양식으로 작성

<p>교원업적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 실적 반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 특허 등록, 소프트웨어, 산학협력공동연구, 기술경영자문,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실적의 교원업적평가 반영 여부, 반영 배점 및 SCI급 논문 실적 대비 산학협력 실적의 반영 정도 등 서술 / 관련규정명, 관련조항 명기) ○ 산학협력 영역 별도 설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영역과 별도로 산학협력 영역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 서술 / 관련규정명, 관련조항 명기) ○ 기타 교원업적평가시 산학협력 실적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교원업적평가시 산학협력 실적 고려사항 서술 / 관련규정명, 관련조항 명기) □ 재임용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 실적의 재임용승진평가시 활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 특허 등록, 소프트웨어, 산학협력공동연구, 기술경영자문,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실적의 재임용승진평가시 활용 여부, 활용방법 등 서술 / 관련규정명, 관련조항 명기) ○ 산학협력 실적물의 연구실적물 최소기준 대체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임용승진시 요구되는 연구실적물 최소기준을 산학협력 실적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대체 가능 비율 등 서술 / 관련규정명, 관련조항 명기) ○ 기타 재임용승진평가시 산학협력 실적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재임용승진평가시 산학협력 실적 고려사항 서술 / 관련규정명, 관련조항 명기) <p><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 현황></p> <p>예시</p>

	산학협력영역 별도 설정 여부	교수업적평가				산학협력 교육 및 창업 부문				산업체연계 부문		
		기술이전 (천만원)	해외특허 등록(건)	국내특허 등록(건)	산학협력 공동연구 (천만원)	소프트웨어 (건)	현장실습 지도 (학기)	교원창업 (건)	창업교육 (과목)	산업체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건)	기술경영자문 (회)	산업체 파견 (회)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전 체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관련 규정] 교원업적평가 규정, 재임용·승진 규정을 포함한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와 관련된 규정

※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시행세칙, 재임용·승진 규정은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관련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공시

※ 단과대학별, 계열별, 학과별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내규 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별도 PDF 파일로 공시

■ 참고사항

-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2019년 학과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5년 이내 신규임용 전임교원은 2014. 4. 2. ~ 2019. 4. 1.,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은 2019. 4. 1. 기준)

	단과대학	학과	5년 이내 신규임용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경력없음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채용형 전임	지정형 전임	비전임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합계									

■ 작성지침

○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은’ 최근 5년 이내 신규임용된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산학협력중점교수’는 2019. 4. 1. 기준으로 전체 현황을 작성

※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중 최근 5년 이내 신규 임용되었으나, 2019. 4. 1. 기준 현재 퇴직 교원은 제외

【학과】 : 산업체 경력이 있는 전임교원이 소속된 학과를 가리키며, 대학원 소속 교원의 경우에는 “○○대학원 ○○학과”로 기입

※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은 ‘기타(소속학과없음)’으로 분류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 산업체 경력별로 전임교원 수를 구분하여 입력

【산업체 경력 범위】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함

참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규정 제4조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삭 제>
3.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4. 다음 각 목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5~7. <삭 제>
8.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9.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
10.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 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1.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1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13.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
14.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으로 근무한 경력
15.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16.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17.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18.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함)

- ①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산업체 경력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의미함)
- ②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되거나 지정된 자
 -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무, ㉡ 임용 또는 지정 방식, ㉢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교수업적 평가 및 재임용·승진 심사방법 등을 포함
 -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임용하거나 기존 전임교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기존 전임교원 중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 10년 미만이라도 지정 가능
- ③ 책임강의시수를 30% 이상 감면받은 자

-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책임강의시수에서 30% 이상을 감면(비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를 기준으로 판단)

※ 인정기준 마련 이전('11.9.7)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하라고 하더라도 학칙, 정관 또는 채용공고문을 근거로 산학협력을 중점 추진하는 교원으로 임용되었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교수업적평가 및 재임용·승진 심사를 받는 자라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

【채용형 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 최초 임용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전임교원 형태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수를 입력

【지정형 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 최초 임용시에는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된 전임교원 수를 입력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 최초 임용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비전임교원 형태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수를 입력

※ 비전임교원으로 임용 시에는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

■ 참고사항

-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12-자-1. 산학협력단 고용주체별 인력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2019년 산학협력단 인력 현황 - 고용주체별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19. 4. 1.)

(: 명)

기준연도	구분		산학협력단 근속연수				합계
			2년 이하	2년 ~ 4년 이하	4년 ~ 6년 이하	6년 초과	
	겸직교원						
	대학 소속직원	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기타					
		소계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	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기타					
		소계					
	합계						

■ 검증사항

합계는 12-자-2.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함

■ 작성지침

【작성기준】 : 본교와 분교가 나뉜 경우는 본교에서 취합하여 작성하되, 산학협력단을 본교와 별도로 운영하는 분교는 별도 작성

※ 국책사업단 또는 지방비사업단(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R&D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기간 설치·운영되는 사업단) 소속의 연구원 및 직원은 제외

【겸직교원】 : 산학협력단에 겸직으로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산학협력단장, 부서장,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대학 소속직원】 : 대학 총장 명의로 임명된 직원(겸직교원 제외) 중 산학협력단 전담인력으로 발령받은 직원

※ 단, 산학협력단 파견직원 및 겸직직원 중 연구처 소속의 직원은 포함

【산학협력단 자체임용직원】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임명되어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직원(겸직교원 제외)

【정규직】 :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발령을 받은 직원으로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

【계약직】 :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발령을 받은 직원으로 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원

※ 무기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고 임금이나 복지수준은 정규직과 같거나 그보다 못한 수준에 유지되고 있는 직원

※ 기간제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서 계약 기간이 2년 이하인 직원, 단, 총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간제계약직으로 입력

【기타】 : 산학협력단 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조교 등의 직원

【산학협력단 근속연수】 : 산학협력단에 발령받아(또는 신규임용되어) 조사기준일 기준 시점에 실 근무기간을 근무한 기간

※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의 근속연수계산은 전환된 시점부터 기산함
 예시 기간제 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1년, 총 근속연수는 무기계약직 1년으로 산정

■ 참고사항

- 산학협력단 고용주체별 인력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자-2.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2019년 산학협력단 인력 현황 - 담당업무별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19. 4. 1.)

	연구기획	연구관리	산업체 연계			기타	합계
			산학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		
검직교원							
대학소속직원	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기타						
	소계						
산학협력단 자체임용직원	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기타						
	소계						
합계							

■ 검증사항

○ 합계는 12-자-1. 산학협력단 고용주체별 인력 현황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함

■ 작성지침

작성기준

- 본교와 분교가 나뉜 경우는 본교에서 취합하여 작성하되, 산학협력단을 본교와 별도로 운영하는 분교는 별도 작성
 - ※ 국책사업단 또는 지방비사업단(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R&D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기간 설치·운영되는 사업단) 소속의 연구원 및 직원은 제외
- 소수 첫째자리까지 실질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원수를 배정
 - ※ 1명이 연구기획 및 연구관리 업무를 각각 50%씩 하고 있으면, 각각 0.5로 산정
- 산학협력단 인력 구분은 <12-자-1> 고용주체별 인력 현황의 인력 구분과 동일함

【연구기획】 : 산학협력연구에 관한 기획, 산학협력연구의 진흥, 각종 통계 및 성과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

【연구관리】 : 연구비/연구과제 관리, 교원 연구 수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 산학협력단 내 연구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산업체연계】 : 산학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 등 산학협력단 내 산업체 연계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자

【산학연계】 : 산업자문(기술자문, 기업컨설팅), 교육운영(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현장실습지원 등), 설비자산(연구 및 실험·실습시설·장비)운용을 수행하는 직원

【기술이전사업화】 : 특허관리(출원, 등록, 유지 관련 행정관리 업무), 기술정보 관리, 연구자 상담, 기업상담(지재권 협상·계약 기술마케팅), 기술지주회사 및 학교기업 설립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학생, 기술지주회사 및 학교기업 소속 직원 제외)

【창업보육】 : 창업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기타】 :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산학협력단 직원(국책사업단 또는 지방비사업단 소속의 연구원 및 직원은 제외)

■ 참고사항

-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2018년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장비 운영 현황은 2019. 2. 28., 설비자산사용료는 2018. 3. 1. ~ 2019. 2. 28.)

	모델명	장비위치	제작사(공급사)	구입년월(YYYYMM)	구입가격(원)	설비자산사용료 수익(원)				
						합계	대학회계	교비회계	산단회계	기타
				.						

■ 작성지침

【작성기준】 : 대학이 보유한 공동활용 연구장비에 한해 기재함

※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정의 : 대외 개방 및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용장비 집적센터(대학 산학협력단 부속시설, 공동실험실습관, RIC(지역기술혁신센터), TP(테크노파크) 등)에 구축되어 타 연구자 및 기관에게 활용이 허용된 연구장비로,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인 장비를 의미함(교수 개인연구실에 구축되어 있는 연구장비는 미포함)

【장비명】 : 한글 장비명을 입력하고 부득이한 경우 영문 장비명을 입력

【모델명】 : 장비 모델명 입력

【장비위치】 : 공동실험실습관 등 장비가 설치된 공간을 입력

【제작사(공급사)】 : 장비를 제작한 제작사 또는 공급사를 입력

【구입년월】 : 장비 도입년월을 기재(YYYYMM)

【구입가격】 : 장비 구입가격을 원단위로 기재(달리는 구입당시 기준으로 한화로 환산)

【설비자산사용료 수익】 :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설비 임대 등)을 통해 거둔 수익을 기재하되 장비의 소관별 회계 비목 중 '설비자산 사용료' 비목으로 회계처리한 내역의 합계를 기재
 예시 국립대학의 학교장비는 대학회계, 사립대학의 학교장비는 교비회계, 산학협력단 소유의 장비는 산단회계 등)

※ 설비자산사용료가 없더라도 포함하여 입력해야 하며, 설비자산사용료 수익은 0으로 입력

■ 참고사항

-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입니다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작성지침

현장실습] :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 기업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학점이 부여되는 과정으로, 전일제(1일 6시간 이상)로 4주 연속 운영하는 실습학기제를 공시 대상으로 함
 - ※ 대학은 현장실습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습기간 중 교내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집합교육시간은 실습실적으로 불인정
 - ※ 현장실습 기간 중 법정 공휴일이 있거나, 참정권 행사일이 있을 경우 해당일을 현장실습 실적(6시간)으로 인정. 다만, 참정권 행사일은 가급적 실습기간 이전 또는 이후로 조정하여 실습에 지장 없도록 조치 필요
 - ※ 2019년(2019년 정보공시)부터는 학생의 실제 출석일 기준으로 집계하며,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에서 제외함
 - 「대학생 현장실습수업 등 운영규정」 제5조의 ‘수업’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에 대해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현장실습생-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해야 함
 - ※ 수업요건
 - ① 현장실습 수업계획(교육과정 편성, 교과목 개설 등)
 - ② 현장실습 수강신청 및 등록절차
 - ③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및 현장 지도 계획(실습기관 현장 교육담당자 지정 및 수업 계획)
 - ④ 지도(담당)교수 현장 방문 지도 계획
 - ⑤ 평가 방식, 학점 부여 근거 및 기준
 - ⑥ 기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학과별 정원 내·외 재학생 수는 필요에 따라 대학정보공시 ‘4-마. 재적학생 현황’의 재학생 수 활용(현장실습 운영현황 항목에서는 공시하지 않음)
- 【학점 수] :** 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해 부여하는 학점수 입력(복수과목 개설시 학과별 최소 학점수와 최대 학점수만 입력)
- ※ 소계, 합계는 학기별, 당해연도 학점 수를 합산하지 않고 해당학기, 해당연도 최소학점과 최대학점을 작성
- 【이수 학생 수] :** 해당 대학 정원내·외 학생 중 2018학년도에 현장실습을 이수하여 학점을 부여받은 학생 수를 입력
- 학칙으로 정한 현장실습생 대상 학년 및 요건에 부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
 - ※ 동일 학과에 주/야간 과정이 구분되어 운영되는 경우 구분하여 작성
 - 정규학위과정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방문학생, 그 외 기타)은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에서 제외
 -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
 - ※ 자격취득과 관련이 없는 현장실습은 포함하되 해당 학생의 원소속 학과 실적으로 입력
 -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시행 기능사·미용사는 현장실습이 자격 취득 요건이 아니므로 공시 대상에 포함됨

참고 : 제외대상 현장실습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현장실습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실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인턴
- 의사, 간호사, 조종사, 해기사 등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 「한국보건직업인국가시험원」,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등

학과에서 개설한 현장실습 외에 대학 내 취업지원 부서 및 교무처 등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해외 현장실습 포함)도 상기 현장실습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으로 인정

※ 대학의 취업지원센터, 학교기업 등에서 개설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현장실습이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학생의 원소속 학과 실적으로 입력

※ 현장실습 제외대상 학과에 소속한 학생이 본인의 학과에서 개설한 현장실습 과목 이외에 대학 내 취업지원 부서 및 교무처 등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해외 현장실습 포함. 단, 현장실습의 성격이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일 경우 제외)도 상기 현장실습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으로 인정

※ 한 학생이 여러 학기에 걸쳐 연속적으로 또는 복수의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해당 학기별로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 학기별로 실적 인정 가능하나, 1개 학기 기준 1회의 실적만 인정함

※ 현장실습을 개설한 학과의 학생은 아니나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타 학과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한 경우, 해당 학생의 원소속 학과 실적으로 입력

※ 학과에서 개설하여 Pass/Fail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현장실습도 실적으로 인정

○ 실습기간과 학점인정(부여) 시점이 다른 경우, 실습기간을 기준으로 실적 입력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현장실습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 아닌 학교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실습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학점으로 인정(부여)하여서는 안 되며 실적으로도 제출하여서는 안 됨

【보험 가입학생 수】 : 현장실습 이수 학생 중 보험에 가입한 학생 수를 입력

○ 대학 또는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 이수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산재, 상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 보험 적용 기간이 현장실습 이수 학생이 수행하는 실습 기간 전체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인정

【실습기관 수】 : 국내외 소재 연구기관, 국가, 지자체 및 대중소 기업 등 현장실습을 실시한 기관 수를 입력

○ 「대학생 현장실습수업 등 운영규정」 제15조 1항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학교에 제출한 기업

○ 「대학생 현장실습수업 등 운영규정」 제5조의 수업요건에 대해 실습 시작 전에 학교와 현장실습생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문서(협약서, 공문)가 아닌 이메일 등을 통한 개인 간의 합의는 쌍방 간의 합의에 대한 근거로 불인정

※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학교는 학기별로 다음의 증빙서류를 학교에 구비·보관하여야 함

- ① 실습기관 발굴, 모집 등과 관련한 공문 및 공고문 등의 공적문서
- ②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
- ③ 현장실습 협약서
- ④ 실습기관에서 작성한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출석부 및 평가 서류
- ⑤ 참여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등 학점인정 관련 제반 서류
- ⑥ 현장실습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

【실습지원비 미수령 학생 수】 : 현장실습 이수 학생 중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은 학생 수

실습지원비 수령 학생 수 : 실습기관으로부터 실습지원비를 수령한 학생 수를 입력

○ 실습기관에서 학생들에게 금전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을 실습지원비라 하며,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 중 실습기관으로부터 실습지원비를 수령한 금액(4주 기준)별로 학생 수 입력

※ 실습기관(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금전에 한함(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 현물만을 제공받는 경우는 입력하지 않음)

※ 대학에서 국고 및 교비로 학생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등의 실습지원비는 제외

※ 실습지원비 미수령 학생 수와 수령 학생 수 합계는 이수 학생 수와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현장실습 운영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카-2. 캡스톤 디자인 운영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2018학년도 학과별, 학기별 캡스톤 디자인 운영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 3. 1. ~ 2019. 2. 28.)

연도	단과 대학	학과 (전공)	계열	구분	교과목명	학기	학점 수	이수 학생 수(명)					지원금 수령 학생 수(명)	지원금 수령 총 금액(원)	
								해당학과	타 학과 계열별					시제(작)품 제작비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1 or 2									
						1 or 2									
						1 or 2									
						1 or 2									

■ 작성지침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의 정의】 : ① 1~2학년동안 배운 전공교과목 및 이론 등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과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정규교과목으로, ② 교과목명에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또는 종합설계”를 부기하여 캡스톤 디자인 여부가 명확하고, ③ 시제(작)품 제작 등을 위한 실험·실습비가 지급되며, ④ 팀 과제로 1학기 이상 운영되는 경우로, 캡스톤 디자인의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함

→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으로 인정함

【학과(전공)】 :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 개설된 학과(전공)

※ 특정학과에서 개설되지 않는 경우 기타(소속학과없음)에 입력

【계열】 : 해당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 개설된 학과의 계열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계열 구분(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

	포함되는 소계열	비고
·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 등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교과목명 : 개설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명을 기입(부기명이 있을 경우 괄호 내에 명기)

【학점 수】 :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별로 부여하는 학점 수 입력

【해당학과 이수 학생 수】 : 캡스톤 디자인을 이수하여 학점을 부여받은 학생 수 중 해당 과목이 개설된 학과 소속 학생 수를 입력

【타 학과 계열별 이수 학생 수】 : 캡스톤 디자인을 이수하여 학점을 부여받은 학생 수 중 해당 과목이 개설된 타 학과 소속 학생 수를 계열별로 나누어 입력

※ 여름 계절학기는 1학기에, 겨울 계절학기는 2학기에 포함하여 입력

※ 한 학생이 복수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 중복 인정 가능

※ 융합형(다학제) 캡스톤 디자인 과목은 기타(소속학과없음)에 입력하고, 이수 학생 수는 **【타 학과 계열별 이수 학생 수】** 에 입력

참고

교과목 이수 학생의 범위

- 1학기 : 2018. 4. 1. 기준 재학 중인 4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
- 2학기 : 2018. 10. 1. 기준 재학 중인 4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

【지원금 수령 학생 수】 : 이수 학생 수 중 시제(작)품 제작을 위해 지원금을 받은 학생의 수

【지원금 수령 총 금액 - 시제(작)품 제작비】 : 시제(작)품 제작을 위한 실험/실습비

【지원금 수령 총 금액 -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행사 개최 비용 등 시제(작)품 제작 외 교육 지원 비용

■ 참고사항

- 캡스톤 디자인 운영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제출된 자료를 활용할 예정임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매출액 : 2018년 회계연도 학교기업의 매출액(학교기업 회계결산 기준)을 입력

연간투자액 : 교비, 기타로 구분하여 입력하되 교비회계에서 학교기업에 투자한 금액, 기타는 산학협력단 또는 지자체, 외부 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입력

자산규모 : 학교기업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규모를 입력

■ 참고사항

- 학교기업 운영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카-4.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12-카-4-(1)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2019학년도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 4. 1.)

학위	계약학과 유형	계열	모체학과 명칭	모체학과 입학 정원	계약학과 명칭	신/편입과정 구분	계약학과 정원	입학생 수	재학생 수	설치 권역	외부학습장 이용 여부	계약 형태	경비부담 현황				경비지원 외부기관		채용조건형 졸업자	채용조건형 취업자		산업체 수	
													산업체 부담률	외부기관 경비 지원을	대학 자체 감면을	학생 경비 부담률	기관명	사업명		계약 산업체	타 산업체		

■ 작성지침

[입력 대상] : 재적학생이 존재하는 계약학과(대상 산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재적학생이 존재하더라도 입력하지 않음)

[취득학위] : 당해 대학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계약학과의 학위과정으로 전문학사, 학사,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학위과정으로 구분

※ 학과명이 동일해도 학위과정이 다를 경우 별도의 학과이므로 학위과정별로 별도 입력

[계약학과 유형] :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

- 채용조건형 :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재교육형 :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계열]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계열 구분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사회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공학계열	공학 등	의학계열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자연과학계열	이학해양농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통합학과 운영으로 계열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최초 전공 또는 계열구분 연도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류

【모체학과 명칭】 : 계약학과의 주된 교육을 운영하는 일반학과로 계약학과 설치의 모체가 된 학과 명칭(다수 학과가 연관된 경우 교육과정 구성 및 수업운영에 주로 참여하는 학과를 모체학과로 입력)

【모체학과 입학정원】 : 당해연도 모체학과의 입학정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 시 당해학년도 입학생 수를 입력(모체학과의 학생 신규모집이 중단된 경우 모집중지 전 입학정원으로 입력)

【계약학과 명칭】 : 당해 대학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계약학과의 학과 명칭

【신/편입 과정 구분】 : 당해 계약학과가 신입생 대상 과정인지 편입생 대상 과정인지 명시, 학칙에 신입정원과 편입정원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을 경우 각각 입력(신입생 및 편입생이 모두 대상인 경우 한 줄로 입력하지 않고 각각 두 줄로 나눠서 입력함)

※ 학칙에 편입정원 명시 없이 단순히 계약학과 학생의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생을 뽑는 경우 신입과정으로 입력

【계약학과 정원】 :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계약학과의 학과별 정원

【입학생 수】 : 당해연도 전기, 전년도 후기 계약학과에 실제 입학한 학생 수

【재학생 수】 : 2019. 4. 1. 현재 당해 대학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과별 재학생 수

【설치 권역】 : 계약학과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권역(광역행정구역명) 표시

※ 예시 서울, 인천, 부산, 광주, 경기, 경남, 전남 등

【외부학습장 이용여부】 : 대학 소유의 교사가 아닌 산업체가 제공한 시설에서 계약학과 수업을 진행하는 여부를 'O', 'X'로 표시

【계약형태】 : 계약형태는 단독계약, 공동계약, 3자계약으로 구분

- 단독계약 : 산업체 등이 단독으로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 공동계약 : 여러 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 3자계약 : 사업주 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해당 산업체, 대학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 하나의 계약학과에 여러 개의 계약형태가 중복되는 경우 공동계약으로 간주하여 입력, 계약형태별로 별도 입력 금지

【산업체 경비 부담률】 :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순수하게 산업체가 부담하는 비율

【외부기관 경비 지원율】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 등)이 특정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 등의 지원금이 당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차지하는 비율

【대학 자체 감면율】 : 계약학과와 산업체 의무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중 대학이 자체적으로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하여 학생 부담금을 일괄적으로 감면한 비율

※ 대학 자체 일괄적 감면 외에 학생이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수혜한 타 장학금 등 제외

【학생 경비 부담률】 :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학생이 부담한 비율

※ 산업체 부담률+외부기관 지원율+대학 자체 감면율+학생부담률=100%가 되어야 함

경비지원 외부기관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명과 사업명 명시

※ 예시 중소기업청-중소기업계약학과, 고용노동부-일학습병행기업, ○○도-○○○사업

【채용조건형 졸업자】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인 경우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발생한 졸업자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해당 없음”으로 입력

【채용조건형 취업자 - 계약 산업체】 : **【채용조건형 졸업자】** 중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취업을 한 인원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해당 없음”으로 입력

【채용조건형 취업자 - 타 산업체】 : **【채용조건형 졸업자】** 중 계약을 맺지 않은 타 산업체에 취업을 한 인원(대학원 등 진학 미포함)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해당 없음”으로 입력

【산업체수】 : 당해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산업체의 총수

■ 참고사항

-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카-4-(2) 주문식 교육과정 설치 운영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2018학년도 주문식 교육과정 설치 운영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 3. 1. ~ 2019. 2. 28.)

계열	주문식 교육과정명	운영유형	채용유형	참여학과	참여학생수	약정인원	산업체 수	주문식 교육과정 졸업자	취업자		등록금 부담 현황				경비지원 외부기관		
									약정 산업체	타 산업체	산업체 부담률	외부기관 지원률	대학 자체 감면율	학생 등록금 부담률	기관명	사업명	

■ 작성지침

【입력 대상】 : 재적학생이 존재하는 주문식 교육과정

【학위과정】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선택

계열】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계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비고
·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어학문화사회 및 신학 등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 등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주문식 교육과정명】 : 운영중인 주문식 교육과정의 정식명칭 입력(약칭이나, 영문약어 사용 금지)

【운영 유형】 :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형 입력

- 학점인정 : 산업체와 협약하여 1과목 이상의 교육과정(학점인정)을 개편(개설) 하고 채용을 약정, 우대 하는 경우
- 학점미인정 : 별도 교육과정(학점인정) 개편 없이 채용을 약정, 우대하는 경우(학점과 관련 없는 맞춤형 프로그램(맞춤형 코스), 방학 중 인턴십 실시 등)

채용유형 : '채용인원 약정' 및 '채용시 우대' 중 선택

- 채용인원 약정 : 대학이 기업과 협약서(MOU 등)에 채용 예정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 채용 시 우대 : 대학과 기업이 협약서(MOU 등)에서 해당과정 이수자의 채용을 우대하기로 약정한 경우나 협약서 등에 채용인원을 확정하지 않고 "00명" 등 미확정 인원으로 협약한 경우

참여학과 : 해당 교육과정에 참여중인 학과, 전공을 표시

- 학과명은 학칙에 따라 구분되는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학과, 학부, 전공 등)

참여 학생 수 : 해당학년도에 운영 중인 주문식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중인 재학생 수

- ※ 중복으로 참여한 학생은 대학 자체 판단하여 하나의 과정에만 인원 수 입력(예시 참여시간이 많은 과정 등)

약정인원 : 협약서(MOU 등) 에서 채용을 약정한 인원 명시

- 인원 약정 없이 단순 채용만 우대하는 경우 "채용 시 우대"로 표시
- 채용을 약정했으나 "00명" 등으로 인원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도 "채용 시 우대"로 표시

산업체 수 : 당해 주문식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체의 총수

주문식 교육과정 졸업자 : 주문식 교육과정 참여 학생 중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발생한 졸업자

- ※ 중복으로 참여한 학생은 대학 자체 판단하여 하나의 과정에만 인원 수 입력(예시 참여시간이 많은 과정 등)

취업자 - 약정 산업체 : **주문식 교육과정 졸업자** 중 약정을 맺은 산업체에 취업을 한 인원

취업자 - 타 산업체 : **주문식 교육과정 졸업자** 중 계약을 맺지 않은 타 산업체에 취업을 한 인원(대학원 등 진학 미포함)

산업체 등록금 부담률 : 주문식 교육과정 등록금 중 산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율

외부기관 등록금 지원율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 등)이 각종 사업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하는 비율

대학 자체 감면율 : 대학이 자체적으로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하여 학생 부담금을 일괄적으로 감면한 비율

- ※ 대학 자체 일괄적 감면 외에 학생이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수혜한 타 장학금 등 제외

학생 등록금 부담률 : 등록금 중 학생이 부담한 비율

- ※ 산업체 부담률+외부기관 지원율+대학자체 감면율+학생부담률=100%가 되어야 함

경비지원 외부기관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주문식교육과정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명 명시

- ※ 예시 교육부, 미래부 등

경비지원 외부사업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주문식교육과정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명 명시

- ※ 예시 LINC, CK, ○○사업 등

■ 참고사항

- 주문식 교육과정 설치 운영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2018년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 1. 1. ~ 2018. 12. 31.)

(: 건, 원)

기준연도	건수	수입료

■ 작성지침

【작성기준】 :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에 한함

※ 산학협력단이 본·분교에 별도 존재하는 경우별도 입력, 본교에만 존재하는 경우 본교에서 취함

【기술이전】 : 기술이전 계약서 체결을 근거로 작성함.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매매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허락)한 경우에 한함

※ MTA(물질이전계약)도 포함하여 입력하되, 수입료는 수취한 실 수입료를 기준으로 입력

※ 제외대상 : 기술자문(컨설팅, 기술지도 포함), 산업체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기술의 이전은 제외함

【건수】 : 조사연도(2018. 1. 1.~ 2018. 12. 31.)에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서를 근거로 한 기술이전 건수를 말함. 기술료 입금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1개의 계약서 내에 다수의 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도 1건으로 봄

【수입료】 :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근거로 조사연도(2018. 1. 1.~ 2018. 12. 31.)에 수취한 실수입료를 말하며, 계약을 체결한 연도와는 상관없이 조사연도에 실제적으로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입력하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

※ 계약연도와 입금연도가 다를 경우, 건수는 계약일 기준으로, 수입료는 입금일 기준으로 함

예시 기술이전 계약은 2017년도에 이뤄지고, 이에 따른 수입료는 2018년도에 입금된 경우, 건수는 2017년도로 귀속되고 수입료는 2018년도로 귀속됨

○ 수입료는 현금 입금만을 대상으로 함

※ 어음, 주식, 현물 등은 현금으로 전환되어 조사연도에 입금된 금액에 한함

■ 참고사항

-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입니다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2018년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 1. 1. ~ 2018. 12. 31.)

(: 건)

기준연도	국내특허		해외특허	
	출원	등록	출원	등록

■ 작성지침

【작성기준】

- 학교법인이나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및 등록된 건에 한함(개인 명의로는 제외함)
- 산학협력단이 본·분교에 별도 존재하는 경우별도 입력, 본교에만 존재하는 경우 본교에서 취합
- 출원 및 등록된 이후에 거절, 양도, 이전(매매), 포기 등의 경우에도 일단 대학명의 특허가 출원되거나 등록이 된 경우 모두 포함

【국내특허】 : 국내 특허 건수는 특허청이 제공한 정보의 출원일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조사연도(2018. 1. 1~2018. 12. 31)에 등록 및 출원된 건을 산출

※ 발명특허가 아닌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은 입력 대상이 아님

※ 산업재산권 번호의 앞 두 자리는 권리 유형을 나타내며, ‘10’은 ‘특허’, ‘20’은 ‘실용신안’, ‘30’은 ‘디자인’, ‘40 ~ 45’는 ‘상표’를 각각 의미함

【해외특허】

- 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는 개별 국가건수를 기준으로 산출
 - ※ PCT 출원의 경우, 개별 국가의 출원 및 등록 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만 개별 국가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나머지는 1건으로 함
- 동일 기술이 다수의 국가로 출원등록된 경우, 출원등록된 번호를 기준으로 번호 1개당 특허 1건으로 산출

예시 2017년에 PCT 출원(번호 : PCTKR2017001781) 하였고, 동일 기술이 2018년에 중국으로 출원(번호 : 201780023951)되었다면, 출원번호상에 표현된 연도와는 상관 없이 실제 출원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2017년에 1건, 2018년에 1건으로 산출

출원 : 특허가 출원된 이후에 거절되었거나 취하, 공개된 건이라도 일단 출원이 되었다면 모두 포함함

등록 : 특허가 출원된 이후에 실제 등록된 것만 포함

■ 참고사항

-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12-하-1. 교원·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12-하-1-(1)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대학의 교원창업 현황 및 교원 창업규정 등 교원창업 지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 1. 1. ~ 2018. 12. 31., 교원 창업규정은 2019. 4. 1. 기준)

창업자 수	현황				교원창업 지원 현황					
	창업기업 수		창업기업 고용인원 수	창업기업 매출액(원)	창업기업 자본금(원)	교원 휴겸직 승인 현황	교원 창업규정			
	교내	교외					휴직 최초 승인기간(개월)	휴직 연장 승인기간(개월)	겸직 최초 승인기간(개월)	겸직 연장 승인기간(개월)

■ 작성지침

【창업자 수】 : 창업을 위해 휴겸직 승인을 받은 교원 중 2018. 1. 1. ~ 2018. 12. 31. 동안 창업한 교원의 수(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창업 교원 포함)

【창업기업 수】 : 【창업자 수】의 창업자가 2018. 1. 1. ~ 2018. 12. 31. 동안 설립한 기업 수. 교내는 학교의 시설에 주소지(사업자등록증 기준)를 둔 기업수를 기재

【창업기업 고용인원 수】 : 【창업기업 수】의 창업기업에 고용된 종업원 수

【창업기업 매출액】 : 【창업기업 수】의 창업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창업기업 자본금】 : 창업기업의 자본금 총액을 창업일자 기준으로 작성

【교원 휴겸직 승인 현황】 : 창업을 위해 2018. 1. 1. ~ 2018. 12. 31. 동안 휴겸직 승인을 받은 교원 수

【교원 창업규정】 : 해당 대학에서 규정한 교원 창업 휴겸직의 세부사항

■ 참고사항

-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입니다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하-1-(2) 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학생창업 현황 및 공간, 예산, 인력 등 학생창업 지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학생창업 현황은 2018. 1. 1. ~ 2018. 12. 31., 학생창업 지원 현황 중 전용공간과 창업 전담인력은 2019. 4. 1. 기준, 학생창업 지원 현황 중 지원액은 2018년 회계연도 예산 기준)

현황					학생창업 지원 현황					
창업자 수	창업기업 수		창업기업 고용인원 수	창업기업 매출액(원)	창업기업 자본금(원)	전용공간(㎡)	지원액(원)		창업 전담인력	
	교내	교외					교비	정부지원	교원 수	직원 수

■ 작성지침

【창업자 수】 : 2018. 4. 1. 기준 재적학생 및 2018년 2월 및 2017년 8월 졸업자 중 2018. 1. 1. ~ 2018. 12. 31. 동안 창업한 학생의 수(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창업자 포함)

【창업기업 수】 : 【창업자 수】의 창업자가 해당 기간 동안 창업한 기업 수. 교내는 학교의 시설에 주소지(사업자등록증 기준)를 둔 기업수를 기재

【창업기업 고용인원 수】 : 【창업기업 수】의 창업기업에 소속된 종업원 수

【창업기업 매출액】 : 【창업기업 수】의 창업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창업기업 자본금】 : 창업자본(창업자 개인의 자체조달 자기 자본금)과 학교지원, 기타지원(엔젤펀드 등)으로 구분되는 창업기업의 자본금 총액

【전용공간】 : 학생창업을 위한 창업동아리방, 예비창업전용공간, 학생창업기업공간(실험실 내 창업은 제외)을 위해 대학에서 지원·제공한 면적(창업자가 대학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면적은 제외)

- 창업동아리방 : 대학에 등록을 하고 지도교수가 있으면서 전용공간 또는 대학의 예산지원을 받는 동아리에 제공된 공간
- 예비창업 전용공간 : 학생들이 창업관련 아이디어 공유 및 실험 등을 위해 일과 중에 창업준비 학생에게 제공된 전용공간
- 학생창업 기업공간 : 창업한 학생들을 위해 제공된 공간(창업보육센터 등)

【지원액】 : (2018년 회계연도 예산 기준) 학생의 창업동아리 운영비, 학생창업기업 준비금, 창업강좌 운영, 워크숍 등 대학에서 지원한 창업관련 지원액

- 창업동아리 : 학생의 창업동아리 운영을 위해 대학에서 지원한 금액

- : 학생이 기업 창업을 위해 필요한 창업준비금 등 대학에서 지원한 금액
- 기타 학생창업지원 : 창업강좌 운영, 워크숍, 멘토링, 경진대회 운영 등 대학에서 지원한 금액

【전담인력】

- 교원 수 : 전임교원 중 창업교육 및 지원을 전담(담당업무 중 50% 이상)하는 인력의 수(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별도의 창업교육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창업교육지원 포함)
- 직원 수 : 대학의 직원 중 창업교육 및 지원을 전담(담당업무 중 50% 이상)하는 인력의 수(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별도의 창업교육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창업교육지원 포함)

■ 참고사항

- 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하-2. 창업교육 지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창업교육센터 등 2018년 대학의 창업교육 지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 3. 1. ~ 2019. 2. 28., 창업교육 전담 교직원 수 2019. 4. 1.)

현황								비정규교과(창업활동) 현황						창업교육 전담 조직 현황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 현황		
교양과목				전공과목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전담 교직원 수	지원예산		창업 휴학제 시행여부	창업대체 학점인정 제도 시행여부
이론형 과목		실습형 과목		이론형 과목		실습형 과목		동아리 수	참여인원 수	개최횟수	참여인원 수	개최횟수	참여인원 수		교비	사업비		
강좌 수	이수자 수	강좌 수	이수자 수	강좌 수	이수자 수	강좌 수	이수자 수											

■ 작성지침

[창업강좌 현황] :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과목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

※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는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특허”,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 “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startu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러팔러십”,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PEV(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교육 약자)”, “사업제안서”, “벤처”, “venture”, “기술사업화”, “창작”으로 한정

예시 과목명 ‘마케팅’은 창업강좌로 인정되지 않으나, 과목명 ‘창업마케팅’은 창업강좌로 인정

※ 분반은 각각의 강좌로 입력

예시 ‘사업계획서 작성법’ 과목이 분반 3개로 진행된 경우, 강좌 수에 1이 아닌 3으로 입력

[교양과목] :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창업강좌

[전공과목] :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창업강좌

[이론형과목] : 수업내용의 절반이상이 창업 이론 등 창업 일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편성된 교과목

실습형과목 : 수업내용의 절반이상이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조별 모의창업 실습, 시제품 개발 등의 실습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편성된 교과목

【창업동아리】 : 대학에 등록을 하고 지도교수가 있으면서 창업에 대한 학습, 교육, 실무 등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동아리 수, 동아리 참여인원 수

【창업 경진대회】 : 창업 아이디어 및 우수창업자원 발굴을 목적으로 대학이 주관(총장명의로의 시상 포함)하여 일정한 공모·평가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는 대회의 개최횟수, 경진대회 참여인원 수 (대학 단독개최 및 외부기관과의 공동개최 창업경진대회를 모두 포함하며, 다수일 경우 모두 기재)

【창업캠프 개최】 : 창업아이디어 발굴, 비즈니스플랜작성 등 창업역량배양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위주의 교육의 개최횟수, 창업캠프 참여인원 수 (단독개최 및 외부기관과의 공동개최 창업캠프를 모두 포함하며, 다수일 경우 모두 기재)

【창업교육 전담조직】 : 대학 내 학생의 창업교육 및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의 현황으로 전담 교직원 수, 지원예산 금액 중 교비와 사업비를 분류하여 기재

【창업휴학제 시행여부】 : 창업휴학제 시행에 대한 규정이 학칙에 명시된 경우 O 기재, 아니면 X로 기재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 시행여부】 : ‘창업실습’ 또는 ‘창업현장실습’ 시행에 규정이 학칙에 명시된 경우 O 기재, 아니면 X로 기재

■ 참고사항

- 창업교육 지원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기술지주회사 설립여부, 산학협력단 출자액, 자회사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 4. 1., 매출액의 경우 2018. 1. 1. ~ 2018. 12. 31. 결산 회계 기준)

(: 원, 명)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기술지주회사(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자회사				입지 현황
상호명	설립일자	지주회사 자본금 총액	산학협력단 출자액	지주회사 총 매출액	지주회사 고용인력	자회사 수	자회사 총 고용인력	자회사 자본금 총액	자회사 총 매출액	

■ 작성지침

【상호명】 : 기술지주회사(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상호명

【설립일자】 : 설립 등기일자

【지주회사 자본금 총액】 : 기준일 현재 기술지주회사(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자본금 총액

【산학협력단 출자액】 : 기준일 현재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 여러 대학이 연합하여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대학별로 기재

【지주회사 총 매출액】 : 기술지주회사(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매출총액

【지주회사 고용인력】 : 기준일 현재 기술지주회사(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고용한 인원 수

【자회사 수】 : 자료기준일자까지 설립된 모든 자회사수

【자회사 총 고용인력】 : 기준일 현재 자회사가 고용한 인원 수

【자회사 자본금 총액】 : 기준일 현재 자회사가 출자한 자본금 총액으로서 창업자본(창업자 개인의 자체조달 자기 자본금)과 학교지원(엔젤펀드 등) 등으로 구분되는 자본금의 총액

【자회사 총 매출액】 : 해당 조사연도 1년간 개별 자회사의 매출액을 합한 총금액

입지현황] : 기준일 현재 기술지주회사(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소재를 교내 또는 외부 중 택일

■ 검토사항

- 여러 대학이 연합하여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경우, 대표 대학이 취합하여 작성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적용을 받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도 조사대상에 포함
 - ※ 산촉법과 다르나 신기술 사업화를 위하여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설립하는 등 사업내용은 동일
- 자본금, 출자액, 매출액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 회계와 일치

■ 참고사항

-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13-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10월

공시내용 : 2019년 장서 보유 및 2018년 도서관 결산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재학생 수 2018. 4. 1., 장서 관련 2019. 3. 1., 결산 관련 2018년 회계연도)

재학생 수 (A)	도서자료			연간 도서자료 증가 책수		비도서자료 (중)	전자자료			인쇄형 연속간행물			대학 총결산 (C)	자료구입비 (D)	학생 1인당 도서자료 수 (B/A)	대학 총결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 (D/C×100)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D/A)
	계(B)	국내서 (책)	국외서 (책)	증가 (책)	폐기 (책)		계	국내 (패키지)	국외 (패키지)	계	국내 (중)	국외 (중)					

※ 사이버대학의 경우, 동일법인의 도서관을 활용할 경우 동일법인 적용 내용을 비교란에 입력함(양식에는 재학생 수 및 대학 총결산만 입력함)

■ 작성지침

【재학생 수】 : 2018. 4. 1. 기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정원내+정원의외)의 합

【도서자료 - 국내서】 : 국내에서 간행된 단행본, 연속간행물 제본, 학위논문 등 등록번호가 부여된 책 수를 기재. 단, 소장 개념의 국내 e-book 포함

【도서자료 - 국외서】 : 국내서를 제외한 등록번호가 부여된 책 수를 기재. 단, 소장 개념의 국외 e-book 포함

【연간 도서자료 증가 책수】 : 대학도서관 도서자료의 연간 증가 책수와 연간 폐기 책수 기재(등록번호 기준)

【비도서자료】 : CD 또는 DVD(LD(레이저디스크) 포함), 테이프(오디오테이프 포함), 음반(악보자료 및 LP 디스크 포함),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필름 포함) 등

【전자자료】 : 전자저널, 웹DB와 같은 자료로써, 도서관에서 계약하여 현재 구독 중인 자료

※ 저널의 개별 종수가 아닌 구독 계약의 단위를 1개 패키지로 간주

【인쇄형 연속간행물】 : 2019. 3. 1. 현재 구독 중이거나 기증된 인쇄형 연속간행물의 종수를 기재

【대학 총결산】 : 2018년 회계연도 결산

① 국공립대학 : <8-가-2> 대학회계 세출 결산 합계

② 사립대학 : <8-바-2>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중 운영지출 총계

자료구입비] : 도서자료,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구입을 포함한 순수 자료구입비 결산

【학생 1인당 도서자료 수】 : (국내서+국외서)/재학생 수

【대학 총결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 : (자료구입비/대학 총결산) × 100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 (자료구입비/재학생 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시

■ 참고사항

-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재학생 수는 2018년 <4-마> 재학생 수를 활용할 예정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조사 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3-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대학 부설 연구소 및 학술행사 개최 건수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전임유급연구원 2019. 4. 1., 학술대회 개최건수 2018. 1. 1. ~ 2018. 12. 31.)

(: 명, 건)

기준연도	연구소명	학문 분야	전임 유급 연구원	학술행사 개최건수			
				국제학술대회	국내학술대회	기타	합계

■ 작성지침

【연구소명】 : 연구소의 명칭을 그대로 기재 (예 : 과학기술응용연구소의 경우, ‘과응연’이 아닌 ‘과학기술응용연구소’)

※ 전임유급연구원 및 학술행사 개최 건수가 없는 경우라도 입력

【학문 분야】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중 선택

【전임 유급 연구원】 : 2019. 4. 1. 기준 대학부설연구소에 소속된 전임 유급 연구원 수, ‘연구’를 위해 채용한 전임 연구원만 포함

※ 전임교원 및 행정직은 제외, 단 연구소 소속 전임교원(HK교수 등)은 포함

【학술행사개최-국제학술대회】 : 2018. 1. 1~2018. 12. 31.에 부설연구소에서 단독 또는 타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국내외에서 개최한 정기 또는 부정기 학술대회 건수를 기재 (단,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의 연구자 10인 이상 발표, 외국국적 발표자의 국적은 최소 5개국 이상이어야 함)

【학술행사개최-국내학술대회】 : 2018. 1. 1~2018. 12. 31.에 부설연구소에서 단독 또는 타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국내에서 개최한 정기 또는 부정기 학술대회 건수를 기재

【학술행사개최-기타】 : 2018. 1. 1~2018. 12. 31.에 부설연구소에서 단독 또는 타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공식적인 대외 공고 후, 소규모 세미나, 전문가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술행사 건수를 기재 (국제/국내학술대회는 제외)

■ 참고사항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은 한국연구재단 조사시스템(KCI)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 14-가. 정관[PDF]
- 14-나. 법인의 임원 현황
- 14-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 14-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 14-마. 기숙사 현황
- 14-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 14-사. 직원 현황
- 14-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 14-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 14-차. 강사 강의료
- 14-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 14-파. 안전관리 현황

14-가. 정관[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국립대법인, 특별법법인 등 법인조직

【공시시기】 : 수시(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 정관 변경 사항은 이사회 의결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교육부 별도 승인일이 아닌 시행일을 기준으로 공시하여야 함.

【공시내용】 : 대학에서 정한 조직·활동 근본규칙

【공시양식】 :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제목과 목차 및 최종개정본의 시행일을 명시

【공시방법】 : PDF 파일 형태로 공시

■ 작성지침

【정관】 :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4-나. 법인의 임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국립대법인, 특별법법인 등 법인조직

【공시시기】 : 수시(임원 현황 변동일 기준 30일 이내)

【공시내용】 : 대학의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구분	성명	성별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이사장				
	이사				
	감사				

■ 작성지침

【현직 및 주요경력】 : 대표적인 주요 경력 3가지

【임기】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임원 현황 변동일은 임원 임기 개시일 및 임기 만료 익일임
- 기간 연장 임원의 경우 우선 삭제 후 기간 연장 시작일 기준 재공시

14-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10월

공시내용 : 2019년 교지(校地) 확보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 4. 1.)

	기준면적(㎡)		보유면적(㎡)(C)	교지확보율(%)	
	입학정원 기준(A)	재학생 기준(B)		입학정원 기준(C/A×100)	재학생 기준(C/B×100)

※ 사이버대학은 본 항목의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작성지침

【교지(校地)】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학이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지 중 교지경계선 내 및 교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최단거리 2km 이내에 위치한 용지

※ 제외 : 농장, 학술림, 사육장, 목장, 양식장, 어장, 약초원 등 실습지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

【기준면적】 :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4에 의한 교지(실습지를 제외한) 기준면적

학생정원	400명 이하	400명 초과~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면적		교사기준면적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 예외 :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 학생정원에 상관없이 교사건축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함. 다만,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 교지를 확보할 필요 없음

【입학정원기준】 : 정원내 학부(계열별 학과 주·야별 입학정원 중 최댓값 × 수업연한(2년, 3년, 4년, 5년 이상)) + 정원내 대학원(주간 입학정원 × 수업연한)

※ 대학원을 계열별로 구분할 수 없을 경우 당해연도 상반기에 입학한 4.1 기준 대학원 정원내 재학생 비율로 안분

참고

- 2005. 10. 25 설립 대학 중 본교·분교 및 캠퍼스 상관없이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100명) 미만인 경우 그 정원을 400명으로 환산하여 입력
- 2005. 10. 25 이후 설립 대학 중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000명(대학원대학 200명) 미만인 경우 그 정원을 1,000명(대학원대학 200명)으로 환산하여 입력. 단, 대학의 일부를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는 경우,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200명) 미만인 경우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200명)으로 환산하여 입력

재학생기준] : 정원내·외(계열별, 학년별, 주·야별 최댓값) + 정원내·외 대학원(주간 재학생)

※ 제외 : 계약학과 재학생,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 재학생

【보유면적】 :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교지경계선 내 및 교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최단거리 2km 이내 교지(시설결정, 미결정 포함)

【교지확보율(%)】 : (보유면적/기준면적) × 100

■ 참고사항

- 교지(校地) 확보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4-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10월

【공시내용】 : 2019년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 4. 1., 단, 사이버대학은 2019. 3. 1. 기준)

	기준면적(㎡)		건축물 전체 보유면적(㎡)					교사시설확보율(%)	
			교사확보를 산정 면적			그 외			
	입학정원 기준(A)	재학생 기준(B)	기본시설(C)	지원시설(D)	연구시설(E)	부속시설	기타시설	입학정원기준(C+D+E)/A×100	재학생기준(C+D+E)/B×100

■ 작성지침

【기준면적】 : 「대학설립운영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사 기준 면적

○ 관련법규 참조

- 「대학설립운영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3]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별표1]
-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3]

【입학정원기준】 : 정원내 학부(계열별 학과 주·야별 입학정원 중 최댓값 × 수업연한(2년, 3년, 4년, 5년 이상)) + 정원내 대학원(주간 입학정원 × 수업연한)

※ 계열 구분이 어려운 학과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과에 입학한 총 정원을 계열이 최초로 구분되는 학년의 정원 내 재학생 비율로 안분 (소수점은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사이버대학 시설정원 입력 시 유의사항

당해연도 교육부에서 허가받은 입학정원(수업연한 곱하지 않음)

대학원이 설치된 사이버대학은 대학원 입학정원의 1.5배수

참고

- 2005. 10. 25 설립 대학 중 본교·분교 및 캠퍼스 상관없이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100명) 미만인 경우 그 정원을 400명으로 환산하여 입력
- 2005. 10. 25 이후 설립 대학 중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000명(대학원대학 200명) 미만인 경우 그 정원을 1,000명(대학원대학 200명)으로 환산하여 입력. 단, 대학의 일부를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는 경우,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200명) 미만인 경우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200명)으로 환산하여 입력

재학생기준 : 정원내·외(계열별, 학년별, 주·야별 최댓값) + 정원내·외 대학원(주간 재학생)

※ 제외 : 계약학과 재학생,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 재학생

- 대학 및 전문대학(각종학교, 기술학교포함)의 교사기준면적

(: ㎡)

구분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1인당 교사 기준면적		12	17	20	19	20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교사기준면적의 10분의7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간호학과 4년제 지정을 받은 전문대학의 경우 해당 학생정원만큼은 4년제 대학의 기준을 적용함)

- 사이버대학의 교사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별표1]에 의한 사이버대학의 교사

구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교사 범위	대학 본부 및 행정실, 교수 연구실, 강의실, PC실습실, 세미나실, 콘텐츠 개발실	서버 및 통신장비 관리실, 시스템 운영실, 디지털 도서관
기준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정원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 - 1,000명 미만: 990㎡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1,485㎡ - 2,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1,980㎡ - 3,000명 이상: 2,475㎡ 	

※ 1. 기준면적은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2. 전문학사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은 위 기준면적의 7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유면적】

- 대학 및 전문대학 보유면적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에 의한 교사시설
- 1.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교지경계선 내 교사

2. “2km이내의 학생 기숙사”는 해당 부지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학생기숙사로 이용하면서, 학교 소유의 건물인 경우에는 교사시설로 인정하고, 교지경계선 “2km밖의 학생기숙사”는 해당 부지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학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교사시설로 인정
3. 밖 “연구시설”로서 해당 부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 교사시설로 인정
- －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2] 교사시설 구분

		구분	
교육기본시설	· 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체육관(체육관으로 병용되는 형태의 강당을 포함한다)·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1.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및 사무실 2.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지원시설	강당·전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부속시설	공통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농학계열	농학에 관한 학과	농장·농장건물 및 농장가공장
		축산학에 관한 학과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임학에 관한 학과	학술림·임산가공장
	공학계열	공학에 관한 학과	공장
		항공학에 관한 학과	항공기·격납고
	수산·해양계열	어로학·항해학에 관한 학과	실습선
		수산제조학에 관한 학과	수산가공장
		증식학에 관한 학과	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
		기관학에 관한 학과	기관공장
약학계열	약학에 관한 학과	약초원·실습약국	
	제약학에 관한 학과	제약실습공장	
의학계열	의학·한의학·치의학에 관한 학과	부속병원	
	수의학과	동물병원	

비고 : 대학 또는 학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사이버대학 보유면적

1. 사이버대학설립인가 받은 위치의 교사(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2. 사이버대학이 인가받은 위치 외에 “학습관”으로 인가된 경우 교사시설로 인정(단, “학습관”이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을 건물에 한함)

【교사(校舍)시설 확보율(%)】

- 대학 및 전문대학 교사(校舍)시설확보율(%) : [(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기준면적] × 100

- 교사(校舍)시설확보율(%) : [(기본시설+지원시설)/기준면적] × 100

■ 참고사항

-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실제 수용 인원 : 2019. 4. 1. 기준 학위과정/비학위과정의 내국인/외국인 수 기재

기숙사 수용률(%) : (수용 가능 인원/재학생 수) × 100

기숙사 지원자 수 : 기숙사 지원자 수(동일지역, 타지역) 기재

※ 구분기준 :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입사 경쟁률 : (기숙사 지원자 수/수용 가능 인원)

의무식 여부 : 1일 기준, 고정적 식수(1회 이상) 운영 시 의무식에 해당

구분 : 기숙사 유형 구분(직영(구내)/직영(구외)/임차/민자(BTL)/민자(BTO)/행복기숙사))

※ 직영기숙사의 경우 기숙사 위치에 따라 구내와 구외로 구분함

※ 민자기숙사의 경우 운영방식에 따라 BTL, BTO로 구분함

※ 행복기숙사의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행복공공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글로벌교류센터 및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생 연합기숙사가 해당됨

건물명 : 기숙사의 실제 사용 명칭 입력

준공연도 :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연도, 증축의 경우 증축연도 기재

실수 : 개별 기숙사의 인실별 기숙사 실수 기재

기숙사비 : 2019년 기준 30일간의 1인당 기숙사비를 입력

※ 30일간 기숙사비 산출식 : A건물 1인당 한 학기 기숙사비/이용기간* × 30일

* 이용 기간 : 입실일부터 퇴실일까지의 기간

※ 한 학기당 기숙사비 중 관리비는 식비 및 보증금을 제외한 관리비(일반관리비, 자치회비, 건강검진비 등)만 포함

※ 동일한 인실 내 기숙사비가 타입별 수용인원에 따라 다른 경우 관리비를 가중평균값으로 입력

예시

	반환 보증금	관리비	한 학기 기숙사비(천원)	수용인원(명)
2 A타입	100	650	650	150
2인실 B타입	100	750	750	250

· 산출식 : {(650천원×150명)+(750천원×250명)}÷400명=712.5천원
· 한달기숙사비 산출식 : (712.5천원/이용기간) × 30일

비고 : 특정대상을 위한 전용 기숙사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내용 기재

※ 예시 : 외국인 기숙사, 대학원생 기숙사

■ 참고사항

기숙사 수용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입니다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4-마-2. 기숙사 운영 결과

14-마-2-(1) 기숙사 운영 결과(국·공립대학_민자기숙사)

■ 공시지침

공시기관 : 국·공립대학, 국립대법인, 특별법국립

공시시기 : 2019년 10월

공시내용 : 2018년 민자기숙사 운영(결산) 결과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 천원)

기준연도	수익							비용							비고		
	전기이월	지원금수입		기숙사비수익	부속시설초과수익	기타수익	소계(A)	시설임대료	인건비	운영비			학생경비	기타비용		이월금	소계(B)
		국고	학교							운영관리비	수선유지비	협약외운영비					

※ 사이버대학, 특별법법인은 본 항목의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작성지침

작성대상 : 민자기숙사(BTL)

작성기준 : 학교회계

수익

- 전기이월 : 전년도에서 당해연도로 이월되는 금액
- 지원금수입(국고) : 민자기숙사 국고지원금
- 지원금수입(학교) : 민자기숙사 학교부담금
- 기숙사비 수익 : 기숙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기숙사비 수입(식비 제외) (중도 퇴실 및 포기자에 대한 기숙사비 환불금 등은 기숙사비 수익에서 차감 반영)
- 부속시설 초과수익 : 부속시설 운영 순이익이 협약상 추정 운영 순이익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 중 학교로 분배된 수익

- : 상기 수입 내역 이외에 발생한 모든 수입(예금이자 수입 등)

【비용】

- 시설임대료 : SPC에 지급하는 연간 금액
- 인건비 : 기숙사 운영관련 직원에게 지출하는 인건비성 보수 일체(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 운영비 : SPC에 지급하는 연간 운영비(운영관리비 및 수선유지비, SPC 협약 외 운영비*)
 - * 협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방학기간 운영 등으로 SPC에 추가로 지급되는 운영비
- 학생경비 : 보상금(보조 장학금 등) 및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비용
 - ※ 기존의 반환금(중도 퇴실 및 포기자에 대한 기숙사비 환불금 등)은 기숙사비 수익에서 차감 반영
- 기타비용 : 업무추진비, 인건비, 비품비 등 기타 경비
- 이월금 : 수익·비용의 차액분으로 차년도로 이월되는 금액

【비고】 : 이월금, 기타수입/ 기타비용 내역 등 작성

■ 참고사항

- 기숙사 운영 결과(국·공립대학_민자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4-마-2-(2) 기숙사 운영 결과(사립대학_행복/민자기숙사)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10월

[공시내용] : 2018년 행복기숙사 및 민자기숙사 운영(결산) 결과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 천원)

기준연도	기숙사 형태	수익					비용										비고	
		전기 이월	기숙사비 수익	임대료 수익	기타 수익	소계(A)	인건비	위탁 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선비	장기 수선비	일반 수용비	학생 경비	타회계 전출금	기타 비용	이월금		소계(B)
	행복																	
	민자																	

※ 사이버대학은 본 항목의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작성지침

[작성대상] : 사립대학 행복기숙사 및 민자기숙사(BTO/BTL)

[작성기준] : SPC회계 기준으로 행복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행복공공기숙사, 글로벌교류센터가 해당)와 민자기숙사를 구분하여 작성

[수익]

- 전기이월 : 전년도에서 당해연도로 이월되는 금액
- 기숙사비 수익 : 기숙사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입 (중도 퇴실 및 포기자에 대한 기숙사비 환불금 등은 기숙사비 수익에서 차감 반영)
- 임대료 수익 : 기숙사 내 시설 임대료에 따른 업체로부터 받는 수입
- 기타수익 : 장기 수입 내역 이외에 발생한 모든 수입(예금이자 수입 등)

[비용]

- 인건비 : 기숙사 운영관련 직원에게 지출하는 인건비성 보수 일체(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 위탁관리비 : 기숙사 운영을 위해 용역을 위탁한 경우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관리비용

- 및 제세 : 수도광열비, 통신비, 각종세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
- 수선비 : 기숙사 건물, 기계장치 및 집기비품의 수선 및 유지를 위해 당해 지출한 일반 수선비용
- 장기수선비 : 기숙사 수선 및 유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대수선 총당금의 당해 적립비용(실제 적립 기숙사만 작성)
- 일반수용비 :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유형 자산취득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등에 지출하는 비용
- 학생경비 : 보상금(보조 장학금 등) 및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비용
 - ※ 기존의 반환금(중도 퇴실 및 포기자에 대한 기숙사비 환불금 등)은 기숙사비 수익에서 차감 반영
- 타회계 전출금 : 기부금의 지출금액
- 기타비용 : 업무추진비, 학생경비, 회의비, 장학금, 여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
- 이월금 : 수익·비용의 차액분으로 차년도로 이월되는 금액

[비고] : 타회계전출금 사용내역 및 이월금, 기타수입/ 기타비용 내역 등 작성

■ 참고사항

- 기숙사 운영 결과(사립대학_행복/민자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4-마-2-(3) 기숙사 운영 결과(국·공립대학_직영기숙사)

■ 공시지침

【공시기관】 : 국·공립대학, 국립대법인, 특별법국립

【공시시기】 : 2019년 10월

【공시내용】 : 2018년 직영기숙사 운영(결산) 결과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 천원)

기준 연도	수익					비용										비고
	전기 이월	기숙사비 수익	임대료 수익	기타수익	소계(A)	인건비	위탁 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선비	장기 수선비	일반 수용비	학생 경비	기타비용	이월금	소계(B)	

사이버대학, 특별법법인은 본 항목의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작성지침

【작성대상】 : 국·공립대학 직영기숙사

【작성기준】 : 학교회계

【수익】

- 전기이월 : 전년도에서 당해연도로 이월되는 금액
- 기숙사비 수익 : 기숙사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입(식비 제외) (중도 퇴실 및 포기자에 대한 기숙사비 환불금 등은 기숙사비 수익에서 차감 반영)
- 임대료 수익 : 기숙사 내 시설 임대료에 따른 업체로부터 받는 수입
- 기타수익 : 상기 수입 내역 이외에 발생한 모든 수입 (교비 지원(투입)수입 등)

【비용】

- 인건비 : 기숙사 운영 관련 직원에게 지출하는 인건비성 보수 일체(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포함)
- 위탁관리비 : 기숙사 운영을 위해 용역을 위탁한 경우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관리비용(물품구매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시에 포함해서 작성, 복합건물 또는 학교 일괄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연면적으로 산출 기재)

- 및 제세 : 수도광열비, 통신비, 각종세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계량기 확인 후 작성, 계량기 확인 불가의 경우에는 대학 공공요금을 기숙사 연면적으로 산출 기재)
- 수선비 : 기숙사 건물, 기계장치 및 집기비품의 수선 및 유지를 위해 당해 지출한 일반 수선비용
- 장기수선비 : 기숙사 수선 및 유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대수선 총당금의 당해 적립비용 (실제 적립 기숙사만 작성)
- 일반수용비 :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유형 자산취득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등에 지출하는 비용
- 학생경비 : 보상금(보조 장학금 등) 및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비용
 - ※ 기존의 반환금(중도 퇴실 및 포기자에 대한 기숙사비 환불금 등)은 기숙사비 수익에서 차감 반영
- 기타비용 : 업무추진비, 학생경비, 회의비, 장학금, 여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
- 이월금 : 수익·비용의 차액분으로 차년도로 이월되는 금액

【비고】 : 이월금, 기타수입/ 기타비용 내역 등 작성

■ 참고사항

- 기숙사 운영 결과(국·공립대학_직영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4-마-2-(4) 기숙사 운영 결과(사립대학_직영기숙사)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10월

【공시내용】 : 2018년 직영기숙사 운영(결산) 결과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 천원)

기준 연도	수익					비용										비고
	전기이월	기숙사비 수익	임대료 수익	기타수익	소계(A)	인건비	위탁 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선비	장기 수선비	일반 수용비	학생 경비	기타비용	이월금	소계(B)	

사이버대학, 특별법법인은 본 항목의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작성지침

【작성대상】 : 사립대학 직영기숙사

【작성기준】 : 학교회계

【수익】

- 전기이월 : 전년도에서 당해연도로 이월되는 금액
- 기숙사비 수익 : 기숙사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입(식비 제외) (중도 퇴실 및 포기자에 대한 기숙사비 환불금 등은 기숙사비 수익에서 차감 반영)
- 임대료 수익 : 기숙사 내 시설 임대료에 따른 업체로부터 받는 수입
- 기타수익 : 장기 수입 내역 이외에 발생한 모든 수입 (교비 지원(투입)수입 등)

【비용】

- 인건비 : 기숙사 운영관련 직원에게 지출하는 인건비성 보수 일체(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등을 포함)
- 위탁관리비 : 기숙사 운영을 위해 용역을 위탁한 경우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관리비용(물품구매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시에 포함해서 작성, 복합건물 또는 학교 일괄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연면적으로 산출 기재)

- 및 제세 : 수도광열비, 통신비, 각종세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계량기 확인 후 작성, 계량기 확인 불가의 경우에는 대학 공공요금을 기숙사 연면적으로 산출 기재)
- 수선비 : 기숙사 건물, 기계장치 및 집기비품의 수선 및 유지를 위해 당해 지출한 일반 수선비용
- 장기수선비 : 기숙사 수선 및 유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대수선 충당금의 당해 적립비용 (실제 적립 기숙사만 작성)
- 일반수용비 :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유형 자산취득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등에 지출하는 비용
- 학생경비 : 보상금(보조 장학금 등) 및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비용
 - ※ 기존의 반환금(중도 퇴실 및 포기자에 대한 기숙사비 환불금 등)은 기숙사비 수익에서 차감 반영
- 기타비용 : 업무추진비, 학생경비, 회의비, 장학금, 여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
- 이월금 : 수익·비용의 차액분으로 차년도로 이월되는 금액

[비고] : 이월금, 기타수입/ 기타비용 내역 등 작성

■ 참고사항

- 기숙사 운영 결과(사립대학_직영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4-마-3.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10월

【공시내용】 : 2019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 4. 1.)

	기숙사 형태	카드납부 실시 여부	현금분할납부		비고
			실시 여부	분할 횟수	
	직영/민자/행복				

※ 사이버대학, 특별법인인은 본 항목의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작성지침

【기숙사 형태】 : 직영, 민자, 공공기숙사

- 직영기숙사 :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건립하여 직접 관리·운영하는 기숙사
- 민자기숙사 : 대학이 민간외부 자금을 통해 건립하여 특수목적법인(SPC)에 관리운영권을 위탁하거나 임대료를 보전하는 기숙사(BTO/BTL)
- 행복기숙사 :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공공)기숙사 및 글로벌 교류센터

【카드납부】 : 기숙사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형태로 실시 / 미실시로 구분하여 기재

【현금분할납부】 :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분할납부하는 형태로 실시 / 미실시 여부 및 분할 횟수를 기재

【비고】 : 총 0동, 특이사항 작성(00관은 현금분할납부 실시/미실시, 카드납부 실시/미실시)

■ 참고사항

-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4-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14-바-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10월

【공시내용】 : 2019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 기준일 : 보유액(D)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매년 4월 1일 기준, 「사이버대학·운영규정」 매년 3월 1일 기준, 그 외는 2018 회계연도 결산)

(: 천원)

기준연도	법인명	학교명	구분	운영수익총계 (A)	전입, 기부, 원조보조수입 (B)	기준액 (C)	보유액 (D)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D/C)×100	학교운영 경비 부담 내역		
									소득액 (E)	부담액 (F)	부담률(%) (F/E)×100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중등이하								
			합계								

■ 작성지침

【운영수익총계】 : 학교회계 운영계산서 상의 수익총계

※ 제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전입, 기부, 원조보조수입】 : 학교회계 운영계산서 상의 전입금수입, 국고보조금 수입, 기부금수입과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의 합을 의미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이 전입금수입에서 별도로 분리됨에 따라 기준액 산출시 전입금 수입과 함께 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대학, 전문대학 : 학교회계 운영계산서상 전입금수입+국고보조금 수입+기부금 수입+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

기준액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7조

- 대학 : 기준액 = 운영수익총계 - 전입금 및 기부금수입, 국고보조금으로 하되 300억원 이상
- 전문대학 : 기준액 = 운영수익총계 - 전입금 및 기부금수입, 국고보조금으로 하되 200억원 이상
- 대학원대학 : 기준액 = 운영수익총계 - 전입금 및 기부금수입, 국고보조금으로 하되 100억원 이상
- 사이버대학 :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의 경우 기준액 = (등록금수입+교육부대수입+교육외수입)/2으로 하되, 35억원(전문학사학위 : 25억원) 이상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경우 기준액 = 등록금수입+교육부대수입+교육외수입
- 중등이하교 : 기준액 = (운영수익총계 - 전입기부,원조보조수입)/2
- 단,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국가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8%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봄
- 단,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운영수익총액의 55.6%이상을 확보하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봄

【보유액】 : 학교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의 평가액 합

※ 단, 수익사업체 장기차입금, 기본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 예금으로 확보하고 있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제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보유액/기준액) × 100

【소득액】 : 수익용 기본재산 총수입 - 제비용

- 총수입 = 법인일반회계로 관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입금액 + 수익사업회계로 관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입금액 중 법인일반회계로 진출되는 금액
- 제 비용 = 당해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

【부담액】 : 당해연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액 중 교비회계로 진출한 금액

【부담률(%)】 : (부담액/소득액) × 100

■ 참고사항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4-바-2.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사립대학

[공시시기] : 2019년 10월

[공시내용] : 2018 회계연도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 회계연도 결산)

(: 원)

법인명	학교명	법정부담금 기준액(A)	법정부담금 부담액(B)	부담률(B/Ax100)	비고

■ 작성지침

【법정부담금 기준액】 : 대학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내 교원법정부담금과 직원법정부담금의 합계액

【법정부담금 부담액】 : 대학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내 법정부담전입금

【부담률(%)】 : (부담액/기준액) × 100

■ 참고사항

-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본 내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별규칙」 제17조(계정과목)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 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4-사. 직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9년 대학 및 대학원 직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 4. 1.)

	특정직				일반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계약직		기타		총계		
	교육전문직*		대학회계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는 국공립대학만 해당

■ 작성지침

【공시대상】 : 2019. 4. 1. 현재 대학 회계를 통해 인건비가 지급되는 총 인원 (대학 및 대학원 소속 직원)

※ 제외 : 부설, 병설학교 및 병원 소속 사무직원, 일용직

※ 산학협력단 및 외주 용역업체 직원의 경우 학교에 소속되어, 인건비가 학교 교비에서 지급되는 직원에 대하여 입력함

【특정직-교육전문직】 :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등 교육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교육직렬의 직원 수 (국공립대학만 입력함)

【특정직-대학회계직】 : 대학회계-예산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 수 (국공립대학만 입력함)

【일반직】 : 행정, 서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계열 직원 수

【기술직】 : 일반직에 준하는 직급의 기술자격자 직원 수

【별정직】 : 예비군 중대장(5급 또는 6급 상당), 기숙사생관리, 모필사 등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해 임용된 직원 수

【기능직】 :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상기 직급 이외의 직원 수

【고용직】 : 행정, 서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계열 직원으로 일반적으로 채용되었으나 직급 구분이 없는 직원

【계약직】 :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채용한 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

※ 단, 4대 보험 납부 대상자가 아니라면 '기타'에 입력

기타 : 일용직 등의 직원 수

■ 참고사항

- 직원 현황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9. 4. 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4-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10월

【공시내용】 : 2018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 1. 1. ~ 2018. 12. 31.)

(: 원)

기준연도	구분	지원기관	재정지원사업명	과제명	지원시작일	지원종료일	당해연도지원액	비고
	중앙정부 재정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							
	합계							

■ 작성지침

【재정지원사업】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지원한 사업 중 학내기관(예 :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관리되며, 아래의 다섯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에 부합되는 사업

- ① 교원확보, 실험실습기자재 확보, 강의실/실습실 환경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
- ② 1개 학과 이상의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운영
- ③ 대학의 학사제도 개선 및 시범 운영(취업 체고 등)
- ④ 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과의 산학협력(인적교류, 물적교류 등) 수행
- ⑤ 대학의 교수와 학생이 참여하는 연구개발(R&D) 수행

순수 장학금, 생활비 목적의 재정지원사업은 입력 제외

※ 대학의 부속기관(부속 병원, 평생교육원 등)이 지원받은 재정지원사업 중 위 다섯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에 부합될 경우 입력

【자료 기준】 : 재정지원사업의 수혜 기준일이 2018. 1. 1. ~ 2018. 12. 31. 사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2018년 재정지원사업으로 인정

【구분】 : 재정지원사업의 지원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함

지원기관 : 재정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시도의회 등)를 의미하고, 기관명은 2018년 명칭을 기준으로 함
 (사업 관리기관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중앙부처명 또는 지방자치단체명을 기재)

※ 중앙부처 산하기관(출연기관 등)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중앙부처를 지원기관으로 함
 예시 BK21 플러스사업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 교육부(○)

※ 중앙부처의 지역청 또는 지역사무소 성격기관은 중앙부처를 지원기관으로 함
 예시 지역노동청 → 고용노동부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를 의미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함

–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함(예시 경기도의회 → 경기도청)

– 지역교육청은 상급 도교육청 소속으로 함

재정지원사업의 재원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되어 있을 경우 계약서(협약서)상 명시된 지원기관별 당해연도지원액을 구분하여 입력

예시 1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에 교육부와 서울시가 각각 사업비의 60%, 40%를 지원하는 경우 → 중앙정부 재정지원사업에 교육부를 선택하고 6천만원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에 서울시를 선택하고 4천만원을 각각 입력

【재정지원사업명】 : 계약서(협약서)에 제시된 재정지원사업명

예시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 사회과학연구지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육성 등

【과제명】 : 학교가 수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의 과제명

예시 한국경제의 글로벌화와 상생발전, 교원양성교육 선도 사범대학 지원사업 등

※ 세부 과제명이 없는 경우 재정지원사업명을 입력

【지원시작일/지원종료일】 : 계약서(협약서) 상의 지원시작일 및 지원종료일로, 다년도 사업은 조사대상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서(협약서)에 기록된 날짜 입력

예시 2017. 3. 2. ~ 2019. 2. 28.까지 3년간 계속사업을 지원받았다면, 자료기준일(2018. 1. 1. ~ 2018. 12. 31.)과 상관없이 협약서에 기록된 대로 지원시작일은 2017. 3. 2., 지원종료일은 2019. 2. 28.로 입력

【당해연도지원액】 : 2018. 1. 1. ~ 2018. 12. 31.에 대학 중앙관리부서나 산학협력단의 계약서(협약서) 상에 지원이 결정된 금액

※ 사업이 다년 과제일 경우 2017년도 계약서(협약서)상에 2018년에 지원이 결정된 금액만 입력

예시 총지원기간이 3년이고 총지원액이 6억 원인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조사대상연도에 지원받은 사업비가 1억 원이면 당해연도지원액은 1억 원으로 입력

※ 유가증권, 부동산 등 현물지원 입력 제외

■ 참고사항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4-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14-자-1. 대학 자체평가 결과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수시(자체평가 보고서 완료일 후 30일 이내)

[공시내용] : 2019년 대학 자체평가 결과

※ 2018년 자체평가 결과가 차년도 완료되는 경우 차년도 공시

[공시양식] :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제목과 목차 및 자체평가 완료일을 명시

[공시방법] : 요약본은 PDF 파일 형태로 공시하고, 원본은 접근 가능한 URL 링크로 공시(PDF와 URL 모두 공시)

■ 작성지침

[대학 자체평가 결과]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대학 자체평가결과 공시

참고

「고등교육법」 [시행 2019.1.1.] [법률 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

제11조의2 (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이하 “교육·연구 등”이라 한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등) ① 학교의 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조(평가 결과의 공시)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참고사항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URL 링크는 학교의 홈페이지 메인화면 등이 아닌 자체평가 원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어야 함

14-자-2. 대학별 평가 인증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수시(인증 완료일 후 30일 이내)

공시내용 : 대학 기관 인증 평가 결과 및 교육부로부터 지정받은 프로그램(학문분야) 인증 결과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학교명	학과(부)명	인증 분야	인증프로그램명	인정기관	인증 유효 기간

■ 작성지침

〔대학별 평가 인증 현황〕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에 근거하여 대학의 평가 인증 결과 공시

참고

고등교육법 [시행 2019.1.1] [법률 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

제11조의2 (평가 등)

-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 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7.21.]

〔학교명〕 : 교육과정 프로그램 및 기관 인증을 획득한 학교명

〔학과(부)명〕 :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한 학과(부)명

대학 기관 인증의 경우 음영처리됨

[인증 분야] : 간호학, 건축학, 경영학, 공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기관 인증

[인증프로그램명] : 간호학 학사학위, 건축학 학사 등 인정기관에서 획득한 교육과정 프로그램명

※ 대학 기관 인증의 경우 음영처리됨

[인정기관] :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교육과정 및 기관 평가 인증기관

[인증 유효 기간] : 기준일자가 포함된 교육과정 프로그램 및 기관 인증의 유효 기한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4-차. 강사 강의료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2019년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은 작성지침 참조)

	구분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지급인원 수	총 강의시간 수	지급인원 비율(%)
	합계				

■ 작성지침

【시간강사】 : 2019년 4월 기준, 대학(학부, 대학원) 소속으로 학부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4월에 강의하지 않은 강사 제외)

※ 예시1 학부 소속의 시간강사 A가 학부와 대학원 강의를 모두 하는 경우, 학부 강의분은 학부에 입력하고 대학원 강의분은 대학원에 입력

예시2 대학원 소속의 시간강사 B가 학부와 대학원 강의를 모두 하는 경우, 학부 강의분은 학부에 입력하고 대학원 강의분은 대학원에 입력

※ 외부(기업 등)에서 강의료가 지급되는 시간강사 및 겸임, 초빙, 명예, 대우, 석좌교수 등은 포함하지 않음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 2019년 4월에 강의한 강의료 지급 기준 1인 1시간의 지급기준 단가

※ 원 단위 입력

※ 학교에서 책정한 단가 외에 추가 강의료(연구보조비, 수강인원수에 따른 수당, 외국어강의에 따른 수당 등), 또는 감면 강의료(특수강의는 50%만 지급, 2시간 수업 시 1시간 단가 지급 등)가 매월 지급되는 경우, 추가(감면) 강의료를 포함한 금액을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로 입력하고 시간강사 강의료 차등 지급기준 내용을 【비고】란에 자세히 명기함(단, 교통비, 숙박비는 제외)

※ 한 강좌 안에서 이론과 실험(실습) 단가가 다를 경우, 각각의 단가로 나누어 입력

【구분】 : 주간·야간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지급인원 수, 총 강의시간 수를 입력함

단가별 주간·야간 구분이 없는 경우,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개설 학과의 학칙상 구분 및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입력

지급인원수 : 각 단가별 시간강사료를 받는 시간강사 인원수를 입력함

※ 동일한 강사가 n개의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지급인원 수는 n명으로 입력(단가가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은 경우 모두 포함)

【총 강의시간 수】 : 각 단가별 시간강사가 실제 1학기 중 담당하는 총 강의시간

예시

A대학은 시간강사 강의로 기본단가 외에도 수강인원에 따라 초과수당을 매월 지급함. 또한 실험과목의 경우는 기본단가의 50%만 지급함. 한 학기당 15주 강의 진행
<시간강사별 담당과목 및 단가 현황>

	분반코드	주/야간	학점	수업시수		주차	시간강사명	기본단가	초과(감면)수당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비고
				이론	실습						
현대인의생활문화	01	주간	2	2	0	15	김OO	50,000	15,000(101명 이상 강좌 30% 추가 지급)	65,000	동일한 강사가 N개의 강의를 하는 경우, 초과강의료
	02	주간	2	2	0	15		50,000			
	03	주간	2	2	0	15		50,000			
과학과예술	01	주간	2	1	0	15	최OO	50,000	0	50,000	팀티칭1(시간별)
				1	0	15	주OO	50,000	0	50,000	
미용문화사연구	01	주간	3	1	0	10(1주~10주)	박OO	60,000	0	60,000	팀티칭2(주차별)
				0	2	5(11주~15주)	서OO	60,000	0	60,000	
기초물리학실험1	01	주간	3	2	0	15	이OO	50,000	0	50,000	이론과 실험(실습) 단가가 다른 경우, 감면강의료
				0	2	15		50,000	-25,000(2시간 수업 시 1시간 단가 적용)	25,000	
물리학1	01	야간	2	2	0	15		55,000	0	55,000	

<강사 강의로 입력 방법>

구분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지급인원 수	총 강의시간 수
주간	65,000	1(김OO 1명)	30(2시간×15주×1명분)
주간	60,000	1(박OO 1명) ※서OO은 4월에 강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외	10(1시간×10주×1명)
주간	50,000	5(김OO 2명+최OO 1명+주OO 1명+이OO 1명)	120(2시간×15주×1명+2시간×15주×1명+1시간×15주×1명+1시간×15주×1명+2시간×15주×1명)
주간	25,000	1(이OO 1명)	30(2시간×15주×1명)
야간	55,000	1(이OO 1명)	30(2시간×15주×1명)

지급인원 비율(%) : (등급별 해당 지급인원 수/총 지급인원수의 합) × 100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4-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9년 장애학생지원체제 및 운영 현황 공개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은 작성지침 참조)

(: 명)

기준연도	구분	전체 재학생 수	장애 재학생 수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자 수	특별지원 위원회 유무	장애학생 지원센터 유무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			장애학생지원센터 외 지원인력			학칙 및 규정	장애이해 프로그램 운영시간	장애보조인력지원 인원						수혜 장애 학생 수	
			남	여	계				센터장	전담	겸직	지원 부서명	전담	겸직			교육부 사업 지원인력 (대응투자 포함)			교육부 사업 외 대학자체 지원인력				
																	일반 도우미	전문 도우미	기타	일반 도우미	전문 도우미	기타		
	대학																							
	대학원				해당없음																			
	계																							

■ 검증사항

【전체 재학생 수】 : 대학, 대학원의 ‘전체 재학생 수’는 <4-라>, <4-마>의 재학생 총계와 일치해야 함

■ 작성지침

【전체 재학생 수】 : 2019. 4. 1. 기준 정원내·외 재학생 수(장애학생 포함, 휴학생 제외)

※ 대학원은 전체 대학원(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합산하여 입력

【장애 재학생 수】 : 2019. 4. 1. 기준 대학에 재학 중인 정원내·외 장애 재학생 수(휴학생 제외,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정원내외 장애학생 모두 포함)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자 수】 : 2019학년도 장애인 대입 특별전형 입학등록자 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4호 관련, 신입학 및 편입학 포함)

【특별지원위원회 유무】 : 2019. 4. 1. 기준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 설치 유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장애학생지원센터 유무 : 2019. 4. 1. 기준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유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 : 2019. 4. 1. 기준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 현황

장애학생지원센터 외 지원인력 : 2019. 4. 1. 기준 장애학생 수가 9명 이하인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직원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대학 중 센터 외 추가 지원 직원 현황

학칙 및 규정 : 2019. 4. 1. 기준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해당 조항을 명기하고, 학칙 및 규정에 미규정 시 해당 없음으로 표기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장애이해프로그램 운영시간 : 2018. 3. 1. ~ 2019. 2. 28. 기간 중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행한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장애이해 관련 교육시간합계를 분단위로 입력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제2항)

※ 장애학생지원센터(미설치 학교의 경우 지원부서) 외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입력에서 제외

장애보조인력 인원 : 2019. 4. 1. 기준 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자체 보조인력 등과 관련한 전체 장애보조인력 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 '교육부 사업'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및 국가근로장학사업을 통해 대응투자를 모두 포함한 인력

- '대학자체'는 교육부 사업(대응투자 포함)을 제외한 대학 자체에서 장애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인력

※ 일반도우미(대학생, 일반인 등), 전문도우미(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속기사, 수화통역사, 점역사, 원격지원도우미 등), 기타(전담 조교, 활동보조인 등)

※ 대학의 관리 없이 별개로(학생 개인, 관련 장애인단체 등) 운영되는 지원인력은 제외

수혜장애학생 수 : 2019. 4. 1. 기준 장애보조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수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4-파. 안전관리 현황

14-파-1.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10월

공시내용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학년도 기준)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안전환경관리자 (단위 : 인)		안전관리비 (단위 : 원)		등급별 실험·실습실 수 (단위 : 개)					사고 건수 [보험(공제)청구건수]		보험(공제)가입금액 (단위 : 원)		등급별 실험·실습실 수 (단위 : 개)				
전담	겸임	예산액	집행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적피해	물적피해	사망/후유장해	부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사이버대학은 본 항목의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작성지침

【안전환경관리자】 : 대학 실험·실습실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직원 수를 전담과 겸임으로 구분하여 작성

【안전관리비 현황】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대학 실험·실습실 안전관리를 위해 별도로 확보한 금액을 합산하여 예산액과 집행액으로 작성

※ 실험·실습실 시설 환경개선비는 제외

※ 국고보조금 및 외부기관 지원금·물품 제외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비와 외부연구과제인건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1%이상 ~ 2%이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를 합한 금액

※ 안전관리비 집행 중 예산 전용·추경·예비비 등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한 금액은 예산액에 포함

【등급별 실험·실습실 수】 :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안전등급 현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항에 따른 실험·실습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연구실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닌 예체능 및 기타 실험·실습실 안전등급 현황은 「대학 학부·과(전공)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 업무지침」에 따른 예술 및 체육 계열의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과학기술분야 ‘등급별 실험·실습실 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실험·실습실의 경우 법 제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부여한 안전등급별로 연구실수를 작성하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등급별 실험·실습실 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 조치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을 대상으로 하되, 일반 실기실은 제외하고, 아래 표(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상태) 기준으로 안전등급 부여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상태	
1	·실습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3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4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5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사고건수】 : 실험·실습 활동 중 급격하고 우연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배상·보상금을 청구한 건수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사고보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사고의 통보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대학 자체적으로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청구 건수

【보험(공제)가입금액】 : 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가입)에 따라 가입한 보험(공제)으로서 사망/후유장해, 부상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된 최대 보상 한도 금액

■ 참고사항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4-파-2. 시설 안전관리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10월

【공시내용】 : 시설 안전관리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 5. 1.~2019. 4. 30., 단, 소방 안전관리는 2018학년도 기준)

(1) 안전관리 담당 부서명 (팀명칭)	(2) 건물 안전점검과 점검결과 등급 및 위험시설 해소 실적												(3) 소방 안전관리						
	시설 안전점검 현황			40년 이상 건물 정밀점검 현황 (단위 : 동, %)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100㎡이상 건물) (단위 : 동)						안전등급 미지정대상 (100㎡미만)	D·E등급 건물 해소 실적(단위 : 동)			화재 발생 건수 (단위: 건)	기숙사 (소방)교육·훈련 (단위 : 회, 인)		
	건명	점검 기간	대상 건물 수	40년 이상 정밀점검 대상 건물 수	최근 4년 이내 정밀점검 건물 건물 수	비율	구분	A등급 (우수)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미흡)		E등급 (불량)	계	대상 건물 수		해소 건물 수	해소 비율 (%)	입사현원
							40년 이상												
							40년 미만												
							계												

■ 작성지침

(1) 시설 안전관리 담당 부서명(팀명칭)(기준일 : 2019. 4. 30.) : 부서명을 기재하고 하단 괄호() 안에 팀의 명칭을 기재
예시 시설관리과(안전팀), 총무과(시설팀), 교무과(시설팀)....등

(2) 건물 안전점검과 점검결과 등급 및 위험시설 해소 실적

【시설 안전점검 현황】 : 2018. 5. 1.~2019. 4. 30. 기간 중에 교육시설(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3건 작성(3건 이상인 경우 3건, 3건 미만인 경우 모두), 대상건물 수를 각 점검 시기별 작성

※ 시설 안전점검 실시 시작일이 2018.5.1. ~ 2019.4.30. 기간 중에 있다면 연계

예시

안전점검	
건명	점검기간
안전점검	'18.06.01.~06.30.
겨울철 안전점검	'18.11.01.~11.30.
해빙기 안전점검	'19.02.26.~03.27.

40년 이상 건물 정밀점검 현황】 : 2019. 4. 30. 기준으로 40년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작성

※ 최근 4년 이내(2015년~2019년 4월 30일) 기간 중에 정밀점검을 실시한 건물 수를 공시

※ 점검대상 시설 : 건축물 준공일자 또는 자체 준공검사를 기준으로 4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교사시설, 체육관, 강당, 기숙사, 급식실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 100㎡ 이상, 2019. 4. 30. 기준으로 최종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한 등급으로 작성

※ 40년 이상 건축물과 40년 미만 건축물로 구분하되, 건물 동수(동)로 작성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의2 결과 등급 기준 적용(점검 등급이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는 경우 양호=A 또는 B, 보통=C, 불량=D 또는 E)

※ 교육부 소속 국립대학,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D·E등급은 교육부 재난 위험시설 심사결과 승인된 경우만 공시

※ 타 부처 국립대학 및 법인의 경우, D·E 또는 불량 등급은 각 소관부처에서 최종 심의가 완료된 등급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을 입력

※ 사립대학 및 기타 대학의 경우, D·E등급 또는 불량 등급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등급을 입력

※ 자체 정기점검에서 D·E등급 또는 불량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이나 부처 최종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C등급으로 공시

안전점검 결과 등급 기준

	상태	평가(조치)기준
A등급 (우수)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 안전시설	이상이 없는 시설
B등급 (양호)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등급 (보통)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D등급 (미흡)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
E등급 (불량)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안전등급 미지정 대상】 : 100㎡ 미만, 2019. 4. 30. 기준으로 40년 이상 건물과 40년 미만 건축물로 구분하되, 건물 동수(동)로 작성(등급없음)

【DE등급 건물 해소실적】 : 2018. 5. 1. ~ 2019. 4. 30. 기준으로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인 건물에 대해 작성

※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E등급인 건물 수와 일치 하도록 작성

※ 해소 건물 수는 2019. 4. 30.까지 철거하거나 보수하여 등급이 상향 조정된 경우 또는 철거, 보수, 완료 등으로 없어진 경우만 해당

(3) 소방 안전관리(자료기준일 : 2018학년도)

【화재발생건수】 : 대학 내 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으로 소방서 출동 기록이 있는 화재를 대상으로 하되, 자체 진화하고 청소만으로 해결된 경미한 화재는 제외

【기숙사 소방 교육훈련】 : 재학생이 소방훈련과 교육에 참여한 실적으로, 자체 보관(2년)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작성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참고로 작성

【입사현원】 :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소방 교육훈련 해당일의 입사 학생 현원과 일치하도록 작성

【1회당 참여인원】 : 소방교육훈련 참여 연 인원 / 교육훈련 횟수

■ 참고사항

○ 시설 안전관리 현황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4-파-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10월

[공시내용] : 대학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공시양식]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정보보호팀의 제출 양식을 따름

[공시방법]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19년)

종합	수준진단 등급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 작성지침

【정보보호 수준진단 관련 근거】 : 정보보안 수준진단(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5조(수준진단), 76조(자체진단), 77조(현장실사)),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제33조(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에 의거하여 대학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실시 결과

【종합】 : (정보보안 점수+개인정보보호 점수)/2 = 평균점수에 대한 등급

※ 한 개 분야만 실시하는 등 평균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로 표현

【정보보안】 : 당해연도 대학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점수에 대한 등급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ISMS-P) 획득 시 ISMS(범위, 유효기간)으로 표기

【개인정보보호】 : 당해연도 대학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에 대한 등급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획득 시 ISMS-P(범위, 유효기간)으로 표기

【작성방법】 정보보호 수준진단 관련 실시 현황 작성 방법

- “수준진단 미실시” : 당해 연도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미실시
- “미흡” :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70점 미만
- “보통” :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70점 이상 ~ 80점 미만
- “양호” :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80점 이상

- “ISMS(, 유효기간)” : ISMS 또는 ISMS-P 인증을 받은 경우
-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에 대학이 포함됨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 경우 표기 필요
- ※ 작성 예) ISMS(학사, ~2020. 12. 31), ISMS-P(학사, ~2020. 12. 31)

■ 참고사항

- 수준진단 절차 : 대학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자체진단 후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정보보호팀의 현장 확인
- 수준진단 횟수 : 연 1회
- 수준진단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 단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수준진단 자가점검 결과를 제출한 대학 포함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명시된 고등교육기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 :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학위과정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는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 종합관리시스템에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14-파-4. 폭력예방교육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19년 10월

[공시내용] : 2018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은 작성지침 참조)

	구분	기관장 참석 여부 (O/X)	교원			직원 및 조교			재학생		
			교육대상(명)	참여인원(명)	참여율(%)	교육대상(명)	참여인원(명)	참여율(%)	교육대상(명)	참여인원(명)	참여율(%)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 작성지침

[성희롱 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2018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018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018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018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기관장 참석 여부(O/X)] : 참석 여부를 O/X로 표시

※ 분교 및 캠퍼스의 경우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참석 여부를 표시

[교원-교육대상] : 2018. 4. 1. 기준 기관장을 포함, 대학에 재직 중인 전체 교원 수

※ 전임 및 비전임 교원, 대학원 소속 교원 포함 전체 교원

※ <6-가-1> 항목의 교원 조사대상을 준용하되, 휴직교원은 제외

교원-참여인원 : 교육대상 중 2018. 1. 1. ~ 2018. 12. 31. 동안 교육에 참여한 교원 수

【직원 및 조교-교육대상】 : 2018. 4. 1. 기준 대학에 재직 중인 전체 직원 및 조교의 수

※ 비정규직, 인턴, 사회복지무원, 무기계약·기간제·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 등 모두 포함

※ 휴직직원, 공로연수자 제외

【직원 및 조교-참여인원】 : 교육대상 중 2018. 1. 1. ~ 2018. 12. 31. 동안 교육에 참여한 직원 및 조교의 수

【재학생-교육대상】 : 2018. 4. 1. 기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재학생-참여인원】 : 교육대상 중 2018. 1. 1. ~ 2018. 12. 31. 동안 교육에 참여한 재학생

○ 폭력 예방교육 대상 및 세부 이행사항은 「2018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여성가족부)를 준용함

○ 교육 인정 범위

-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일반강사에 의한 교육, 내부직원에 의한 교육, 사이버 교육, 시청각 교육 등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기관장 및 전 교직원은 교육의 시작과 끝을 함께해야 이수한 것으로 봄

-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였을 경우 한 번이라도 참석하였다면 참여인원 수는 1인으로 입력(참여인원 수는 교육대상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하여 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하며, 통합교육에 대한 명확한 강의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교육을 실시하여 각 유형별 예방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 통합교육 강의계획서 증빙 시, 각 유형별 예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참고

「2018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여성가족부)에 따른 교육 방법

1)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에 등록·위촉된 전문강사(강사양성 협력기관 위촉강사 포함)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보건교사 또는 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에 의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가정교사 및 생활부장 교사에 의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 대학 내 양성평등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 중인 교육과목의 전임교원 및 대학 성평등상담센터장 등 대학 내 양성평등을 위한 기관의 장(대표 또는 최종책임자)에 의한 예방교육(단, 외부기관이 아닌 대학 내 교육 시에만 인정)

※ 대학성평등상담원은 전문강사 양성 특별과정 이수 시 전문강사로 인정

- * (강사 1인당 교육 대상 규모) 교육과정(과목)의 특성 및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강사와 학습자간 및 학습자 상호간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토론식 교육 권장
- 교육 후 참여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

2) 일반강사에 의한 교육

- 전문강사로 인정되지 않는 모든 외부 초청 강사
 -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보건교사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가정교사 및 생활부장 교사에 의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 토론, 세미나, 연극(인형극 포함), 뮤지컬 등 성인지력(폭력민감성) 제고 및 폭력예방 관련 공연에 의한 교육방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일반강사와 동일한 교육방법으로 인정
- ※ 일시 및 장소, 참여자 명단, 토론·세미나 등의 주제를 적시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품의서 또는 이행결과서 제출 시 교육으로 인정
-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하며 현장점검을 실시

< 제고 및 폭력예방 관련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 >

조직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및 폭력예방 인식 제고 등 예방교육과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경우 일반강사에 의한 교육방법과 동일하게 인정

적합성 여부 체크리스트	
내용 방법	1. 양성평등 및 인권 가치에 부합하는가
	2. 양성평등 및 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내용구성으로 타당한가
	3.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효용	4. 폭력을 허용하는 편견 깨기 및 예방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5. 폭력예방 실천 등 행동변화 및 조직의 폭력예방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는가

3) 내부직원에 의한 교육

- 소속직원이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PPT, 동영상 등 시청각교구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 훈시 등 단순고지와의 차이점은 자체 예방지침에 대한 구체적 안내 등 논리구조를 갖춘 교육자료 및 담당(책임)자에 의한다는 점이며, 교육자료 및 교육이수 여부 등이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

4) 사이버 교육

-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한 교수내용 전달, 학습자의 활동 참여, 온라인 평가 등을 통한 교육 성취도 달성 등 쌍방향 소통에 기초한 원격교육 프로그램 편성에 초점
- ※ 사이버교육은 학습자 개별 ID로 학습활동(평가, 상호작용, 진도율 등)이 포함된 개별 이수 확인이 가능한 교육으로, 교육 참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과정 운영 가능

5) 시청각 교육 등 기타

- 영상물, 텔레비전 등 교육매체를 주로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

- 해당 동영상 자료를 기관 내 시스템에 탑재하여 일방향적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이버 교육'이 아닌 '시청각교육(집합)'으로 인정함

※ 단, 교육실시 등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으로 인정함

※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 교육자료실”의 영상물 및 간행물 활용 권장

■ 참고사항

폭력예방교육 현황은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2020년 폭력예방교육 현황의 학생은 학부생, 대학원생으로 구분하여 공시할 예정임

대학원용 작성 지침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수시(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양식】 : 제목과 목차 및 최종개정본의 시행일을 명시한 학교의 자체 양식

【공시방법】 : PDF 파일 또는 접근 가능한 URL 링크 중 선택하여 공시하되(연중), 12월 말 수시항목 완료 공문 제출 시 최종 PDF 파일 모두 업로드

■ 작성지침

【학교규칙】 : ① 학교 설립 시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한 학교규칙 (예 : 「고등교육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제2조 등)

②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교규칙 시행세칙을 포함

【학교규칙 외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학위수여, 졸업자격, 성적처리, 학점인정, 복수전공이수, 부전공이수, 복수학위제운영, 편입·전과규정 등 학교규칙에서 위임된 각종 규정

【연구윤리규정】 : 대학 내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학교규칙(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대학 등의 조치)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 규정 등)

【시행일】 : 학칙에 명시된 최종개정본의 시행일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URL 링크 시, 위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내용 변경(PDF, URL 링크) 시, 시행일 및 개정일 입력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가.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2-가.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2-가-1.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4월

【공시내용】 : 2018년 학과별 학기별 성적평가 결과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매 학기별 최종성적 산출 시점)

단과대학	학과(전공)	구분	학과특성	학기	성적인정학생총수	학과(전공)별 평점평균	만점평점	학과(전공)별 백분율점수 평균	백분율점수구간	학생 수	비율
									95점 이상~100점 이하		
									90점 이상~95점 미만		
									85점 이상~90점 미만		
									80점 이상~85점 미만		
									75점 이상~80점 미만		
									70점 이상~75점 미만		
									65점 이상~70점 미만		
									60점 이상~65점 미만		
									60점 미만		

■ 작성지침

【학기】 : 각 학교의 학사규정에 따른 연간 운영되는 정규학기 단위이며, 계절학기는 입력에서 제외(대학원의 이수학기가 아님)

【대상학생】 : 본교에 학적을 둔 정규 학위과정 학생(외국인 학생 포함)의 성적만 입력함. 시간제학생,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연수생) 등 비학위과정이나 본교에 학적을 두지 않은 학생의 성적은 입력에서 제외

※ 타 대학과 학점교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생이 소속된 대학에만 성적을 기입

본교 학생이 외국대학교 학점교류 등으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성적 인정 시점이 각 학기별 최종성적 산출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입력에서 제외

【성적인정학생총수】 : 2018년 학기별(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최종성적 산출 시 평점평균을 획득한 전 학생 수의 총합

※ 석박사 구분 없이 학생의 소속기준으로 성적을 취득한 학생수를 입력함

- 타 대학교 학점교류를 통해 학점을 부여받은 경우, 학생이 소속된 대학에만 성적을 기입(단, 성적 인정 시점이 각 학기별 최종성적 산출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입력에서 제외)

※ 해당 학기에 Pass/Fail과목만을 수강하여 평점평균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제외

【학과(전공)별 평점평균】 : 각 학과(전공)별 성적인정학생 평점평균의 평균

※ 산식 : 학과(전공)별 성적인정학생 평점평균의 합/학과(전공)별 성적인정학생 수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만점평점】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에 자료 입력 시, 2-가-2에서 대학원별로 4.0/4.3/4.5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반영됨

【학과(전공)별 백분율점수 평균】 : 각 학과(전공)별 성적인정학생 학점당 백분율점수의 평균

※ 각 성적인정학생의 학점당 백분율점수는 학교 자체의 백분율점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계산

※ 산식 : 학과(전공)별 성적인정학생 학점당 백분율점수의 합/학과(전공)별 성적인정학생 수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백분율점수구간】 : 9개로 분류한 백분율점수구간에 각 성적인정학생의 학점당 백분율점수를 학생 수와 비율로 표시

【비율(%)】 : (해당 백분율점수구간 성적인정학생 수/성적인정학생총수) × 100,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표시

예시

< 준비하는 원자료(raw data)>

A대학교는 평점만점을 4.5로 규정하며, 학생의 학점당 백분율점수를 구할 때에는 평점평균을 학교의 자체 백분율 산출식을 적용하여 계산

1. A대학교 백분율점수 산식

$$=(\text{평점평균} \times 11.4285) + 48.5714$$

2. 성적인정학생별 평점평균 산출 원자료

학과명	학기	성적인정학생명	학기별 평점평균(b/a)	백분율점수(환산식 적용)
xx	1	김OO	4.25	97.14
		이OO	4.00	94.29
		박OO	3.75	91.43
		최OO	3.63	90.06

< 적용 >

(전공)	구분	학과특성	학기	성적인정학생총수	학과(전공)별 평점평균	학과(전공)별 백분율점수 평균	백분율점수구간		학생 수	비율
xx	주간	일반과정	1	4	3.91 (=(각 성적인정학생의 평점평균 합/4))	93.23 (=(각 성적인정학생의 백분율점수 합/4))	95점 이상~100점 이하	1	25.0	
							90점 이상~95점 미만	3	75.0	
							85점 이상~90점 미만	0	0	
							80점 이상~85점 미만	0	0	
							75점 이상~80점 미만	0	0	
							70점 이상~75점 미만	0	0	
							65점 이상~70점 미만	0	0	
							60점 이상~65점 미만	0	0	
60점 미만	0	0								

■ 참고사항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2-가-2. 졸업생의 졸업성적 분포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4월

공시내용 : 2018년 8월 및 2019년 2월 학위취득자의 졸업성적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년 8월 및 2019년 2월)

단과대학	학과(전공)명	구분	학과특성	졸업자수	학과(전공)별 졸업평점평균	만점평점	학과(전공)별 졸업 백분율점수 평균	백분율점수구간	학생 수	비율
								95점 이상~100점 이하		
								90점 이상~95점 미만		
								85점 이상~90점 미만		
								80점 이상~85점 미만		
								75점 이상~80점 미만		
								70점 이상~75점 미만		
								65점 이상~70점 미만		
								60점 이상~65점 미만		
								60점 미만		

■ 검증사항

학위취득자 : <5-가>의 학위취득자수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학위취득자 :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대학원별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득자수

※ 외국인 유학생 중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 등은 입력에서 제외

학과(전공)별 졸업평점평균 : 각 학과(전공)별 학위취득자 평점평균의 평균

※ 산식 : 학과(전공)별 학위취득자 졸업평점평균의 합/학과(전공)별 학위취득자 수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만점평점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에 자료 입력 시, 대학원별로 4.0/4.3/4.5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반영됨

학과(전공)별 졸업 백분율점수 평균 : 각 학과(전공)별 학위취득자 학점당 백분율점수의 평균

- ※ 각 학위취득자의 학점당 백분율점수는 학교 자체의 백분율점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계산
- ※ 산식 : 학과(전공)별 학위취득자 학점당 백분율점수의 합/학과(전공)별 학위취득자 수
-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백분율점수구간】 : 9개로 분류한 백분율점수구간에 각 졸업자의 학점당 백분율점수를 학생 수와 비율로 표시

【비율(%)】 : (해당 백분율점수구간 학위취득자 수/총 학위취득자 수)×100,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표시

예시

< 준비하는 원자료(raw data)>

A대학교는 평점만점을 4.5로 규정하며, 학생의 학점당 백분율점수를 구할 때에는 평점평균을 학교의 자체 백분 산출식을 적용하여 계산

1. A대학교 백분율점수 산식

$$=(\text{평점평균} \times 11.4285) + 48.5714$$

2. 졸업자별 평점평균 산출 원자료

학과명	졸업자명	졸업평점평균(b/a)	백분율점수(환산식 적용)
xx	김OO	3.86	92.69
	이OO	4.44	99.31
	박OO	4.46	99.54
	최OO	2.29	74.74
	정OO	3.03	83.20

<입력장표 적용>

학과(전공)	구분	학과특성	학위취득자수	학과(전공)별 졸업평점평균	학과(전공)별 졸업 백분율점수 평균	백분율점수구간	학생 수	비율
xx학과	주간	일반과정	5	3.62 (=(각 졸업자의 졸업평점평균 합/5))	89.90 (=(각 졸업자의 백분율점수 합/5))	95점 이상~100점 이하	2	40
						90점 이상~95점 미만	1	20
						85점 이상~90점 미만	0	0
						80점 이상~85점 미만	1	20
						75점 이상~80점 미만	0	0
						70점 이상~75점 미만	1	20
						65점 이상~70점 미만	0	0
						60점 이상~65점 미만	0	0
						60점 미만	0	0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3-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3-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3-가-1. 신입생 모집요강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수시(모집요강 확정 시 30일 이내공시, 모집요강 변경 시 7일 이내 재공시)

※ 확정 : 대학에서 학생 모집을 위하여 모집요강이 최초 공표된 시기

※ 변경 : 최초 모집요강 공표 이후 수정 사항이 발생한 시기

【공시내용】 : 당해연도에 확정된 입학 안내 등 대학원 모집요강

【공시양식】 : 학교의 자체 양식

【공시방법】 : PDF 파일 또는 접근 가능한 URL 링크 중 선택하여 공시하되(연중), 12월 말 수시항목 완료 공문 제출 시 최종 PDF 파일 모두 업로드

■ 작성지침

【모집요강】 :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학기에 전형을 실시할 예정인 학과(전공)별 모집요강 (학과(전공)입학정원, 지원자격 등을 포함)

※ 외국인 유학생, 계약학과, 산업체위탁과정 등 신입생 선발에 대한 모든 모집요강을 공시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URL 링크 시, 학교의 입학사이트 메인페이지 등이 아닌 모집요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어야 함

3-가-2. 편입생 모집요강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수시(모집요강 확정 시 30일 이내공시, 모집요강 변경 시 7일 이내 재공시)

※ 확정 : 대학에서 학생 모집을 위하여 모집요강이 최초 공표된 시기

※ 변경 : 최초 모집요강 공표 이후 수정 사항이 발생한 시기

【공시내용】 : 당해연도에 확정된 대학원 편입생 모집요강

【공시양식】 : 학교의 자체 양식

【공시방법】 : PDF 파일 또는 접근 가능한 URL 링크 중 선택하여 공시하되(연중), 12월 말 수시항목 완료 공문 제출 시 최종 PDF 파일 모두 업로드

■ 작성지침

【모집요강】 : 편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전형을 실시하였거나 예정인 학과(전공)별 모집요강(지원자격,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방법, 전형일정, 지원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

※ 외국인 유학생, 계약학과, 산업체위탁과정 등 편입생 선발에 대한 모든 모집요강을 공시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URL 링크 시, 학교의 입학사이트 메인페이지 등이 아닌 모집요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어야 함

4. 총원을,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4-다. 신입생 총원 현황

4-라. 학생 총원 현황(편입학 포함)

4-마. 재적 학생 현황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4-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9년 신입생 충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학위과정	입학정원(A)	지원자				입학자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B/A)×100			
		계	정원내		정원외		계	정원내(B)			정원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총계													

■ 작성지침

【입학정원】 : 학칙에서 정한 2019년도 신입생의 입학정원

※ 입학정원을 계열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당해연도 상반기에 입학한 4.1 기준 정원내 재학생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입력

【지원자】 : 2018년 9월(후기)과 2019년 3월(전기)의 신입생 전형에 지원한 모든 지원자

【입학자】 : 2018년 9월(후기)과 2019년 3월(전기)의 모든 입학자 (연구생은 입학자에서 제외)

※ 입학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한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 (정원내 입학자수/입학정원)×100

■ 참고사항

- 신입생 충원 현황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 10. 1., 2019. 4. 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4-라. 학생 총원 현황 (편입학 포함)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9년 계열별 재학생 총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 4. 1.)

계열	학생정원(A)	학생 모집정지 인원(B)	재학생							재학생 총원율(%) {C/(A-B)}×100	정원내 재학생 총원율(%) {D/(A-B)}×100
			계(C)	정원내(D)			정원외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합계											

■ 검증사항

【재학생 합계】 : <4-마> 재학생(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계열】 : 대학설립운영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계열 구분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1>에 의해 분류

	포함되는 소계열	비고
·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 등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통합학과 운영으로 계열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최초 전공 또는 계열구분 연도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류

② 기술대학 :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1>에 의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비고
사회실무계열 자연공학계열	경영관광유통보험 및 실용예술 등 해양농학수산이학 및 공학 등	

【학생정원=입학정원 자연인수 계】 :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은 다음과 같음

구분	학생정원 산출공식	
편제가 완성된 대학원	4학기제	2019학년도 입학정원+2018학년도 입학정원
	5학기제	2019학년도 입학정원+2018학년도 입학정원+2017학년도 입학정원의 1/2
	6학기제	2019학년도 입학정원+2018학년도 입학정원+2017학년도 입학정원
	8학기제	2019학년도 입학정원+2018학년도 입학정원+2017학년도 입학정원+2016학년도 입학정원
편제가 미완성된 대학원	1~2학기(1차년도)	2019학년도 입학정원
	3~4학기(2차년도)	2019학년도 입학정원+2018학년도 입학정원
	5~6학기(3차년도)	2019학년도 입학정원+2018학년도 입학정원+2017학년도 입학정원

- ※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구분할 수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이 입학정원을 산정하여 학생정원 계산
- 당해연도 : 상반기에 입학한 4. 1. 기준 정원내 재학생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입력
 - 2015년 ~ : 각 해당연도에 입학한 10. 1. 기준 정원내 재학생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입력
 - ~ 2014년 : 각 해당연도 4. 1. 기준 재학생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입력

【재학생】 : 2019. 4. 1. 현재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대학원 재학생

【학생모집정지인원】 : 학생정원이 산출되는 학년도의 계열별 입학정원에서 행정처분으로 학생 모집이 정지된 인원

【재학생 충원율(%)】 : {재학생 수/(학생정원-학생 모집정지 인원)}×100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 {정원내 재학생 수/(학생정원-학생 모집정지 인원)}×100

■ 참고사항

- 학생 층위 현황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9. 4. 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입니다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4-바-1. 외국인 유학생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9년 국가별 계열별 외국인 학생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 4. 1.)

연도	국가	계 (G=D+E+F)	학위과정(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계(D =A+B+C)
			소계 (A)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예·체능 계열	의학 계열	소계 (B)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예·체능 계열	의학 계열	소계 (C)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예·체능 계열	의학 계열	
합계																					

기준 연도	국가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					언어능력			언어능력 충족 학생비율(% (H/D)×100	기숙사 수용 여부						
		소계 (E)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소계(F)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 연수생	총계 (H)	TOPIK 4급이상 (예체능 3급) 이상 학생 수	영어트랙 TOEFL 530수준 이상 학생 수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계 (I)	수용	미수용	계 (J)	수용	미수용	
합계																					

■ 검증사항

○ [기숙사 수용 여부 - 학위과정] 계(I)는 학위과정 계(D)와 일치해야 함

[기숙사 수용 여부 - 비학위과정] 계(J)는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소계(E), 연수과정 소계(F)의 합과 일치해야 함

○ 한명의 학생이 두 개 이상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한쪽에만 입력함

■ 작성지침

[국가] : 재적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수를 출신 국가별로 입력(순수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국적 재외동포도 포함)

※ 외국국적 재외동포의 국가 : 재외○○동포

※ 연변(조선)족 : 재외중국동포

※ 북한이탈자 : 외국인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입력

[학위과정(대학원)] : ① 2019. 4. 1. 현재 해당 대학에 재적 중인 외국인 정규 학위과정 유학생, 재학생 및 휴학생 모두 입력. 단,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은 제외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2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동향의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를 포함하되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및 편입생 등을 포함

[계열] : 대학설립운영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계열 구분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1>에 의해 분류

	포함되는 소계열	비고
·사회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자연과학계열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계열	공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계열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 통합학과 운영으로 계열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최초 전공 또는 계열구분 연도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류

② 기술대학 :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1>에 의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비고
사회실무계열	경영관광유통보험 및 실용예술 등	
자연공학계열	해양농학수산이학 및 공학 등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과 협약에 의하여 학위과정의 교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외국인 유학생

[연수과정 - 어학연수생] : 대학부설 어학원 등 비학위과정(Non-degree Program)인 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여 수학하고 있지만 학점은 취득하지 않는 유학생

[연수과정 - 교환학생] :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해서 상호 학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연수과정 - 방문학생] : 학교간의 협정이 아닌 개인의 해당대학 방문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연수과정 - 기타 연수생] : 정규학위과정 학생,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을 제외한 기타 연수생

- 언어능력 - TOPIK 4급 이상(예체능 3급 이상) 학생 수】 : 학위과정생(대학원) 중, TOPIK 시험에 응시하여 4~6급(예체능계의 경우 3~6급)의 자격을 취득한 학생 수
- 【언어능력 - 영어트랙 TOEFL 530수준 이상 학생 수】 :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영어 능력 TOEFL 530점(또는 IBT 71, IELTS 5.5, TEPS 600) 이상 취득한 학생 수. 단, TOEIC 성적은 해당되지 않음
- ※ 1인의 학생이 TOPIK 4급 이상(예체능 3급 이상) 자격과 영어트랙 TOEFL 530수준 이상일 경우, 둘 중 하나에만 입력
- 【언어능력 충족 학생비율(%)】 : 학위과정생(대학) 중, TOPIK 4급 이상 (예체능계의 경우 3급 이상), 영어 능력 TOEFL 530점(또는 IBT 71, IELTS 5.5, TEPS 600) 이상 획득한 학생 비율, 단 TOEIC 성적은 해당되지 않음. (언어능력 총계 / 학위과정(대학) 소계)×100
- 【기숙사 수용 여부 - 학위과정(수용/미수용)】 : 2019.4.1. 현재 해당 대학에 재적 중인 외국인 학위과정 유학생
- 【기숙사 수용 여부 - 비학위과정(수용/미수용)】 : 2019.4.1. 현재 해당 대학에 재적 중인 외국인 비학위과정 유학생
- ※사이버 및 원격대학은 학제특성을 고려하여 기숙사 수용여부, 언어능력은 입력하지 않음

■ 참고사항

- 외국인 유학생 현황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9. 4. 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4-바-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8년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 3. 1. ~ 2019. 2. 28., 재적학생 : 2018. 4. 1.)

국가	외국인 재적학생									중도탈락 학생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B/A)×100		
	총계(A)	학위과정(대학원)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어학 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 연수생	총계(B)	학위과정(대학원)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어학 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 연수생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합계																			

■ 검증사항

- **【외국인 재적학생 총계】** : 2018년 <4-바-1> 외국인 유학생 총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한명의 학생이 두 개 이상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한쪽에만 입력함

■ 작성지침

【국가】 : 재적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수를 출신 국가별로 입력(순수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국적 재외동포도 포함)

※ 외국국적 재외동포의 국가 : 재외○○동포

※ 연변(조선)족 : 재외중국동포

※ 북한이탈자 : 외국인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입력

【학위과정(대학원)】 : ① 2018. 4. 1. 현재 해당 대학에 재적 중인 외국인 정규 학위과정 유학생, 재학생 및 휴학생 모두 입력. 단,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은 제외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2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동향의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를 포함하되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및 편입생 등을 포함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과 협약에 의하여 학위과정의 교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 : 대학부설 어학원 등 비학위과정(Non-degree Program)인 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여 수학하고 있지만 학점은 취득하지 않는 유학생

【교환학생】 :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해서 1:1로 상호 학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방문학생】 : 학교간의 협정이 아닌 개인의 해당대학 방문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기타 연수생】 : 정규학위과정(대학원)생,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을 제외한 기타 연수생

【중도탈락 학생】 : 2018. 3. 1. ~ 2019. 2. 28.까지 제적생과 자퇴생의 합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 (중도탈락 학생 수/외국인 재적학생 수) × 100

※ 외국인 재적학생 수 자료기준일(2018. 4. 1.)과 중도탈락 학생 수 자료기준일(2018. 3. 1. ~ 2019. 2. 28.)의 차이로 인하여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예시 A국가의 유학생 중 2018. 4. 1. 기준 재적학생은 5명, 2018년 9월에 입학했다가 중도탈락한 학생이 7명일 경우, 중도탈락학생 비율은 7명/5명×100=140%

■ **참고사항**

- 외국인 유학생 재적학생 수는 2018년도 <4-바-1>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연계 활용할 예정임
- 중도탈락 학생 현황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2018년 3월 자료는 '2018년 상반기'에 기 제출 자료 활용
 - 2018년 4월 ~ 2018년 9월 자료는 '2018년 하반기'에 기 제출 자료 활용
 - 2018년 10월 ~ 2019년 2월 자료는 '2019년 상반기'에 기 제출 자료 활용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기타] : 위에 열거한 사유 외의 내용으로 제적된 학생 수

【중도탈락학생비율(%)】 : (중도탈락 학생 수/재적학생 수) × 100

※ 재적학생 수 자료기준일(2018. 4. 1.)과 중도탈락 학생 수 자료기준일(2018. 3. 1. ~ 2019. 2. 28.)의 차이로 인하여 중도탈락학생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예시 A학과 3월 입학생 20명 중 12명이 3월에 중도탈락하여 2018. 4. 1. 기준 재적학생이 8명일 경우, 중도탈락학생비율은 12명/8명×100=150%

■ 참고사항

- 재적학생 수는 2018년도 <4-마> 재적학생 현황을 연계 활용할 예정임
- 중도탈락 학생 현황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2018년 3월 자료는 '2018년 상반기'에 기 제출 자료 활용
 - 2018년 4월 ~ 2018년 9월 자료는 '2018년 하반기'에 기 제출 자료 활용
 - 2018년 10월 ~ 2019년 2월 자료는 '2019년 상반기'에 기 제출 자료 활용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5-가. 졸업생 현황

5-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5-가. 졸업생 현황

5-가-1. 졸업생 현황(일반대학원)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학과(전공)별 졸업생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 6. 1.)

졸업연도	단과대학	학과(전공)	구분	학과특성	석사학위					박사학위					
					입학연도	취득자			졸업소요기간	입학연도	취득자			졸업소요기간	
						계	남	여			계	남	여		
2018년 8월															
2019년 2월															
합계															

■ 검증사항

[학과별 학위취득자 합계(남, 여)] : <2-가-2>의 학위취득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입학연도] :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학위취득자의 입학연도(3월 또는 9월 학기 포함) 기입 (예 : 2005년 9월)

[학위취득자] : ①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대학원별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득자 수

② 석·박사통합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석사학위'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박사학위'로 구분

외국인 유학생 중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 등은 입력에서 제외

【졸업소요기간】 : (졸업연도-입학연도), 각 연도별 졸업생의 졸업소요기간을 “○○년 ○○개월”로 산출하여 기입, 졸업소요기간의 소계와 합계에는 평균치를 기입 (“○○년 ○○개월”로 기입)

※ 학과명칭 변경, 신설, 폐과, 학부제 등으로 인해 졸업자가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비교란에 특이사항을 명기

■ 참고사항

- 졸업생 현황(일반대학원)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5-가-2. 졸업생 현황(전문대학원)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학과(전공)별 졸업생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년 8월 학위취득자 2018. 10. 1., 2019년 2월 학위취득자 2019. 4. 1.)

	졸업연도	단과대학	학과 (전공)	구분	학과특성	석사학위 취득자			박사학위 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2018년 8월										
	2019년 2월										
	합계										

■ 검증사항

【학과별 학위취득자 합계】 : <5-나-2>의 학위취득자(A+C) 합계, <5-다-2>의 석사와 박사학위취득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학위취득자】 : ①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대학원별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득자 수

② 석·박사통합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석사학위'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박사학위'로 구분

※ 외국인 유학생 중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 등은 입력에서 제외

※ 학과명칭 변경, 신설, 폐과, 학부제 등으로 인해 졸업자가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비교란에 특이사항을 명기

■ 참고사항

○ 졸업생 현황(전문대학원)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 10. 1., 2019. 4. 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5-가-3. 졸업생 현황(특수대학원)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학과(전공)별 졸업생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년 8월 학위취득자 2018. 10. 1., 2019년 2월 학위취득자 2019. 4. 1.)

	졸업연도	단과대학	학과 (전공)	구분	학과특성	석사학위 취득자		
						계	남	여
	2018년 8월							
	2019년 2월							
	합계							

■ 검증사항

【학과별 학위취득자 합계】 : <5-나-3>의 학위취득자 합계, <5-다-3>의 학위취득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학위) 취득자】 :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대학원별 석사학위 취득자 수

※ 외국인 유학생 중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 등은 입력에서 제외

※ 학과명칭 변경, 신설, 폐과, 학부제 등으로 인해 졸업자가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비교란에 특이사항을 명기

■ 참고사항

○ 졸업생 현황(특수대학원)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 10. 1., 2019. 4. 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진학자 : ① 2017년 8월과 2018년 2월에 학위를 취득한 학생 중 2018. 12. 31. 기준 대학원대학 및 대학(원) 진학, 편입, 재진학한 자
 ②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으로 진학한 자
 ③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규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2019년 입학허가서를 받은 진학예정자는 진학자로 인정하지 않음

※ 해외 어학연수자, 학점은행제 및 특정 학점인정기관(예 :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 훈련기관, 평생교육원 등)에 입학한 자는 제외

【국내대학원】 : 석·박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내의 대학원에 진학한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을 통해 석·박사 과정에 입학한 경우 ‘국내대학원’ 진학자로 입력

【국외대학원】 : 석·박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기타】 : 학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내·국외 대학에 진학한 자와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내·국외전문대학에 재 진학한 자

【진학률(%)】 : (진학자/학위취득자) × 100

※ 학과명칭 변경, 신설, 폐과, 학부제 등으로 인해 졸업자가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비교란에 특이사항을 명기함

■ 참고사항

- 졸업생 진학 현황(일반대학원)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 12. 3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5-나-2. 졸업생의 진학 현황(전문대학원)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졸업자 중 진학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년 8월 학위취득자 2018. 10. 1., 2019년 2월 학위취득자 2019. 4. 1.)

졸업연도	단과대학	학과 (전공)	구분	학과특성	석사학위			박사학위		
					학위취득자(A)	진학자(B)	진학률(%) (B/A)×100	학위취득자(C)	진학자(D)	진학률(%) (D/C)×100
2018년 8월										
2019년 2월										
합 계										

■ 검증사항

[학과별 학위취득자 합계] : <5-가-2>, <5-다-2>의 석사와 박사학위 취득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학과별 진학자 합계] : <5-다-2>의 학과별 진학자 합계(석사+박사)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학위취득자] : ①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대학원별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득자 수

② 석·박사통합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석사학위'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박사학위'로 구분

③ 학위취득자 = 취업자+진학자+입대자+무직+미상

※ 외국인 유학생 중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 등은 입력에서 제외

[진학자] : ① 2018년 8월 학위취득자는 2018. 10. 1. 기준, 2019년 2월 학위취득자는 2019. 4. 1. 기준 대학원대학 및 대학(원) 진학, 편입, 재 진학한 자

②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으로 진학한 자

③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규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해외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고, 학위 준비과정으로 어학연수 코스에 진학한 자

-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대학원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 해외 어학연수자, 학점은행제 및 특정 학점인정기관(예 :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 훈련기관, 평생교육원 등)에 입학한 자는 제외

【진학률(%)】 : (진학자/학위취득자) × 100

- ※ 학과명칭 변경, 신설, 폐과, 학부제 등으로 인해 졸업자가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비교란에 특이사항을 명기함

■ 참고사항

- 졸업생의 진학 현황(전문대학원)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 10. 1., 2019. 4. 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5-나-3. 졸업생의 진학 현황(특수대학원)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졸업자 중 진학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년 8월 학위취득자 2018. 10. 1., 2019년 2월 학위취득자 2019. 4. 1.)

졸업연도	단과대학	학과 (전공)	구분	학과특성	석사학위		
					학위취득자(A)	진학자(B)	진학률(%) (B/A)×100
2018년 8월							
2019년 2월							
합 계							

■ 검증사항

【학과별 학위취득자 합계】 : <5-가-3>, <5-다-3>의 석사학위 취득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학과별 진학자 합계】 : <5-다-3>의 학과별 진학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학위취득자】 : ①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대학원별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득자 수

② 학위취득자 = 취업자+진학자+입대자+무직+미상

※ 외국인 유학생 중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 등은 입력에서 제외

【진학자】 : ① 2018년 8월 학위취득자는 2018. 10. 1. 기준, 2019년 2월 학위취득자는 2019. 4. 1. 기준 대학원대학 및 대학(원) 진학, 편입, 재 진학한 자

②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으로 진학한 자

③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규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④ 해외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고, 학위 준비과정으로 어학연수 코스에 진학한 자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대학원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해외 어학연수자, 학점은행제 및 특정 학점인정기관(예 :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 훈련기관, 평생교육원 등)에 입학한 자는 제외

【진학률(%)】 : (진학자/학위취득자) × 100

■ 참고사항

- 졸업생의 진학 현황(특수대학원)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 10. 1., 2019. 4. 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5-다-1. 졸업생의 취업 현황(일반대학원)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대상 : 2017년 8월과 2018년 2월 졸업자

공시시기 : 수시(12월)

공시내용 : 2017년 8월과 2018년 2월 졸업자의 취업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조사대상 및 자료기준일 : 2017년 8월과 2018년 2월 졸업자, 2018. 12. 31.)

기준일	단과 대학	학과 (전공)	구분	학과 특성	졸업자 (A)	취업자(B)										진학자 (C)	입대자 (D)	취업 불가능자(E)		외국인 유학생 (F)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 자(G)		기타		미상		취업률(%) [B/(A-(C+D+E+F+G))] ×100
						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		해외 취업자		농림어업 종사자		개인창업 활동 종사자		1인 청(사)업자				프리랜서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8. 12.31.																												
	합계																											

입학 당시 기취업자	교내취업		유지취업률																							
			1차				2차				3차				4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은 본 항목 공시대상에서 제외

■ 검증사항

【졸업자 합계(남, 여)】 : 졸업자는 2018년 <5-가>, <5-나>, 2019년 <5-나>의 졸업자 합계(남, 여)와 반드시 같아야 함

【진학자 합계(남, 여)】 : 진학자는 2019년 <5-나>의 진학자 합계(남, 여)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학과(전공)】 : 2017년 8월과 2018년 2월 졸업생이 있는 모든 학과

【졸업자】 : 2017년 8월과 2018년 2월 졸업자로 학사 등록이 된 자

※ 외국인 유학생 중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 등은 입력에서 제외

【취업자】 : 2017년 8월과 2018년 2월 졸업자 중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건강보험DB연계 취업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건강보험DB를 통해 확인)

※ 단, 교외취업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도 대학의 재정지원[교비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정부재정지원금(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등을 포함한 대학의 모든 회계]으로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아 한시적으로 취업한 졸업자는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음

* 졸업자가 대학으로부터 인건비를 직접 지원받는 경우, 또는 대학이 졸업자의 인건비를 기업체에 지원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함

【해외취업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해외 국가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

【농림어업종사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림어업종사자 정의 :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거하여 농업인확인서 발급이 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용),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어업인용), 어업허가내역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 자료를 제출한 자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졸업 이후부터 조사기준일(2018. 12. 31.)까지 개인작품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자

【1인 창(사)업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국세청DB에서 2018년에 사업자등록 사실과 2018년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665만원 이상이 확인된 자 또는 2018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하는 기술형 창업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정부 창업경진대회 수상한 경우(본선 진출자 이상),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특허 및 실용신안을 보유한 경우, 벤처캐피털, 엔젤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국세청DB에서 2018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4,056,690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자

【진학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 진학, 편입, 재 진학한 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2019년 입학허가서를 받은 진학예정자는 진학자로 인정하지 않음

※ 해외 어학연수자, 학점은행제 및 특정 학점인정기관(예 :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 훈련기관, 평생교육원 등) 입학자는 제외

입대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군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수행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외국인유학생 : 외국국적을 가진 유학생(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으로 진학, 취업 등 졸업 후 상황과 관계없이 졸업자 중 외국인 학생 수를 입력

건강보험직장가입제외대상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자가 아니므로 취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 (의료급여 수급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종교지도자 양성관련학과 졸업자, 경찰공무원 채용 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 후보자 중 훈련생)

기타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취업, 진학, 입대, 취업불가능, 미상, 제외인정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미상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자

취업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해외취업자+농림어업종사자+개인창업활동 종사자+1인(창)사업자+프리랜서)/(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 대상자))] × 100

입학당시 기취업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입학당시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가진 자

교내취업자 :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대학(산학연,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포함)에 취업한 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최저 임금 이상의 월급여(1,352,230원)를 받는 자로서 사업장(학교,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에서 상시 근무하는 자. 이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는 자는 취업자로 불인정

※ 계약만료 이전에 사직한 교내취업자는 사직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직 후 후임자가 없을 경우 취업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유지취업률(%) : 취업통계 조사기준일(2018.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일정기간 경과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유지되고 있는 비율(수시(4회)), (2018. 12. 3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추가조사 시점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2018. 12. 3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100

- 1차 유지취업률 = $\frac{\text{'18년 12월}'\text{'19년 3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text{'18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times 100$
- 2차 유지취업률 = $\frac{\text{'18년 12월}'\text{'19년 3월}'\text{'6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text{'18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times 100$
- 3차 유지취업률 = $\frac{\text{'18년 12월}'\text{'19년 3월}'\text{'6월}'\text{'9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text{'18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times 100$
- 4차 유지취업률 = $\frac{\text{'18년 12월}'\text{'19년 3월}'\text{'6월}'\text{'9월}'\text{'11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text{'18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times 100$

※ 학과명칭 변경, 신설, 폐과, 학부제 등으로 인해 졸업자가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비교란에 특이사항을 명기함

■ 참고사항

○ 졸업생의 취업 현황(일반대학원)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 12. 3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취업자에서 제외되는 자] : 아래와 같은 경우 무직자수로 간주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건강보험시행령 제9조에 의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교내취업자 : 단기 교내 취업자(1년 미만), 교내취업자 중 최저임금 이하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취업자에서 제외
- 해외취업자 : 주15시간미만 전일제 근무자, 단기해외취업(91일 미만) 및 해외연수자 제외

【진학자】 : 2018년 8월과 2019년 2월에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진학상황을 입력하되, 대학원 진학자는 물론, 편입자와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재진학자, 해외유학자를 모두 포함 (진학과 취업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업자로 간주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 협동과정’을 통해 석·박사 과정에 입학한 경우 진학자로 인정함

※ 제외 : ㉠ 해외 어학연수자는 무직임. 그러나 해외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고, 학위 준비과정으로 어학연수 코스에 진학한 자는 진학자로 간주함

㉡ 학점은행체 및 특정 학점인정기관에 등록된 자는 특정 학점 인정 및 취득이 목적이므로 진학자로 인정하지 않음

㉢ 직업전문학교(직업교육훈련기관)로 진학한 자는 진학자로 인정하지 않음

【입대자】 : 조사 기준일(2018. 10. 1., 2019. 4. 1.) 당시 입대자

【미상】 : 조사 기준일(2018. 10. 1., 2019. 4. 1.) 당시 정확한 취업구분을 파악할 수 없는 자

■ 참고사항

- 졸업생의 취업 현황(전문대학원)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 10. 1., 2019. 4. 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5-다-3. 졸업생의 취업 현황(특수대학원)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졸업자 중 취업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년 8월 학위취득자 2018. 10. 1., 2019년 2월 학위취득자 2019. 4. 1.)

졸업연도	단과 대학	학과 (전공)	구분	학과 특성	석사학위							
					학위 취득자	졸업자 현황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외국인유학생	취업불가능자	기타	미상
2018년 8월												
2019년 2월												
합계												

■ 검증사항

【학과별 학위취득자 합계】 : <5-가-3>, <5-나-3>의 석사학위 취득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학과별 진학자 합계】 : <5-나-3>의 학과별 진학자(석사)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학위취득자】 : ①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대학원별 석사학위 취득자수

② 학위취득자 = 취업자+진학자+입대자+무직+미상

※ 외국인 유학생 중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 등은 입력에서 제외

【취업자】 : 2018년 8월 졸업자는 2018. 10. 1. 기준, 2019년 2월 졸업자는 2019. 4. 1. 기준 취업한 자

※ 취업자의 정의 : 조사기준일(2018. 10. 1., 2019. 4. 1.) 당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취업자에서 제외되는 자] : 아래와 같은 경우 무직자수로 포함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건강보험시행령 제9조에 의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교내취업자 : 단기 교내 취업자(1년 미만), 교내취업자 중 최저임금 이하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취업자에서 제외
- 해외취업자 : 주15시간미만 전일제 근무자, 단기해외취업(91일 미만) 및 해외연수자 제외

【진학자】 : 2018년 8월과 2019년 2월에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진학상황을 입력하되, 대학원 진학자는 물론, 편입자와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재진학자, 해외유학자를 모두 포함 (진학과 취업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업자로 간주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 협동과정’을 통해 석·박사 과정에 입학한 경우 진학자로 인정함

※ 제외 : ㉠ 해외 어학연수자는 무직임. 그러나 해외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고, 학위 준비과정으로 어학연수 코스에 진학한 자는 진학자로 간주함

㉡ 학점은행체 및 특정 학점인정기관에 등록된 자는 특정 학점 인정 및 취득이 목적이므로 진학자로 인정하지 않음

㉢ 직업전문학교(직업교육훈련기관)로 진학한 자는 진학자로 인정하지 않음

【입대자】 : 조사 기준일(2018. 10. 1., 2019. 4. 1.) 당시 입대자

【미상】 : 조사 기준일(2018. 10. 1., 2019. 4. 1.) 당시 정확한 취업구분을 파악할 수 없는 자

■ 참고사항

- 졸업생의 취업 현황(특수대학원)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 10. 1., 2019. 4. 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차. 등록금 현황

8-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8-차. 등록금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4월

【공시내용】 : 학과별·학기별 학생 1인당 등록금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년(상반기))

(: 명, 원)

기준연도	단과대학	학과(전공)	구분	학과특성	과정	학기구분	입학정원	입학금(A)	수업료(B)	등록금(D=B)	비고
						1학기		해당없음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학과 평균					
						인문사회계열 평균					
						자연과학계열 평균					
						공학계열 평균					
						예체능계열 평균					
						의학계열 평균					
						학교 평균					

■ 작성지침

입학정원 : 대학원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정원(홀수 학기에 연간정원을 입력)

- ※ 계절제·원격·산업체위탁·특별과정·계약학과·산학협력 취업약정제·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은 제외(단, 총정원 내 입학정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
- ※ 총정원제로 운영하여 학과별 입학정원이 없는 경우 전년도 학과별 재학생 수(4월 1일, 10월 1일 평균) 비율로 안분하여 학과별 예상 입학정원을 산출하여 입력
 - 신설학과의 경우 총정원(정원내)을 신설 학과를 포함한 총 학과 수로 나눈 값을 신설학과에 우선 배정한 후, 잔여 입학정원은 나머지 학과에 전년도 재학생 수 비율로 배정
 - 폐과가 존재하는 경우 입학정원 산정 시 폐지된 학과의 재학생은 제외 후 배정 비율 산정
 - 1학기(2019 입학정원), 3학기(2018 입학정원), 5학기(2017 입학정원)에 각각 산출한 입학정원을 입력
 - 이때 4학기 과정은 입학정원을 1, 3학기에만 입력하고 5학기 과정은 1, 3, 5학기에 입력하며 6학기 이상의 과정의 경우에도 1, 3, 5학기까지만 입력

예시

- 모집정원이 200명이고, A, B, C학과가 있는 대학원의 전년도 학과별 평균 재학생 수가 A학과 10명, B학과 60명, C학과 30명인 경우에 금년도 학과별 예상 입학정원은?
- 1단계 : A학과 10명, B학과 60명, C학과 30명 구성비율에 따라 A학과 10%, B학과 60%, C학과 30%로 안분비율 산정
 - 2단계 : A학과는 모집정원 200명의 10%, B학과는 200명의 60%, C학과는 200명의 30%로 금년도 예상입학정원 산출

※ 총정원제 대학원의 입력 상세 내용(기존/신설/폐지 학과에 따른 입력 방법)은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통계조사 지침 참조

【입학금】 : 학과별 2019년 책정된 학기별 학생 1인당 입학금

【수업료】 : 학과별 2019년 책정된 학기별 학생 1인당 수업료

- 수업료, 등록금은 1~6학기에 각 학기별 금액을 학과 편제에 맞춰 입력

※ 수업료는 해당 학과의 편제에 맞추어 입력하고, 홀수·짝수(1·2학기, 3·4학기) 학기의 수업료가 다른 경우, 수업료의 평균을 홀수·짝수학기에 각각 입력

【등록금】 : 학과별 2019년 책정된 학기별 학생 1인당 등록금

※ 계절제·원격·산업체위탁·특별과정·계약학과·산학협력 취업약정제·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의 입학금, 수업료가 책정된 경우 입학금, 수업료 입력

【학과 평균】 : [전체학기(학기별 등록금 ×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학기 입학정원의 합]

【계열 평균】 : [해당계열 전체학과(학과별 학기별 등록금×학과별 학기별 정원내 입학정원)의 합/해당계열 정원내 입학정원의 합]

【학교 평균】 : [전체학과(학과별 학기별 등록금 ×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비고】 : 학점당 등록금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점당 등록금제”로 기재

■ 참고사항

등록금 현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입니다

- 대학 부설 대학원의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은 학부의 <8-차-1> 장표에 포함되어 공시됨(학부 지침 참고)

수업료 책정 내역

구분		총 신청 학점(A)	총 수강료 수입(B)	학점당 평균액 (C=B/A)
대학 (2018년 기준)	여름학기			
	겨울학기			
대학원 (2018년 기준)	여름학기			
	겨울학기			

- 한국장학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8-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8-카-1.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8-카-1-(1) 입학 전형료 수입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8년 결산 기준 입학 전형료 수입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년 결산)

(: 명, 원)

기준연도	구분	학부			학부 편입	대학원	기타 특수과정*	합계
		소계(A+B)	수시(A)	정시(B)				
	입학전형료 납부인원							
	입학전형료 수입 총액							

*학부, 대학원을 제외한 타 전형(평생교육원, 시간제등록제·특별과정 등 단기과정)

■ 작성지침

[입학전형료 납부인원] : 회계연도 범위 내 입학전형료를 납부한 지원자 수

[입학전형료 수입] : 입학원서대, 일반관리비, 수험료, 전형료, 실기고사료, 논술고사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대학의 입학(편입학 포함)과 관련하여 입시지원자로부터 수수하는 금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상의 가액

※ 사립 대학원대학의 경우 “입학 전형료 수입” 합계 금액은 학교 교비회계 수입 항목의 일부인 “입시수수료수입”과 일치해야 함

※ 단,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입학 전형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시관리비에 포함되었다면 입력에서 모두 제외할 것

■ 참고사항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대학부설대학원의 '입학 전형료 수입 현황' 공시자료는 각 대학원별 입력시스템 화면에 값을 입력하면 추후 대학알리미 대학 장표에 자동 연계되어 각 대학원의 합계가 산출됨

8-카-1-(2) 입학 전형료 지출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8년 결산 기준 입학 전형료 지출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년 결산)

(: 원)

기준연도	내역	학부 신입학			학부 편입학	대학원	기타 특수과정*
		수시	정시	공통(수시·정시)			
	수당	출제수당					
		평가수당					
		감독수당					
		준비·진행수당					
		전형안내 수당					
		회의 수당					
	경비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비					
		여비					
		주차료					
		시설 사용료					
		기타					
		합계					

* 학부, 대학원을 제외한 타 전형(평생교육원, 시간제등록제·특별과정 등 단기과정)

■ 작성지침

입학 전형료 지출 : 입시수당과 입시경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대학의 입학(편입학 포함)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상의 가액

※ 사립대학의 경우 “입학 전형료 지출” 함께 금액은 학교 교비회계 지출 항목의 일부인 “입시관리비”와 일치해야 함

※ 단,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입학 전형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시관리비에 포함되었다면 입력에서 모두 제외할 것

【수당】 :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

【출제 수당】 : 논술 및 실기 등 문제 출제에 따른 비용

【감독 수당】 : 논술 및 실기 등 시험 감독에 따른 비용

【평가 수당】 : 서류, 논술 및 실기 등의 채점 및 평가에 따른 비용

【준비·진행 수당】 : 면접, 논술 및 실기 등 입학전형 준비 및 진행에 따른 비용

【전형안내 수당】 : 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 등 입학전형 홍보에 따른 비용

【회의 수당】 :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의 참석에 따른 비용

【경비】 :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중 수당을 제외한 비용

【홍보비】 :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회의비】 : 입학전형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

【업무위탁 수수료】 : 입학전형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

【인쇄비】 : 입학원서, 모집요강, 안내책자 등 입학전형 관련 인쇄물 제작 등에 드는 비용

【자료 구입비】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자료 구입 비용

【소모품비】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소모품 구입 비용

【공공요금】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우편료 등의 비용

【식비】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식비

【여비】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

【주차료】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주차료

【시설 사용료】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시설 사용료

【기타】 : 위에 속하지 아니한 비용으로 입시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대학 편입학, 대학원, 대학원대학만 입력항목임)

■ 참고사항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대학부설대학원의 '입학 전형료 지출 현황' 공시자료는 각 대학원별 입력시스템 화면에 값을 입력하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계되어 추후 대학알리미 대학 장표에 각 대학원의 합계가 산출됨

8-카-2. 입학전형료 산정 근거[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9~2020학년도 입시수당 산정기준

【공시양식】 : 대학의 자체 양식

【공시방법】 : 입시수당 산정기준을 PDF 파일 형태로 공시

■ 작성지침

【입시수당 산정 기준】 : 입시업무를 수행한 교직원에게 실비변상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산정기준(2019~2020학년도 기준, 2개년도)

- 출제수당, 감독수당, 평가수당, 회의수당 등 입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대학별 자체 기준)을 PDF로 탑재

예시

□ 2019학년도 입시수당 산정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세목	지급금액	비고
출제수당	출제위원장 및 위원	300	1일 지급 기준임
	출제진행요원	150	
감독수당	감독 및 진행수당	70	1일 지급 기준임. 시험시간 및 업무난이도에 따라 차등지급
	외부인사 감독	100	
평가수당	교수	200	1,000자 논술/1일 150매 내외 기준이며, 논술자수 및 매수의 증감에 따라 차등 지급
	직원	100	
	외부교수	250	

□ 2020학년도 입시수당 산정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세목	지급금액	비고
출제수당	출제위원장 및 위원	300	1일 지급 기준임
	출제진행요원	150	
감독수당	감독 및 진행수당	70	1일 지급 기준임. 시험시간 및 업무난이도에 따라 차등지급
	외부인사 감독	100	
평가수당	교수	200	1,000자 논술/1일 150매 내외 기준이며, 논술자수 및 매수의 증감에 따라 차등 지급
	직원	100	
	외부교수	250	

■ 참고사항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2019년에 한하여 입시수당 산정기준을 2개 연도 공시함

1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11-가-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10월

【공시내용】 : 대학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공시양식】 : 대학원의 자체 양식(자료기준일 : 2019. 6. 30.)

【공시방법】 : PDF 파일 형태로 공시

■ 작성지침

- 대학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수립일은 총장 및 대학원장 등의 승인일
- 대학원 발전계획은 대학원발전을 위한 대학원의 비전과 전략 설정 배경(대내외 환경 분석 등), 대학원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교육 여건 개선 계획, 학사구조 개편, 구조개혁, 기타 등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 대학원 특성화계획은 대학원 관점에서 특성분야, 학교발전계획과의 연계 사항, 재정집행계획(자체투자, 연관 재정지원사업 등), 특성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계획, 특성화 분야 지원인프라 개선계획(교원 등), 특성화 학과(전공)명 등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 각 대학원(일반대학원, 경영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별로 구분하여 수립된 대학원 발전 계획 및 특성화계획 입력
 - ※ 각 대학원(일반대학원, 경영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통합하여 수립한 경우,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입력 불가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12-다. 장학금 수혜 현황

12-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12-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12-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12-나-2. 교원 강의 담당 비율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4월, 10월

【공시내용】 : 2019년 교원 강의담당 비율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 기준일 : 2019학년도 1학기(4월), 2학기(10월))

연도	단과대학	학과 (전공)	구분	학과특성	학기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 총계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기타		계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1													
					2													
					3													
					4													

■ 검증사항

○ 교원 강의담당학점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입력하되, 학과별 학기별 교원 강의담당학점을 구한 값을 반올림함

■ 작성지침

【학기】 : 각 학교의 학사규정에 따른 연간 운영되는 정규학기 단위이며, 계절학기는 입력에서 제외

【교원 강의 담당학점】 : 총 개설 강의학점 중 해당 직급의 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

강의 개설 학과 기준으로 입력

PASS/FAIL 강좌도 학점 및 담당교원이 있다면 포함하여 입력

입력 제외 대상(아래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입력에서 제외)

- 개설 강좌의 학점이 없는 경우
- 개설 강좌의 담당교원이 없는 경우
- 온라인 강좌 중 OCU, KCU 등 외부에서 개설되는 강좌
- 개설 강좌 담당교원의 강의시수가 없는 경우(단, 담당교원의 강의시수가 없어도 교원이 실제로 한 학기동안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포함하여 입력)
- 대학원에서 직접 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학부에서 개설한 강좌를 대학원생이 청강하듯 듣는 강좌(선수과목)

예시

1. 'OOO' 담당교원이 배정되었지만, 담당교원은 실제 강의를 진행하지 않아 대학에서 강의시수를 책정하지 않음
→ 입력에서 제외
2. '△△△' 과목에 담당교원이 배정되어 매주 2시간, 15주 강의 진행. 업체와 대학 간 협약에 의해 강의료가 업체에서 지급되어, 학교에서는 강의시수를 책정하지 않음
→ 담당교원의 강의시수는 없지만 실제로 강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포함하여 입력
3. 1:1논문지도, 현장실습, 사회봉사의 강좌도 입력대상임. 단, 입력제외대상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함 (다른 강좌와 동일하게 적용)
4. 대학원생이 석사과정전공과 학사과정전공이 상이하여, 학부과목을 수강함. 이 경우 과목은 이수하였지만 학점은 인정받지 않음
→ 입력에서 제외

※ 개설학과가 없는 강좌의 경우, 기타(소속학과없음)에 입력

※ 분반은 각각의 강좌로 보고 각 분반에 따른 학과에 교원 강의담당학점을 각각 입력, 팀티칭은 하나의 강좌에 해당하는 학점을 강의시간 비율로 나누어 계산, 합반의 교원 강의담당학점은 '학점 ÷ 합반한 강좌 수'로 계산하여 합반한 학과에 각각 입력

예시
1. 분반의 경우

(3학점)을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A반, B반, 비전임교원이 강의하는 C반(총 3개 분반)이 있을 경우,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학점은 3(학점)×2(전임교원 수) 이며,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 학점은 3(학점)×1(비전임교원 수) 로 하여 실제 운영과 같이 교원강의담당학점 합계는 9학점이 됨

2. 팀티칭의 경우

경영학원론(3학점)을 전임교원 1명이 2시간, 비전임교원 1명이 1시간으로 하여 팀티칭을 하는 경우,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학점은 2(전임교원강의시간수)÷3(총강의시간수)×3(학점)이며,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 학점은 1(비전임교원 강의시간)÷3(총강의시간수)×3(학점)으로 교원강의담당학점 합계는 3학점이 됨

3. 합반의 경우

- ① 음악학과에서 합창 1(3학점), 합창 2(3학점)를 합반하여 수업하고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경우, 한 강좌로 보아 전임교원 담당학점에 3학점만 입력
- ② 경제학원론(3학점)을 전임교원이 강의하고 경제학과, 농업경제학과에서 강좌를 각각 개설하였지만 합반하여 수업하는 경우, 교원강의담당학점은 3(학점)÷2(합반 수)씩 계산하여 경제학과, 농업경제학과에 전임교원 담당학점에 각각 1.5학점씩 입력

전임교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교원
- 2019년 해당학기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 대학원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전임교원 수준의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전담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인문학국사업: HK, 중점연구소사업 등)의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
- 국·공립대 기금교수(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전임교원에 포함
 -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라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된 교원
 -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 근무 계약교원
- HK교수 : 국·공립대는 ‘HK교수 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 같은 처우로 계약되고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교원, 사립대는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 국공립대 산학협력중점교수 관련 규정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임용된 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임교원으로 포함하며, 사립대는 교육부 산학협력 중점교수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에 한하여 전임교원으로 포함

※ 인정 제외대상 교원(기타로 분류)

- ①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교원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③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 총장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음

【겸임교원】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4항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교원
- 원소속(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이 3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단, 전일근무를 하는 겸임교원은 원소속(본직)기관의 휴직자도 포함 가능)

* 정규직원은 「기간제 및 단시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기간근로자’가 아닌 직원을 의미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교원
- 담당 과목이 겸임교원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 인정 제외대상 교원(기타로 분류)

- ① 겸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 ②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교원
- ③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담당과목이 부합되지 아니한 자(순수 학술이론을 강의하는 자)
- ④ 본직기관의 비상근 근무자,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전임연구원

【초빙교원】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4항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 근무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약된 교원
-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 받는 교원
- 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교원
- 2019년 해당학기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대학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 인정 제외대상 교원(기타로 분류)

- ① 초빙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 ②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전임연구원

시간강사] : 2019년 해당학기 현재 재직 중인 시간강사

【기타] : 전임교원 및 겸·초빙교원, 시간강사를 제외한 자로, 전임교원 및 겸·초빙교원의 인정제외자를 포함

※ 총장(혹은 본교 교직원, 연구원 등)이 강의하는 경우, 기타에 입력

【(강의 담당) 비율(%)] : (강의 담당 학점/강의 담당 학점 총계) × 100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1학기 현황은 4월, 2학기 현황은 10월에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학원 또는 계절제 대학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대학정보공시센터 이메일 (open@kcue.or.kr)로 별도 요청하여 입력

	입력 시기		
	1학기	2학기	3학기 이상
연간 2학기 운영 대학원	4	10월	-
연간 3학기 이상 운영 대학원	4월	10월	10월공시 이후 학기 확정 시기에 별도 요청
계절제 대학원	4월공시 이후 학기 확정 시기에 별도 요청	10월공시 이후 학기 확정 시기에 별도 요청	-

■ 작성지침

< >

- ‘관련법규’(국립학교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등)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가 면제되는 경우 등록금수입 및 장학금 입력 대상에서 제외함 (예: 국립학교설치령 제16조,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제12조 등)
- 대응투자: 대응자금비율이 적용되는 대응투자의 경우, 교외와 교내 대응자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입력함

예시

- 보훈 자녀장학금의 경우, 국가 : 교내의 대응자금 비율이 50 : 50이므로, ‘교외-국가’와 ‘교내-기타’에 50%씩 나누어 입력
-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교외-국가’와 ‘교내-근로’ 양쪽에 국가보조금과 교내 대응자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입력함

<장학금 현황>

- 2018. 4. 1., 10. 1. 기준 재적학생 중 2018년 1, 2학기에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모두 포함
 - ※ 교환학생, 방문학생, 시간제학생, 어학연수생, 교육과정 공동운영 외국인 유학생(공동학위·복수학위 과정 유학생)은 제외
 - ※ (2018년 기준) 회계연도 중 재적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해 자퇴 또는 제적된 경우라도 지급받은 장학금은 입력하고 반환된 금액은 제외

참고

< 인정 범위 >

○ 교내 장학금

: 2018년도 각 학교의 대학관계규정에 공식적으로 명시된 장학금으로 대학 내의 등록금 및 기금 등의 자체 예산에서 지급한 교내 장학금(교육부 대학장학과-4299호, 2012.12.8.)이면서, 사립대학은 2018년도 교비회계 자금결산서에, 국공립대학은 2018년도 일반회계·기성회계·대학회계·발전기금회계의 세출결산서에 반영된 장학금. 단, 관련 규정에 명시되었더라도 장학목적 외로 지급된 경우 장학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장학목적으로 지급한 교내장학금이란?

: 대학관계규정에 공식적으로 명시된 장학금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이나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등 학업과 연관성 있는 활동에 대해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생활비, 실습비 등의 금품을 말함. 단,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군 가산복무지원금은 '18년부터 장학금에서 제외함.

○ 교외 장학금

: 외부재원으로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으로 사립대학은 2018년도 자금결산서에, 국공립대학은 2018년도 세출결산서에 반영된 장학금. 단, 장학목적 외로 지급된 경우 장학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장학금에 대한 예외 인정 : 장학금 현황의 교외장학금의 경우, 예외적으로 회계(결산) 미반영액도 공시대상에 포함. 단, 제3자 관점에서 인정가능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대학이 확보 및 보관하여야 함 (예시 외부장학단체가 대학에 발송한 공문 등)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I 유형을 모두 수혜하여 대출금과 장학금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 등록금 초과금액이 자동 상환 처리되어 결산에 반영되지 않음
→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예시 등록금 500만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400만원, 국가장학금 I 유형 300만원 수혜 시, 200만원이 자동 상환 처리되어 학교에 100만원만 지급되었다고 교외-국가에 300만원으로 입력

※ 장학목적으로 지급한 교외장학금이란?

: 객관적 입증자료에 명시된 장학금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이나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등 학업과 연관성 있는 활동에 대해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생활비, 실습비 등의 금품을 말함. 단,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군 가산복무지원금은 '18년부터 장학금에서 제외함.

학기 : 1학과와 2학기 구분하여 입력함, 계절학기에 수혜한 장학금도 포함하여 입력하며, 하계는 1학기에 동계는 2학기에 입력함

재학생 : 2018년 1학기(2018. 4. 1. 기준)와 2학기(2018. 10. 1. 기준)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를 입력함

교외 장학금 : 외부의 재원으로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으로 재원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사설 및 기타로 구분함

교외-국가 : 국고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국비장학금 등)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훈장학금을 입력함

예시 보훈장학금 입력 기준

	보훈장학금 지급 대상	교외-국가	교내-기타	설립구분	보훈장학금 지급 대상	교외-국가	교내-기타
/공립	본인	-	100%	사립	본인	-	100%
	자녀	-	100%		자녀	50%	50%

교외-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교육청) 재원으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을 입력함

【교외-사설 및 기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일반 기업체, 민간단체, 기부자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입력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지만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원으로 조성되어 지급한 장학금은 '사설 및 기타'에 입력함

예시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고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국가'에 입력하나, 예외적으로 기부금으로 조성된 사랑드림장학금은 '사설 및 기타'에 입력

【교내 장학금】 : 학생에게 지급된 교내 장학금의 수혜 명목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함

【교내-성적우수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

※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아닌 장학금 수혜 명목인 성적우수장학금으로 입력함

※ 학업성적이 아닌, 체육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교내-기타'에 입력함

※ 신입생은 입학성적(내신, 수능, 논술, 면접, 수상경력 등 대학별 입학사정관제에 준함)이 학업성적이

【교내-저소득층장학금】 : 각 대학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

【교내-근로장학금】 : 교내·외 특정 장소에 배치되어 일정시간 근로한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예 : 국가근로장학금 중 대학 대응투자금액 및 대학자체 근로장학금)

【교내-교직원장학금】 : 해당 대학의 재직 교직원 또는 그 가족 등을 위해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

※ 대학 외(자매재단이나 동일법인, 타대학 등) 교직원에게 지급한 교직원장학금은 '교내-기타장학금'으로 분류함

【교내-기타】 : 성적우수장학금, 저소득층장학금, 근로장학금, 교직원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을 입력함

【재학생 1인당 장학금】 : (교내 및 교외 장학금의 합/재학생 수)

※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산출 시 재학생 수는 '학과별(학기별 재학생 수 합/재학생 수가 존재하는 학기 수)'로 산출

※ 학과명칭 변경, 신설, 폐과, 학부제 등으로 인해 재학생이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의 비교란에 특이사항을 명기함

<학비감면 준수 여부>

【학비감면 준수 여부】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준수 여부

【10%규정 준수 여부】 : 당해연도 등록금 수입 재원으로 면제감액(부득이)사후 지급된 금액을 입력함(계절학기 제외)

【30%규정 준수 여부】 : 당해연도 등록금 수입 재원으로 경제사정 곤란자에게 면제감액(부득이)사후 지급된 금액을 입력함(계절학기 제외)

※ 장학금 종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경제사정 곤란자가 학비를 감면받았을 경우도 인정함

【등록금수입총액】 : 결산기준의 등록금 수입 총액(수강료 수입 및 계절학기 제외)을 입력함

※ 등록금수입총액 = 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 사립대학 : 2018년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 참고사항

장학금 수혜현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4월 1일 재학생 수는 2018년도 <4-마> 재학생 현황을, 10월 1일 재학생 수는 2018년 교육기본통계 하반기 조사의 재학생 수를 연계 활용할 예정임
- 대학부설대학원의 학비감면 준수여부는 학부의 <12-다-1> 장표에 통합되어 공시됨(학부 지침 참고)

구분	준수 여부					
	학부		대학원		학부+대학원	
	금액	등록금 수입 총액	금액	등록금 수입 총액	금액	등록금 수입 총액
10% 규정 준수여부						
30% 규정 준수여부					금액	

※ 2018학년도 기준

- 한국장학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라. 외국대학교 교류 현황

12-라-1. 외국대학교 교류 현황[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8학년도 외국대학교 학점교류,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의 교류 현황

【공시양식】 : 학교의 자체양식

【공시방법】 : PDF 파일 형태로 공시

■ 작성지침

【외국대학교 교류현황】 : 교류 프로그램, 교류대상 국가, 교류대상 학교명, 학점교류 현황 등 외국대학교 교류 현황

※ 공동학위과정생, 복수학위과정생의 교류 현황 작성 시에는 프로그램명, 학위과정(학사, 석사, 박사), 대학의 관여학과(전공 혹은 단과대학), 외국 국가명, 파트너 대학의 관여 학과(전공 혹은 단과대학), 프로그램 별도설치(stand-alone) 여부, 참여 학생 수, 사용 언어(한국대학, 외국 파트너 대학), 이수 학점 수(한국대학, 외국 파트너 대학)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프로그램별(공동학위과정, 복수학위과정 구분)로 작성

※ PDF 파일로는 실제로 학점교류 실적이 없어도 자매결연 현황 포함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라-2. 외국대학교 교류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8월

공시내용 : 2018학년도 외국대학교 학점 교류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 기준일 : 2018학년도)

	학점교류현황		파견인원 (자 대학교→타 대학교)	유치인원 (타 대학교→자 대학교)
	국가명	대학명		

■ 작성지침

【기준연도】 : 학생이 학점 교류를 실시한 연도

【학점교류현황】 : 외국대학교 학점 교류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와 대학명 입력

【파견인원 : 자 대학교→타 대학교】 : 타 대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한 대학의 학생 수

※ 타 대학교의 어학연수 과정이 자 대학교의 정규 학점으로 인정될 경우 포함하여 입력함

【유치인원 : 타 대학교→자 대학교】 : 해당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한 타 대학교 학생 수

○ 파견인원과 유치인원은 학점 교류시점(시작일 ~ 종료일) 기준으로 입력함

○ 교류 기간이 2개 학기에 걸쳐 진행된 경우 학기별 각각 포함

【예시1】 2018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교류 시 2018년도에 2명으로 집계

【예시2】 2018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류 시 2018년 1명, 2019년 1명으로 집계

※ 2019년도 현황은 2019년 8월 공시 예정

■ 참고사항

○ 외국대학교 교류 현황은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 10. 1., 2019. 4. 1. 기준)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12-카-4.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12-카-4-(1)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2019학년도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9. 4. 1.)

학위	계약학과 유형	계열	모체학과 명칭	모체학과 입학 정원	계약학과 명칭	신/편입과정 구분	계약학과 정원	입학생 수	재학생 수	설치 권역	외부학습장 이용 여부	계약 형태	경비부담 현황				경비지원 외부기관		채용조건형 취업자	산업체 수	
													산업체 부담률	외부기관 경비 지원을	대학 자체 감면을	학생 경비 부담률	기관명	사업명			채용조건형 졸업자

■ 작성지침

[입력 대상] : 재적학생이 존재하는 계약학과(대상 산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재적학생이 존재하더라도 입력하지 않음)

[취득학위] : 당해 대학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계약학과의 학위과정으로 전문학사, 학사,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학위과정으로 구분

※ 학과명이 동일해도 학위과정이 다를 경우 별도의 학과이므로 학위과정별로 별도 입력

[계약학과 유형] :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

- 채용조건형 :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재교육형 :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계열]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계열 구분

	포함되는 소계열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사회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공학계열	공학 등	의학계열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자연과학계열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 통합학과 운영으로 계열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최초 전공 또는 계열구분 연도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류

【모체학과 명칭】 : 계약학과의 주된 교육을 운영하는 일반학과로 계약학과 설치의 모체가 된 학과 명칭(다수 학과가 연관된 경우 교육과정 구성 및 수업운영에 주로 참여하는 학과를 모체학과로 입력)

【모체학과 입학정원】 : 당해연도 모체학과의 입학정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 시 당해학년도 입학생 수를 입력(모체학과의 학생 신규모집이 중단된 경우 모집중지 전 입학정원으로 입력)

【계약학과 명칭】 : 당해 대학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계약학과의 학과 명칭

【신/편입 과정 구분】 : 당해 계약학과의 신입생 대상 과정인지 편입생 대상 과정인지 명시, 학칙에 신입정원과 편입정원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을 경우 각각 입력(신입생 및 편입생이 모두 대상인 경우 한 줄로 입력하지 않고 각각 두 줄로 나눠서 입력함)

※ 학칙에 편입정원 명시 없이 단순히 계약학과 학생의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생을 뽑는 경우 신입과정으로 입력

【계약학과 정원】 :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계약학과의 학과별 정원

【입학생 수】 : 당해연도 전기, 전년도 후기 계약학과에 실제 입학한 학생 수

【재학생 수】 : 2019. 4. 1. 현재 당해 대학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과별 재학생 수

【설치 권역】 : 계약학과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권역(광역행정구역명) 표시

※ 예시 서울, 인천, 부산, 광주, 경기, 경남, 전남 등

【외부학습장 이용여부】 : 대학 소유의 교사가 아닌 산업체가 제공한 시설에서 계약학과 수업을 진행하는 여부를 'O', 'X'로 표시

【계약형태】 : 계약형태는 단독계약, 공동계약, 3자계약으로 구분

- 단독계약 : 산업체 등이 단독으로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 공동계약 : 여러 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 3자계약 : 사업주 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해당 산업체, 대학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 하나의 계약학과에 여러 개의 계약형태가 중복되는 경우 공동계약으로 간주하여 입력, 계약형태별로 별도 입력 금지

【산업체 경비 부담률】 :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순수하게 산업체가 부담하는 비율

【외부기관 경비 지원율】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 등)이 특정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 등의 지원금이 당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차지하는 비율

자체 경비 감면율 : 계약학과와 산업체 의무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중 대학이 자체적으로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하여 학생 부담금을 일괄적으로 감면한 비율

※ 대학 자체 일괄적 감면 외에 학생이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수혜한 타 장학금 등 제외

【학생 경비 부담률】 :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학생이 부담한 비율

※ 산업체 부담률+외부기관 지원율+자체장학금 지원율+학생부담률=100%가 되어야 함

【경비지원 외부기관】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명과 사업명 명시

※ 예시 중소기업청-중소기업계약학과, 고용노동부-일학습병행기업, ○○도-○○○사업

【채용조건형 졸업자】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경우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발생한 졸업자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해당 없음”으로 입력

【채용조건형 취업자 - 계약 산업체】 : **【채용조건형 졸업자】** 중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취업을 한 인원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해당 없음”으로 입력

【채용조건형 취업자 - 타 산업체】 : **【채용조건형 졸업자】** 중 계약을 맺지 않은 타 산업체에 취업을 한 인원(대학원 등 진학 미포함)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해당 없음”으로 입력

【산업체수】 : 당해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산업체의 총수

■ 참고사항

-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2-카-4-(2) 주문식 교육과정 설치 운영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2018학년도 주문식 교육과정 설치 운영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18. 3. 1. ~ 2019. 2. 28.)

과정	계열	주문식 교육과정명	운영유형	채용유형	참여학과	참여학생 수	약정인원	산업체 수	주문식 교육과정 출업자	취업자		등록금 부담 현황				경비지원 외부기관	
										약정 산업체	타 산업체	산업체 부담률	외부기관 지원률	대학 자체 감면율	학생 등록금 부담률	기관명	사업명

■ 작성지침

【입력 대상】 : 재적학생이 존재하는 주문식 교육과정

【학위과정】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선택

【계열】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계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비고
·사회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자연과학계열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계열	공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계열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주문식 교육과정명】 : 운영중인 주문식교육과정의 정식명칭 입력(약칭이나, 영문약어 사용 금지)

【운영 유형】 :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형 입력

- 학점인정 : 산업체와 협약하여 1과목 이상의 교육과정(학점인정)을 개편(개설) 하고 채용을 약정, 우대 하는 경우
- 학점미인정 : 별도 교육과정(학점인정) 개편 없이 채용을 약정, 우대하는 경우(학점과 관련 없는 맞춤형 프로그램(맞춤형 코스), 방학 중 인턴십 실시 등)

채용유형 : '채용인원 약정' 및 '채용시 우대' 중 선택

- 채용인원 약정 : 대학이 기업과 협약서(MOU 등)에 채용 예정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 채용 시 우대 : 대학과 기업이 협약서(MOU 등)에서 해당과정 이수자의 채용을 우대하기로 약정한 경우나 협약서 등에 채용인원을 확정하지 않고 "00명" 등 불확정 인원으로 협정한 경우

참여학과 : 해당 교육과정에 참여중인 학과, 전공을 표시

- 학과명은 학칙에 따라 구분되는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학과, 학부, 전공 등)

참여 학생 수 : 해당학년도에 운영 중인 주문식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중인 재학생 수

- ※ 중복으로 참여한 학생은 대학 자체 판단하여 하나의 과정에만 인원 수 입력(예시 참여시간이 많은 과정 등)

약정인원 : 협약서(MOU 등) 에서 채용을 약정한 인원 명시

- 인원 약정 없이 단순 채용만 우대하는 경우 "채용 시 우대"로 표시
- 채용을 약정했으나 "00명" 등으로 인원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도 "채용 시 우대"로 표시

산업체수 : 당해 주문식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체의 총수

주문식 교육과정 졸업자 : 주문식 교육과정 참여 학생 중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발생한 졸업자

- ※ 중복으로 참여한 학생은 대학 자체 판단하여 하나의 과정에만 인원 수 입력(예시 참여시간이 많은 과정 등)

취업자 - 약정 산업체 : **주문식 교육과정 졸업자** 중 약정을 맺은 산업체에 취업을 한 인원

취업자 - 타 산업체 : **주문식 교육과정 졸업자** 중 계약을 맺지 않은 타 산업체에 취업을 한 인원(대학원 등 진학 미포함)

산업체 등록금 부담률 : 주문식 교육과정 등록금 중 산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율

외부기관 등록금 지원율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 등)이 각종 사업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하는 비율

대학 자체 감면율 : 대학이 자체적으로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하여 학생 부담금을 일괄적으로 감면한 비율

- ※ 대학 자체 일괄적 감면 외에 학생이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수혜한 타 장학금 등 제외

학생 등록금 부담률 : 등록금 중 학생이 부담한 비율

- ※ 산업체 부담률+외부기관 지원율+대학자체 감면율+학생부담률=100%가 되어야 함

경비지원 외부기관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주문식교육과정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명 명시

- ※ 예시 교육부, 미래부 등

경비지원 외부사업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주문식교육과정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명 명시

- ※ 예시 LINC, CK, ○○사업 등

■ 참고사항

- 주문식 교육과정 설치 운영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입니다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14-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14-차. 강사 강의료

14-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14-자-1. 대학 자체평가 결과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수시(자체평가 보고서 완료일 후 30일 이내)

공시내용 : 2019년 대학 자체평가 결과

※ 2018년 자체평가 결과가 차년도 완료되는 경우 차년도 공시

공시양식 :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제목과 목차 및 자체평가 완료일을 명시

공시방법 : 요약본은 PDF 파일 형태로 공시하고, 원본은 접근 가능한 URL 링크로 공시(PDF와 URL 모두 공시)

■ 작성지침

대학 자체평가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대학 자체평가결과 공시

참고

「고등교육법」 [시행 2019.1.1.] [법률 제15332호, 2018.12.18., 일부개정]

제11조의2 (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이하 “교육·연구 등”이라 한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등) ① 학교의 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조(평가 결과의 공시)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참고사항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14-차. 강사 강의료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19년 6월

공시내용 : 2019년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은 작성지침 참조)

	구분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지급인원 수	총 강의시간 수	지급인원 비율(%)
	합계				

■ 작성지침

【시간강사】 : 2019년 4월 기준-대학(학부, 대학원) 소속으로, 대학원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4월에 강의하지 않은 강사 제외)

- ※ 예시1 학부 소속의 시간강사 A가 학부와 대학원 강의를 모두 하는 경우, 학부 강의분은 학부에 입력하고 대학원 강의분은 대학원에 입력
- 예시2 대학원 소속의 시간강사 B가 학부와 대학원 강의를 모두 하는 경우, 학부 강의분은 학부에 입력하고 대학원 강의분은 대학원에 입력
- ※ 외부(기업 등)에서 강의료가 지급되는 시간강사 및 겸임, 초빙, 명예, 대우, 석좌교수 등은 포함하지 않음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 2019년 4월에 강의한 강의료 지급 기준 1인 1시간의 지급기준 단가

- ※ 원 단위 입력
- ※ 학교에서 책정한 단가 외에 추가 강의료(연구보조비, 수강인원수에 따른 수당, 외국어강의에 따른 수당 등), 또는 겸임 강의료(특수강의는 50%만 지급, 2시간 수업 시 1시간 단가 지급 등)가 매월 지급되는 경우, 추가(겸임) 강의료를 포함한 금액을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로 입력하고 시간강사 강의료 차등 지급기준 내용을 【비고】 란에 자세히 명기함(단, 교통비, 숙박비는 제외)

※ 한 강좌 안에서 이론과 실험(실습) 단가가 다를 경우, 각각의 단가로 나누어 입력

【구분】 : 주간·야간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지급인원 수, 총 강의시간 수를 입력함

단가별 주간·야간 구분이 없는 경우,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개설 학과의 학칙상 구분 및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입력

지급인원수] : 각 단가별 시간강사료를 받는 시간강사 인원수를 입력함

※ 동일한 강사가 N개의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지급인원 수는 N명으로 입력(단가가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은 경우 모두 포함)

[총 강의시간 수] : 각 단가별 시간강사가 실제 1학기 중 담당하는 총 강의시간

예시

A대학은 시간강사 강의로 기본단가 외에도 수강인원에 따라 초과수당을 매월 지급함. 또한 실험과목의 경우는 기본단가의 50%만 지급함. 한 학기당 15주 강의 진행
 <시간강사별 담당과목 및 단가 현황>

	분반코드	주/야간	학점	수업시수		주차	시간강사명	기본단가	초과(감면)수당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비고
				이론	실습						
현대인의생활문화	01	주간	2	2	0	15	김OO	50,000	15,000(101명 이상 강좌 30% 추가 지급)	65,000	동일한 강사가 N개의 강의를 하는 경우, 초과강의료
	02	주간	2	2	0	15		50,000	0	50,000	
	03	주간	2	2	0	15		50,000	0	50,000	
과학과예술	01	주간	2	1	0	15	최OO	50,000	0	50,000	팀티칭1(시간별)
				1	0	15	주OO	50,000	0	50,000	
미용문화사연구	01	주간	3	1	0	10(1주~10주)	박OO	60,000	0	60,000	팀티칭2(주차별)
				0	2	5(11주~15주)	서OO	60,000	0	60,000	
기초물리학실험1	01	주간	3	2	0	15	이OO	50,000	0	50,000	이론과 실험(실습) 단가가 다른 경우, 감면강의료
				0	2	15		50,000	-25,000(2시간 수업 시 1시간 단가 적용)	25,000	
물리학1	01	야간	2	2	0	15		55,000	0	55,000	

<강사 강의로 입력 방법>

구분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지급인원 수	총 강의시간 수
주간	65,000	1(김OO 1명)	30(2시간×15주×1명분)
주간	60,000	1(박OO 1명) ※서OO은 4월에 강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외	10(1시간×10주×1명)
주간	50,000	5(김OO 2명+최OO 1명+주OO 1명+이OO 1명)	120(2시간×15주×1명+2시간×15주×1명+1시간×15주×1명+1시간×15주×1명+2시간×15주×1명)
주간	25,000	1(이OO 1명)	30(2시간×15주×1명)
야간	55,000	1(이OO 1명)	30(2시간×15주×1명)

지급인원비율(%)】 : (등급별 해당 지급인원수/총 지급인원수의 합) × 100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